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UNCHEON UNIVERSAL DESIGN
GUIDELINE



제 출 문

순천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정 인 호

참여연구진

연구 총괄

정인호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이동희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신숙 순천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연구보조원

송영하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서현석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CONTENTS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I 개요	0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7
	1.1 배경 및 필요성	7
	1.2 왜(유니버설디자인)인가?	9
	1.3 목표	11
	1.4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	12
	02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3
	2.1 유니버설디자인 개요	13
	2.2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해	18
	03 조사 및 분석	27
	3.1 순천시 특성 분석	27
	3.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수준분석	32
	3.3 순천시 직원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	42
	3.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46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 개요	0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55
	1.1 정의	55
	1.2 가이드라인 범위	58
	1.3 가이드라인 구성	61

<hr/>		
II 가로	01 개요	63
	02 보도	65
	2.1 보행공간	65
	2.2 차량진입구역	69
	2.3 대지안의 공지	71
	2.4 점자블록	73
	2.5 골목계단	75
	2.6 자전거도로	77
	2.7 시설물구역	81
	03 차도	85
	3.1 국지도로	85
	3.2 속도저감 방안	87
	3.3 횡단보도	90
<hr/>		
III 공원	01 개요	93
	02 공원	95
	2.1 진입공간	95
	2.2 공원보행로	99
	2.3 화장실	103
	2.4 편의공간	106
	2.5 휴게공간	108
	2.6 놀이터	110
<hr/>		
IV 공공건축물	01 개요	113
	02 접근공간	115
	2.1 보행접근로	115
	2.2 출입구	119
	2.3 주차구역	123

	03 이동공간	127
	3.1 복도/통로	127
	3.2 출입문	131
	3.3 경사로	134
	3.4 계단	137
	3.5 승강기(엘리베이터)	140
	3.6 에스컬레이터	144
	3.7 휠체어 리프트	146
	3.7 손잡이	148
	04 서비스공간	151
	4.1 화장실(공간)	151
	4.2 화장실(설비)	155
	4.3 수유실	159
	4.4 접수·안내데스크	161
	4.5 안내표시	163
	4.6 지하주차장	166
V 공공정보매체	01 개 요	169
	02 공공정보매체	171
	2.1 시각정보	171
	2.2 촉각·청각·후각 정보	17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I 시범사업	0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적용방안	177
	1.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177
	1.2 장천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179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I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0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안	185
	1.1 법제화 방안	185
	1.2 정책 및 사업방안	194
	1.3 단계별 추진전략	196
	02 활성화 방안	201
	2.1 시민 의식개선 방안	201
	2.2 전문가 양성 방안	203
	2.3 인센티브 적용 방안	204

부 록

01 유니버설디자인 간담회	207
0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설명회	208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0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02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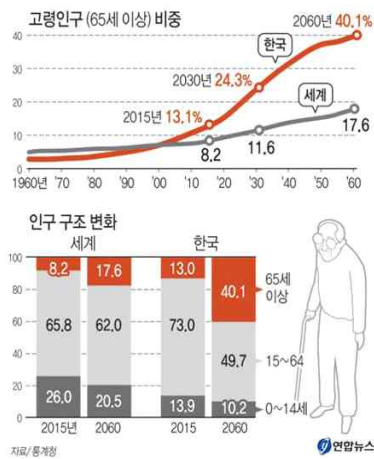
03 조사 및 분석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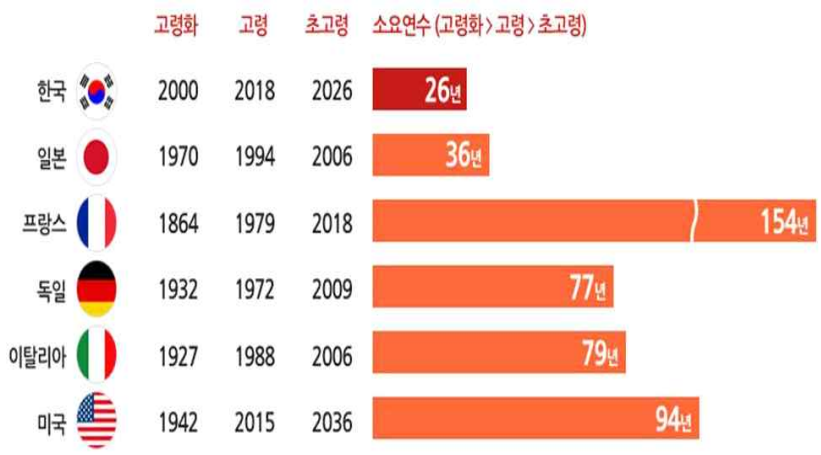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60년 2.9%였으나, 2010년에는 7.1%를 넘었으며, 2015년 13.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0년 24.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¹⁾
- OECD 주요 국가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기간은 대한민국 26년, 일본 36년, 프랑스 154년, 독일 77년, 이탈리아 79년, 미국 94년으로 예측되어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및 장애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환경, 건축 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적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환경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적합하도록 바꾸어야 하는 상황도래



인구 고령화 전망



인구 고령화 속도

1)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비율 7%,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 도시환경에서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장애물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사고(예상치 못한 단차로 인한 걸려 넘어짐, 난간 부재로 인한 낙상, 미끄러운 바닥재질에 의한 넘어짐, 보행자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 인구의 증가, 국제결혼 및 세계화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시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유니버설한 환경의 필요와 더불어 물리적 환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법적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용자의 행태에 맞춘 환경조성이 필요함(이용 편의성, 이용 만족도 측면의 환경개선 요구)
-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 인구 증가,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중앙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호)」²⁾의 경우 정부에서 인증하여 인증시설에 대한 공신력과 무장애 환경에 대한 수준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제10조의2에 의해 공공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증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 미비와 비용 발생 및 절차가 다소 복잡한 이유로 민

2)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인증제도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환경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지에 대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임. 인증의 분야는 도시(지역), 도로, 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기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간부분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자연생태·관광도시 등과 같은 지역의 특수성³⁾을 반영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를 유니버설 디자인화 하는데 있어 일정 수준 이상(최소한의 사용 가능성과 안전성 보장)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함

왜(유니버설디자인)인가?

- 유니버설디자인은 나이, 신체 크기, 장애, 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정보·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론과 철학임
-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1) 성별, 연령, 국적, 신체 크기, 왼손잡이, 질병 등에 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2) 개인의 다양성에 의한 각기 다른 체력, 이동 및 인지능력, 일시적 불편사항 등의

다름에 의한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해야 함

-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어느 길이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은 고비용의 변화와 수선을 필요로 하지 않음. 최적의 실행은 이용이 예상되는 이용자의 요구 폭을 다양한 이용자와 함께 발견 하고 현실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지향점을 찾아내는 것임

3) 자연생태 및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자원으로서의 고령자, 유아동반자,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방문 등 그 잠재성으로 보았을 때 UD화된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점적인 시설을 연결해 주는 도시환경, 교통수단 등도 UD화되어야 함. 그러나 중앙정부의 인증기준으로는 도시 및 지역 전체의 인증 획득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정부 수준에서 수용 가능하고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함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이전
기존의 도시환경은 평균이라는 기준으로
디자인 되어 왔음.
즉, 평균에서 벗어나는 시민은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발생함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후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동자의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이는 다양한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구조를 만드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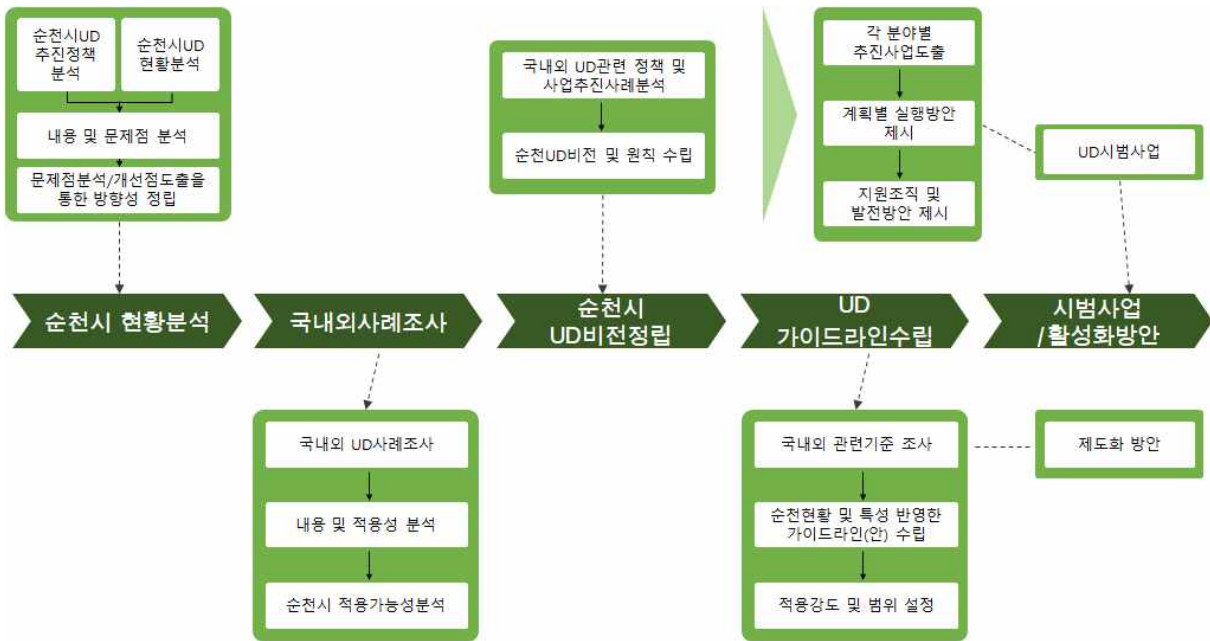
목표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순천시의 공공환경을 이용하는 '보다 많은 이용자의 요구가 충족되어 공평한 참여와 누림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기획자, 건축가, 디자이너, 관리자 등의 창의적해결안 검토 및 실현이 가능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통한 실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물리적 환경조성을 통한 이용접근성 제고**
- ✓ **공공환경과 건축물에 요구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향**
- ✓ **대한민국과 순천시의 현존 법규를 지키면서 좋은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 ✓ **순천시의 도시 환경을 접하는 모든 시민과 방문객에게 손쉬운 이용과 접근이 가능하고 안전한 가이드라인 제공**
- ✓ **누구나 삶의 최대한을 누릴 수 있는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을 성취하고 이를 촉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순천시 현황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비전 정립,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 및 활성화방안 순으로 진행됨



2.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유니버설디자인 개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 우리사회는 남성,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 손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과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개인과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은 198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미나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People)’에서 출발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주창자인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L.Mace)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연령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환경과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
-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을 의미. 즉,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을 위한다’는 철학을 새롭게 부흥시킨 디자인 개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이라고도 하며,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디자인)을 의미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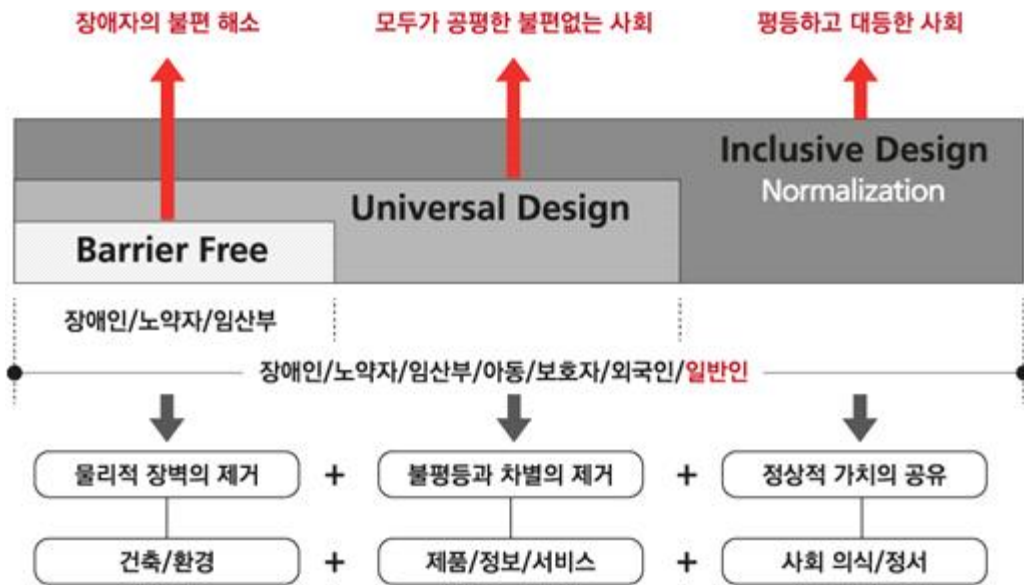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베리어프리 : Barrier Free) 디자인을 능가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기술적인 측면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노인, 아동,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

Barrier Free vs Universal Design vs Inclusive Design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물리적 장벽 제거(무장애)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 모든 이들이 일상 활동에 동등하고,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정상화(Normalization) : 장애를 사회의 다양한 속성 중 하나로 인식, 평등한 인권으로 대등하게 대하는 사회 지향



베리어 프리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기존의 장벽제거/리모델링	← 설계접근 →	설계 단계부터 이용하기 쉽도록 설계
고령자 / (휠체어)장애인	← 이용대상 →	성별, 연령, 장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접근성, 안전성	← 디자인 핵심원리 →	접근성, 안정성, 지원성, 공정성, 융통성, 심미성
물리적 환경의 장애 제거	← 지향점 →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공평한 사회 구현
건축, 환경의 접근 경로 중심	← 적용점위 →	공간, 시설, 정보 등 생활환경



법적기준을 준수한 장애인 화장실



사용성 뿐 아니라 감성적 측면까지 향상시킨 다목적 화장실 (디자인적 요소)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출입구 버튼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출입구 버튼 (다양한 사용자)

베리어 프리 디자인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된 화장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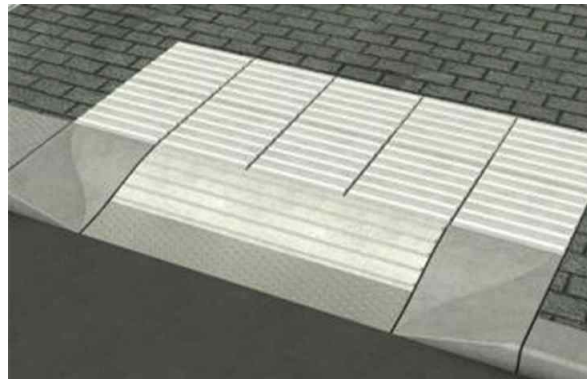
유니버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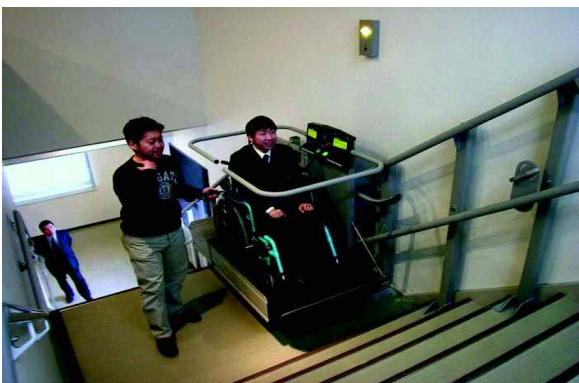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다 명확한 안내
(디자인적 요소)



일반적인 보도의 턱낮춤



휠체어, 유모차 등의 미끄러움 방지까지 고려한 턱낮춤
(다양한 사용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모두를 편하게 하는 엘리베이터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원칙

-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는 유니버설디자인 4원리를 정리하였고, 이후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다 쉽게 실현하기 위해 로널드 메이스 외 9명의 학자들이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수립하였음

4원리	내 용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Supportive Design)	기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장치(물리적, 심리적, 사용성 등)가 마련되어 있고, 정확한 기능 구현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수용 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신체적, 문화적 등)와 관계없이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함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며, 거부감, 위화감 등이 없이 쉽게 접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안전한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리]

7원칙	내 용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이용자 특성과 관계없이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사용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사람들의 다양각색의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디자인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Intuitive Use)	경험, 지식, 언어 등 이용자 수준에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정보이용의 용이 (Perceptible Information)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이용자의 지각능력에 상관없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디자인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위험과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이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신체크기, 자세, 이동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손이 닿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으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영유아, 어린이 및 동반가족

- 유아동반자는 대부분 유아를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거나 업고 다녀야 하고 동반한 유아를 항상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든다. 어린이는 월령 및 연령대별로 신체, 심리 등의 발달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 특성
 -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불편하다.
 - 유모차를 끌거나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며 자녀의 행동을 항상 살펴야 한다.
 - 유아동반자는 때로는 유아를 안거나 업어야 하므로 피곤해지기 쉽다.
 - 어린이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호기심 때문에 아무 것이나 만진다.
 -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어른 키에 맞춰진 시설물의 정보를 읽을 수 없다.
 - 어린이는 힘이 약해서 출입구의 개폐 등이 곤란하다.
 - 어린이는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 배려사항
 - 기저귀 교환 공간, 수유 공간,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한다.
 - 기저귀 교환대는 수유실 외에 화장실 근처나 남녀 각각의 화장실 내에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무거운 짐을 들어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짐 운반을 위한 카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잘못 사용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설계한다.
 - 어린이의 키와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높이나 깊이를 적절하게 정한다.
 - 짐을 많이 들어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한 유아동반자나 어린이를 위해 출입구에 자동문 등을 설치한다.
 -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노인

-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조그마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 등의 감각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또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기억력, 판단력, 이해력이 저하되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 특성

-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들다.
-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나 보행보조기와 같은 보조장치에 의존하기도 한다.
- 안내 사인이나 책자 등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렵다.
- 보통의 볼륨으로 소리를 인식하기 어렵다.
- 빠른 속도의 말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한다.
-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이해하기 힘들다.
-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한다.

- 배려사항

- 보행로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잠시 걸터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의자, 휴게장소 등을 배치한다.
- 지팡이나 보행보조기 등의 이용을 고려해 보행로나 문 등의 폭을 여유있게 한다.
- 안내 사인이나 책자의 글씨 크기차를 크게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 음성메시지의 속도를 늦춘다.
- 말을 빨리 하지 않고 외래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 단순하고 꼭 필요한 문장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문의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듣는다.

임산부

- 임신 초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유산이 될 수 있고, 임신 기간이 경과할수록 몸무게가 늘어나고 눈에 띄게 거동이 불편해 진다. 입덧을 하게 되며 사람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지만 구토와 현기증 및 전신 권태현상을 느끼게 된다.

- 특성

- 피곤하기 쉽고 장시간 선채로 공연 등을 관람하기 곤란하다.
- 빨리 움직이고 이동하기 곤란하다.
- 임산부는 발밑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차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 출산 후에는 수유 공간이 요구된다.

- 배려사항
 - 적절한 위치에 벤치나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 자동문 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 바닥의 단차, 문턱 등을 없애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면을 마감한다.
 - 수유와 기저귀 교환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

외국인·관광객

- 특성
 - 대부분의 외국인 들은 우리나라의 글자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문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
 - 관광객은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고 한 손에는 카메라 등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양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 한글로만 되어있는 안내 사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 무거운 가방을 휴대하거나 지도나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 걸어 다니면서 관광을 하다보면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진다.
- 배려사항
 - 관광명소의 안내 사인에는 한글 외에 영어 등 외국어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픽토그램을 함께 표기한다.
 - 가방을 휴대하고 양손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개폐가 쉬운 자동문 등을 설치한다.
 -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등을 적당한 거리마다 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

- 휠체어사용자란 하지의 절단, 뇌혈관 장애, 척추 손상, 뇌성마비, 진행성 근위축, 류마티스성 질환 등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중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일시적 부상에 의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특성
 - 이동 경로 내에 단차, 계단이 있을 경우 통행이 곤란하다.
 - 폭이 좁은 통로에서는 통행이 곤란하다.

- 휠체어로는 측면이동이 곤란하다.
 - 휠체어에 탄 채로 접수대 등에 접근하기 어렵다.
 -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에 손이 닿지 않는다.
 - 이동의 속도가 느려서 긴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
 -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 성인에 비해 낮다.
 - 선채로 말하면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을 줄 경우가 있다.
- **배려사항**
 - 단차를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안내한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폭을 고려하여 통로의 폭을 설계한다.
 - 휠체어를 탄채 지그재그로 이동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편의시설의 접수대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출입구 가까운 곳에 좌석을 배치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시선의 범위 내에 정보를 배치한다.
 - 허리를 굽혀서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시선의 높이로 대화한다.

보행곤란자

- 지체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하지 장애로 스스로의 몸을 지탱하거나 서있거나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보행이 곤란한 사람 중에는 지팡이나 목발, 의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 **특성**
 - 지팡이나 목발의 사용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의 개폐 등이 곤란하다.
 - 지팡이나 목발 사용자는 바닥면의 흠, 틈새, 문턱 등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 지팡이 사용자는 심한 경사로에서는 넘어지기 쉽다.
 -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아래 물건을 집기가 곤란하다.
 - 무릎 위에서부터 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똑바로 버티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를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 배려사항

-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을 열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계한다.
- 홈이나 틈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면을 마감한다.
- 경사로의 각도를 완만하게 하여 지팡이 사용자, 의족 착용자 등이 넘어지지 않게 한다.
- 아주 높거나 낮은 위치에 손을 뺐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한다.
- 목발사용자가 원할 경우 좌, 우 한쪽이 비어있는 곳에 좌석을 배치할 수 있다.
- 원할 경우 대여용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시각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으로,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 시력이 약해서 물체를 분간하기 힘든 ‘약시’, 색 구분을 잘 할 수 없는 ‘색각이상’,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은 ‘시야협착’ 등이 있다.

• 특성

-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손이나 지팡이가 닿는 범위 밖의 것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형태, 위치 식별이 곤란하다.
- 계단을 오르다가 치수가 변하면 혼란이 생기고, 나선형 계단에서는 방향을 잃는 수가 있다.
- 수직이동 시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이 없으면 경사의 시작이나 끝부분을 인식하기 곤란하다.
-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겨져 있으면 길 찾기가 곤란하다.
- 방향안내 사인을 볼 수 없어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곤란하다.
- 약시자는 계단이나 단차를 파악하기 어렵다.

• 배려사항

- 시각 대신에 음성·점자·유도블록·향기 등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보행할 때 발 밑 외에도 상부에 돌출물이 없게 하고 불가피하게 돌출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알려준다.
- 경사의 시작과 끝부분에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유도블록을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 사인에 시설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제공한다.
- 장소를 알려줄 때 ‘이쪽’, ‘저쪽’ 등의 지시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리나 각도를 구체적인 숫자로 안내한다.
- 계단의 끝에 눈에 잘 띄는 색 띠를 부착하거나 도장 처리한다.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농아’와 ‘난청’으로 분류되는데, 농아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청력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난청은 보청기 등으로 남아 있는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이다.
- 특성
 - 소리에 의한 안내나 정보 입수가 어렵다.
 - 전화를 이용한 원거리 통신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
 - 실시간 정보나, 긴급 상황을 알리는 음성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 외모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장애인끼리는 수화나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어서 의사소통한다.
 -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보청기를 사용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
- 배려사항
 - 소리 대신에 시각, 촉각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일반전화 대신에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한다.
 - 긴급 상황발생 시 시각적 수단(LED 전광판, 긴급 문자메시지 등)과 진동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안내소에서 필담용구를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 청각장애인의 좌석을 수화통역사의 앞 쪽, 강연자와 수화통역사가 함께 시야에 들어오도록 배치한다.
 - 강연자가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강연자의 입과 마이크가 겹치면 입모양을 읽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연자에게 핀 마이크 부착하는 등의 방식을 권유한다.
 - 문자를 소리로, 소리를 문자로 전환하는 ‘음성합성’, ‘음성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 한다.
 - 바닥에 자석루프를 깔아서 자기장을 발생시켜 보청기의 소리를 확대하는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지적장애인

- 지적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이며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와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리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교통기관의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 특성

- 어렵거나 추상적 개념의 문자나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 외모를 보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처음 경험하거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곤란하다.
- 상황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고 패닉상태에 처할 때도 있다.
- 목소리의 크기 조절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스트레스에 약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사람이 많다.
- 제품 등의 조작이 매우 서투르다.
- 충돌 등의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 배려사항

-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알기 쉽고, 간결하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필요시 픽토그램을 함께 사용한다.
-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품이나 설비를 설계한다.
- 패닉상태가 오면 안정을 시키고 필요하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반복해서 설명한다.
- 큰소리를 낼 때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왜 그러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조용히 말을 건다.
-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충돌에 의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하고 탄력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을 위해 가급적 동반하여 대피한다.

자폐장애인

- 뇌손상, 정서적 원인, 유전적 이상 등의 원인으로 자신의 내부에만 빠져 있어 외부의 자극에 무관심하며 사회적인 반응의 결여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 특성

- 언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장애를 보인다.
- 자신이 관심 있는 몇 가지 행동이나 물건에만 집착하는 증상을 보인다.

- 배려사항

-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부딪치는 이상행동을 보일 때는 조용히 말을 걸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 충돌에 의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하고 탄력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내부기능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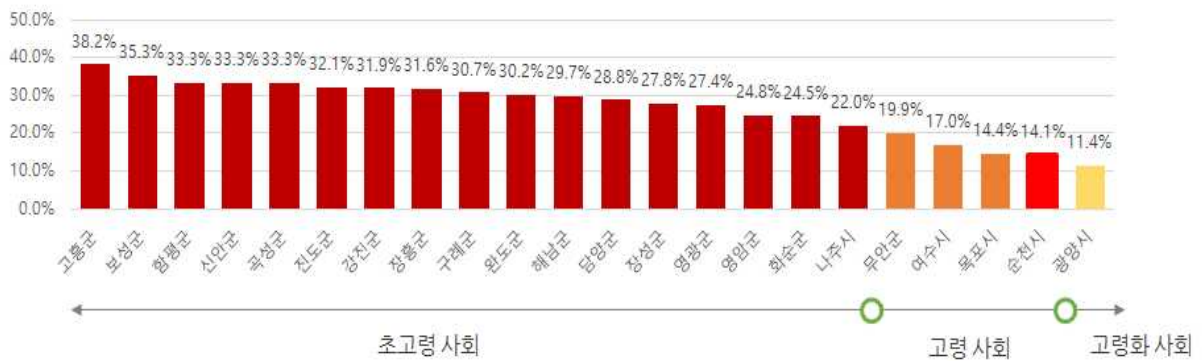
- 심장, 신장, 호흡기관, 방광, 직장, 소장의 각종기능장애에 의해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아서 인공장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특성
 - 겉으로 봐서 장애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 장애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피로해지기 쉽다.
 - 오스트 대응 설비가 없으면 불편하다.
 - 휴식 벤치 등을 사용하고 있어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 공연 등의 관람 중에 병의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다.
- 배려사항
 - 겉으로 보아서는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가급적이면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응한다.
 - 피곤을 느낄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벤치나 휴게공간을 배치한다.
 - 인공장기에 의한 배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오스트메이트(인공 배설기) 대응 설비를 갖춘다

3. 조사 및 분석

순천시 특성 분석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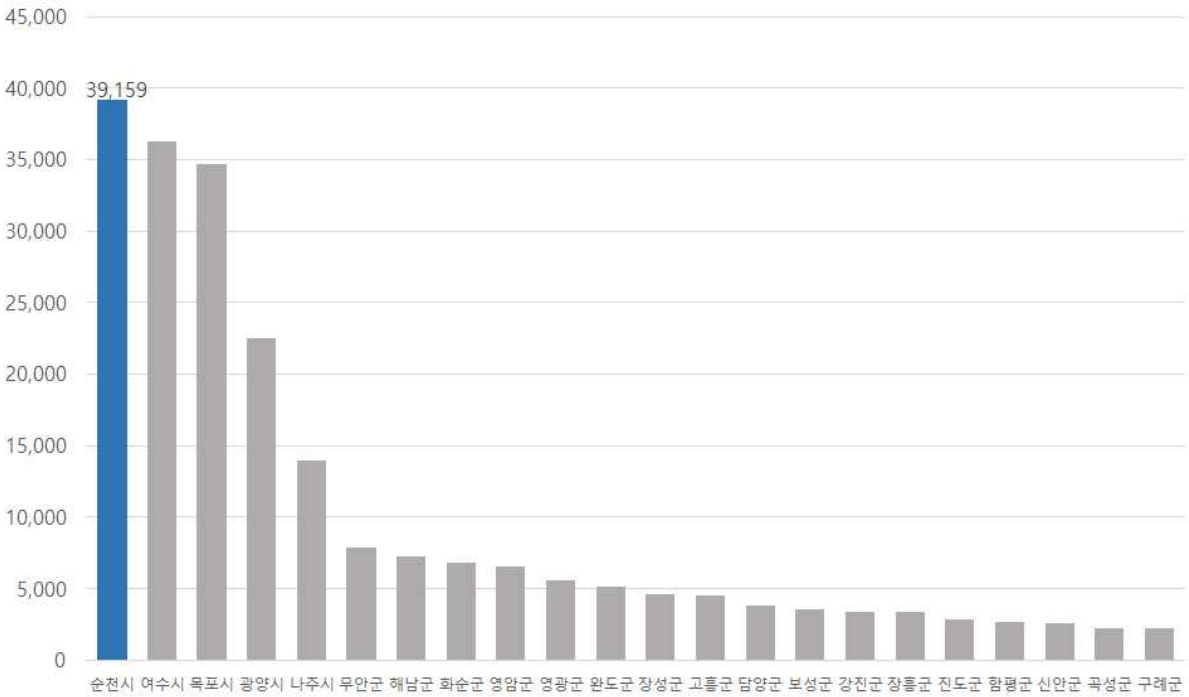
- 전라남도 지자체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평균 26.9%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로 접어들었으며, 순천시는 14.1%로 광양시 다음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은 도시임
-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로 접어들었으며,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

영유아 및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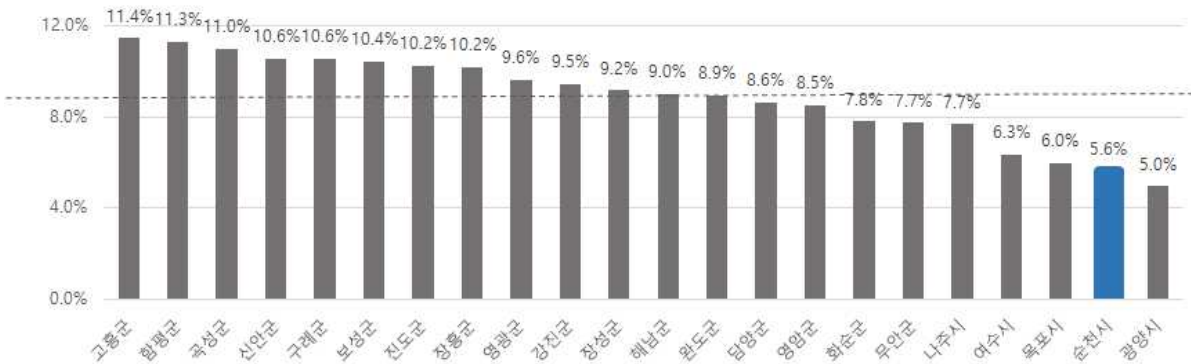
- 전라남도 지자체별 아동인구는 순천시가 39,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순으로 조사됨
- 영유아 및 어린이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안전한 통학로 및 놀이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

장애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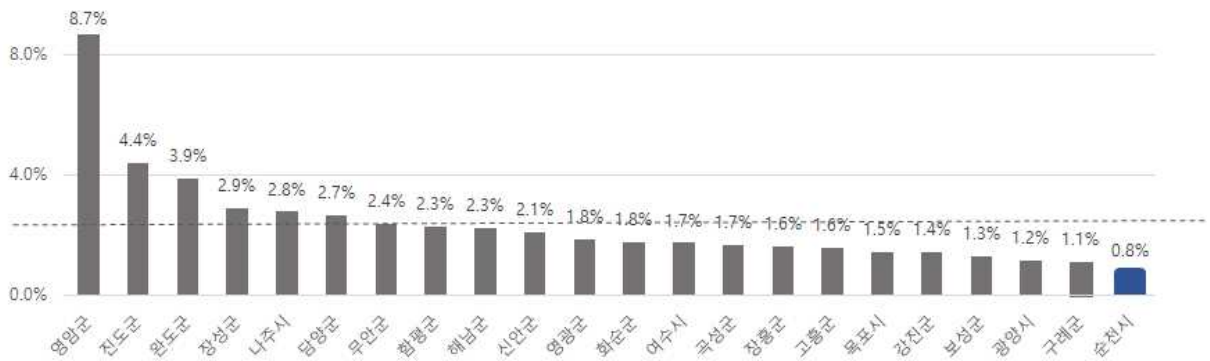
- 전라남도 지자체별 장애인 비율은 평균 8.9%로 매우 높은 편이며, 순천시는 5.6%로 광양시 다음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낮은 도시임
- 순천시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18년 5월말 현재 15,832명으로, 지체장애, 청각, 시각, 뇌병변 등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자료 : KOSIS 통계표, 보건복지부, 2017]

외국인 등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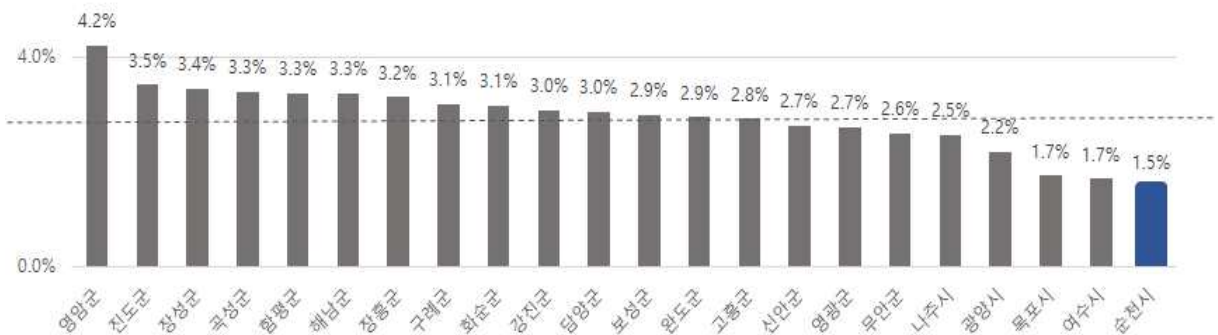
- 전라남도 지자체별 외국인 비율은 평균 2.4%이며, 순천시는 0.8%로 전라남도의 타 지자체에 비해 다문화 가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전라남도의 타 지자체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자료 : KOSIS 통계표, 법무부, 2017]

다문화 가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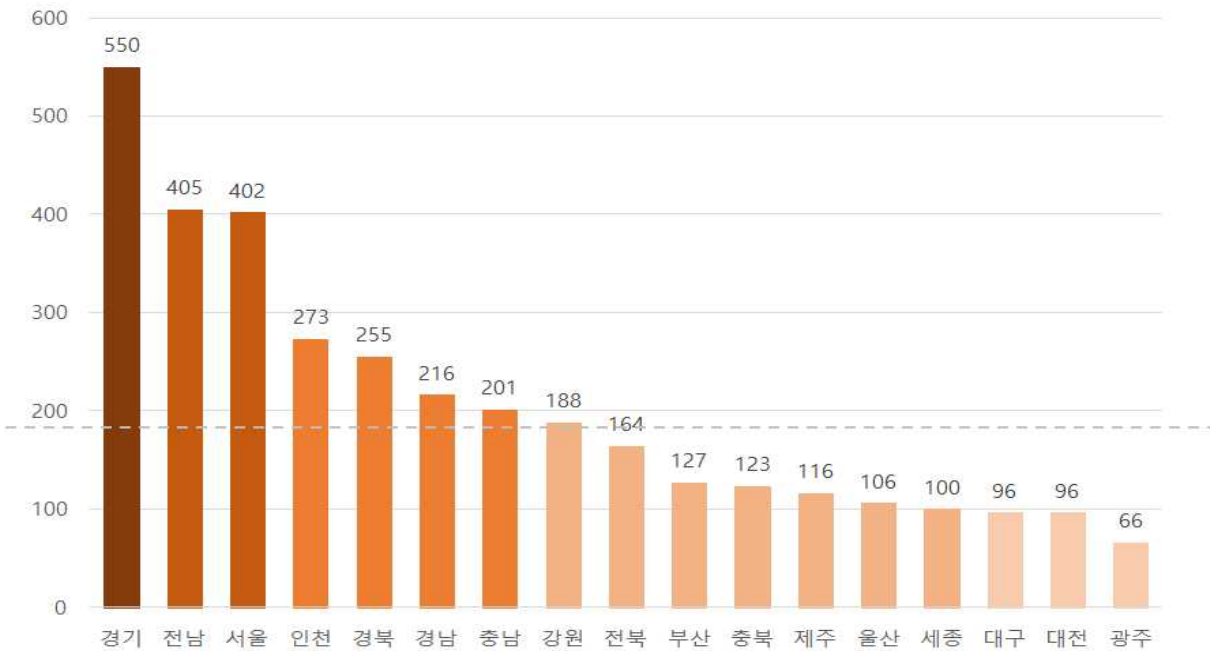
- 전라남도 지자체별 다문화 가정 비율은 평균 2.8%이며, 순천시는 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순천시의 다문화가정 등록 현황은 2018년 5월말 현재 2,260세대로 결혼이민자 616세대, 귀화자 518세대, 국내출생자녀 1,012명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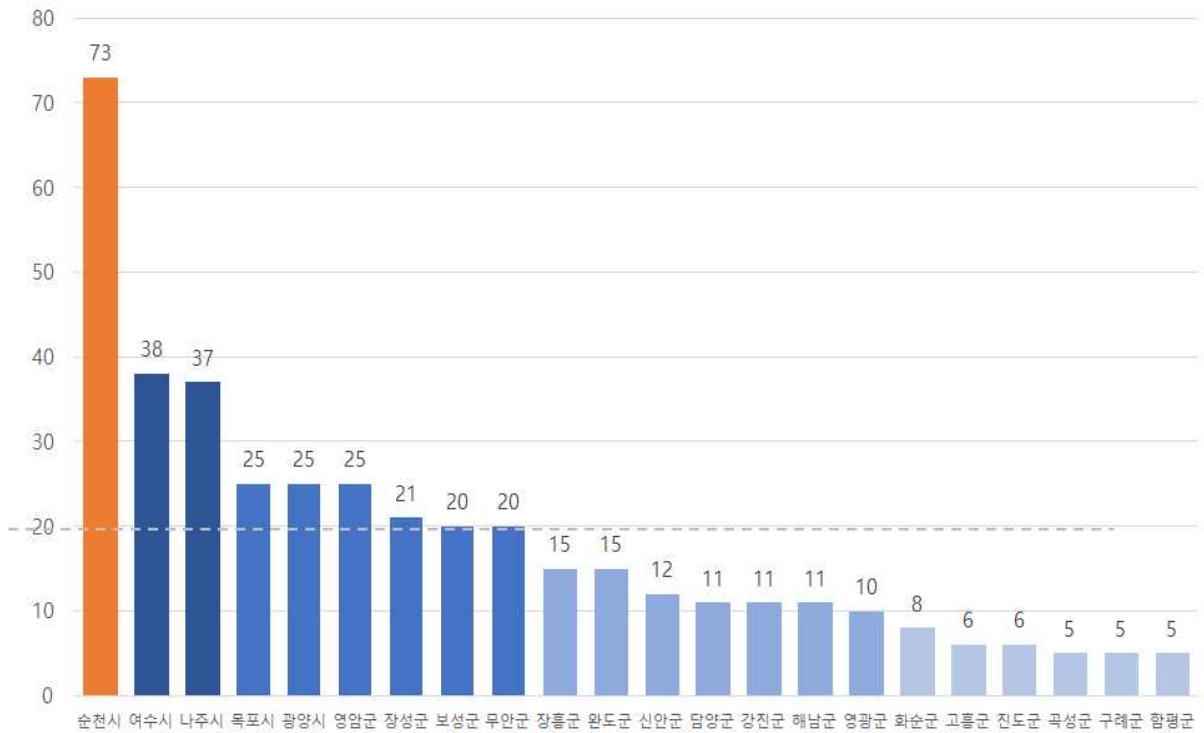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 2016]

순천시 건축물 BF 인증 현황

- 국내 건축물 BF 인증현황은 2018년 8월 31일 현재 총 3,585개소이며, 이 중 전라남도는 405개가 인증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순천시는 총 73개소가 BF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전라남도의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순천시의 BF 인증현황은 73개소 모두 건축물로 타 지자체가 도로, 공원, 도시구역 등으로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순천시도 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한 무장애 인증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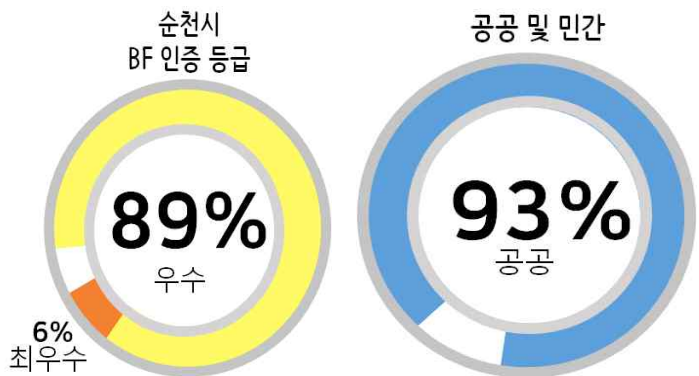


[전국 광역자치단체 BF 인증 현황]



[전라남도 자치단체별 BF 인증 현황]

- 순천시의 BF 인증 등급은 89% 우수, 6% 최우수 등급으로, 2016년 이후에는 주로 우수등급 인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인증건축물의 순천시청 및 지역내 관광서 등의 공공기관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사회복지재단 등이 주로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됨

- 인증건축물의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2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연구시설 18개소, 업무시설 13개소, 노유자시설 11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수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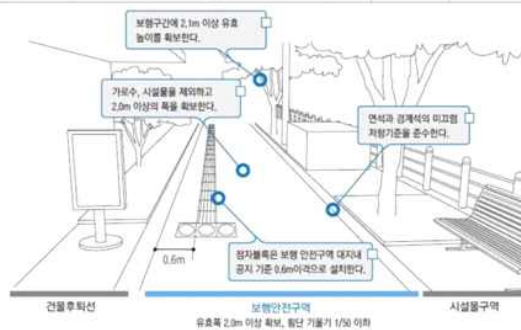
조사 배경 및 목적

- 순천시는 도시 및 농산어촌의 다양한 지역 특성이 공존하며, 연령, 신체능력, 국적, 가족 형태, 가치관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
- 시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영역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함
-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 특성 현황을 파악하여 순천시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18년 11월 11일 ~ 12일
- 조사원 : 조사원 10명(조사원 사전교육 및 명찰 착용)
- 조사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체크내용에 대한 의견	
보행 공간 (보도)	유효폭	보도 유효폭: 가로수 시설물 제외 2.0m이상 확보 권장 1.5m 폭의 보도구간 : 유모차, 휠체어 교통 공간확보				
	유효높이	보행구간: 2.1m 이상 유효 높이 확보				
	단차	단차 발생시 진행방향 모따기 가공				
	기울기	진행방향 횡단기울기 1/50 이하 진행방향 종단기울기 1/24 이하(1/18 이하 50m 마다 쉼터)				
	바닥마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편평한 마감 조잡한 패턴 및 현란한 색상 사용 지양				
	배수	배수구 덮개 구멍/틈새: 1cm 이하 간격, 보행방향과 직각 맨홀 뚜껑 등 시설물: 바닥 표면과 평탄, 연속되게 마감				
	점자블록	점자블록 설치: 보행 안전구역 대지내 공지 기준 0.6m이격				



[체크리스트 예시]

구 분	조사지역	비 고
가로	시민로(CGV 앞~구 기업은행)	
	순천부읍성길(성터둘레길)	
	순천버스터미널 및 그 주변	
	장천지하차도	
	연향번영길	
공원	조례호수공원	
	순천만국가정원	
	금당 버드네공원	
	연향동 동성공원	
공공건축물	순천시청	
	문화예술회관	
	문화건강센터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	

[조사 지역]

가로

- 보도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평탄하지 않아 자전거도로 등 종합적으로 보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각종 시설물들이 혼재되어 있음
- 차량 출입을 위한 과도한 경계석 턱 낮추기와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의 일부 턱 낮추기로 인해, 보도면의 굴곡이 심하여 보행자가 걷기 힘든 경사 발생
- 점자블록이 도중에 끊기거나 굴곡이 많은 경우가 있으며, 가로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 등에 의해 점자블록 차단
- 볼라드는 보도 등으로 차량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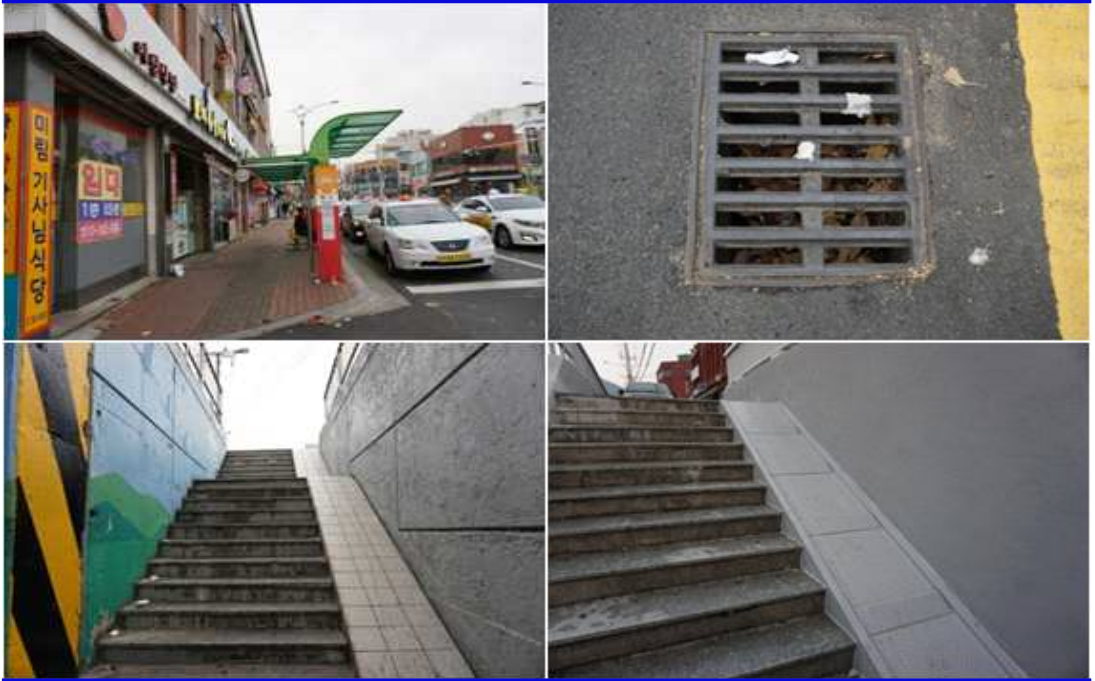
- 시민로 : 차량진입구역, 보도구역의 안내시설, 우회정보제공, 고원식 교차로 등



- 순천부읍성(성터둘레길) : 보도 유효폭, 점자블록, 골목계단, 안내시설, 속도저감방안 등



- 순천터미널 주변 : 점자블록, 시설물안내 및 우회정보, 속도저감, 지하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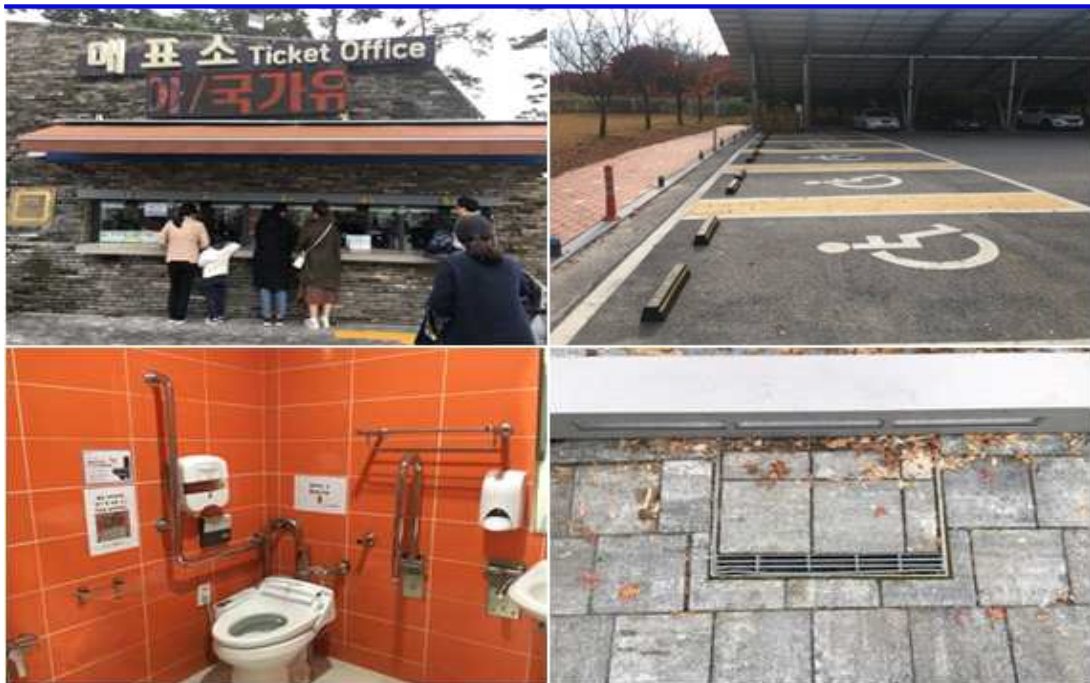


- 연향동 번영길 : 보도 유효폭, 보도기울기, 점자블록, 자전거도로 등



공원

- 접근로의 경우 별도의 보행로가 없거나, 법적 최소 유효폭 기준만 만족하는 보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에 설치된 도로 시설물들로 인해 보도 유효폭이 좁아지는 구간이 존재
- 공원 내 안내시설은 장애인 등을 배려한 정보표기가 미비한 실정이며, 키가 작거나 휠체어 사용자의 안내판 이용을 위한 접근에도 제한적임
- 공원 내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정보 및 경고표시 또한 미흡한 편임
- 휴게공간은 보행로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부 공원의 경우 휴게공간까지의 접근로 상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등받이나 손잡이가 없는 휴게의자를 설치하여 노인 등이 이용 시 불편을 줄 수 있음
- 공원 내 보행로는 일부시설의 바닥마감이 평탄하지 못한 재질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지의 높이차이로 설치된 경사로의 안정성이 미흡하였음
- 순천만국가정원 : 사각지대 음성전송 가능한 CCTV, 다목적화장실 경보시스템 등



- 조례호수공원 : 주출입구, 다국적 안내판, 놀이시설 등



- 동성공원 : 접근로, 주차장, 산책로, 다목적 화장실, 놀이시설 등



- 버드네공원 : 주출입구, 주차장, 산책로, 놀이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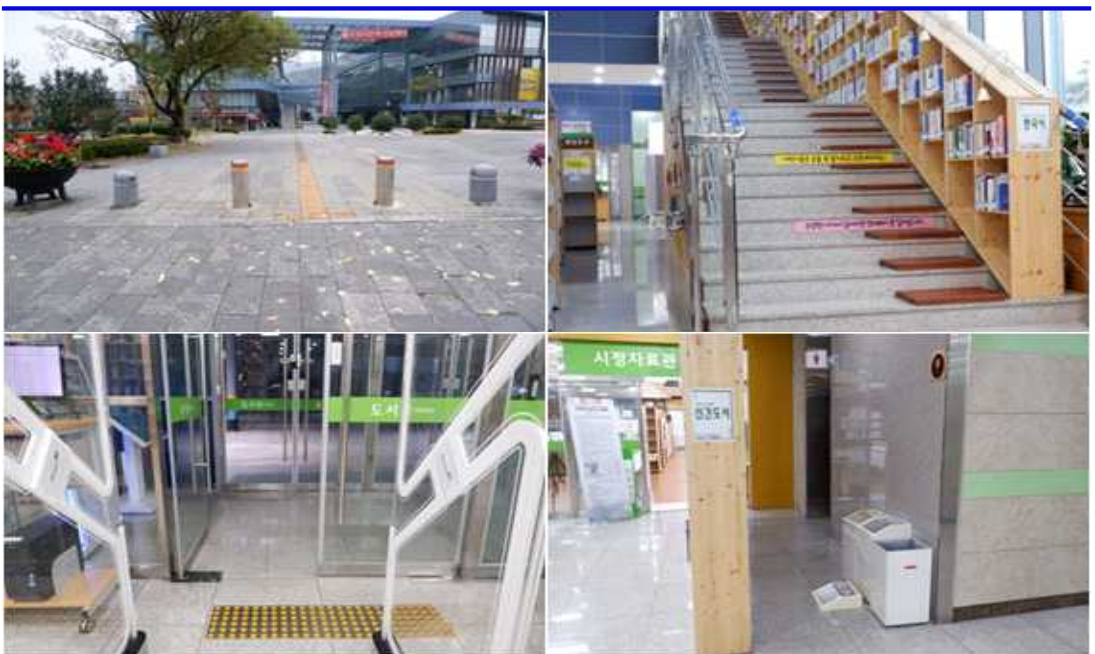
공공건축물

- 접근로는 경사가 급하며, 보차혼용 구조가 대부분임
- 주차장 보행안전통로 미확보 및 주출입구 점자블록은 통일된 설치기준 적용이 필요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출입문 옆 벽면에 실에 대한 안내 및 점자안내 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있으며, 홀과 복도에 미끄러운 재질의 바닥마감재 설치
-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나 홀, 민원실 등에서 화장실까지의 유도, 안내시설은 미흡함
- 화장실의 일부 접근로 구간에 단차가 존재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마감되어 있으며, 일부 장애인 화장실은 출입문(여닫이문) 날개벽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문 사용이 어려움
- 안내데스크는 하부공간이 미확보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어려우며, 민원실에서의 접수대 등은 앉아서 이용 가능한 구조여서 시각장애인 등의 유도는 미흡

- 순천시청 : 장애인 유도, 벽과 손잡이, 자동문 설치, 계단 손잡이, 화장실, 수유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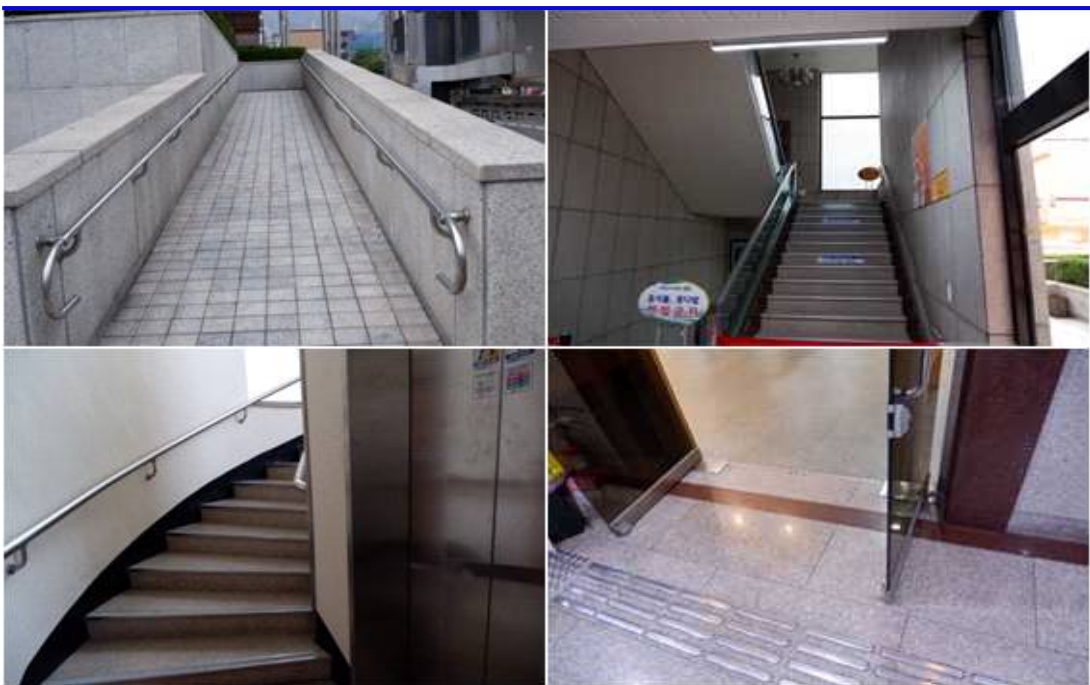
- 문화건강센터 : 출입구 안내 및 경고시설, 손잡이, 자동문 설치, 화장실 통로 등



-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 보도 및 통로 벽과 손잡이, 자동문, 출입문 손잡이, 경사로, 화장실 보안 등



- 문화예술회관 : 장애인용 통로, 자동문, 경사로, 계단 손잡이, 화장실 접근통로, 수유실, 안내데스크 등



공공정보매체

- 보행공간 내 안내시설은 저시력 보행자 등을 배려한 안내표기가 미흡하며, 보행 주요 시설에 대한 방향안내시설 설치가 미흡함
- 시각장애인 유도시설은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구 등 주요 경고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며, 시각장애인 보행유도 시설 설치도 미흡함
- 공원 등 공공공간 안내시설은 장애인, 외국인 등을 배려한 정보표기가 미흡하며, 키가 작은 사람, 휠체어 이용자 등 안내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위치와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

순천시 직원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

설문개요

- 기 간 : 2018.11.29. ~ 12.07 (9일간)
- 목 적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순천시청 전직원 인식조사
- 대상자수 : 2055명 / 참여자수 : 369명 / 참여율 : 18%

일반사항

- 설문응답자 연령은 50대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0대 순으로 분포하였음

연 령	응답자수	상대비율	비 고
20대	64	17%	
30대	82	22%	
40대	92	25%	
50대	128	35%	
60대 이상	3	1%	

- 설문응답자 성별은 남성 52%, 여성 48%로 분포하였음

성 별	응답자수	상대비율	비 고
남 성	191	52%	
여 성	178	48%	

유니버설디자인 인지 여부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매우 잘 아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는 56%,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응답자는 44%로 조사됨
- 많은 직원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유니버설디자인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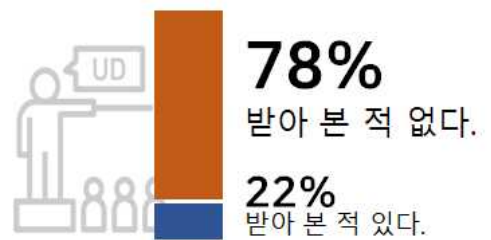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상대비율	비 고
매우 잘 안다	38	10%	
잘 안다	171	46%	
잘 모른다	135	37%	
전혀 모른다	25	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여부

-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교육(공공디자인, BF, 장애인편의증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22%,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직원은 78%로 조사됨
- 순천시에서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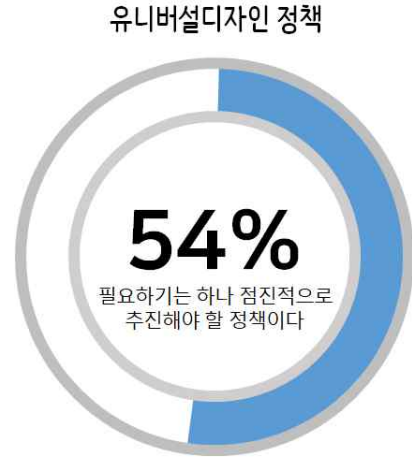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구 분	응답자수	상대비율	비 고
있다	80	22%	
없다	289	78%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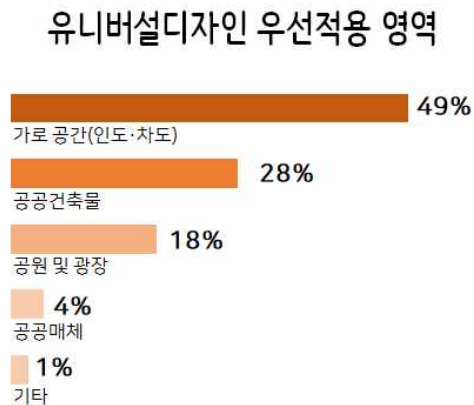
-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기는 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는 응답이 54%, '매우 필요한 정책이며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34%, '유사규모 도시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10%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점진적인 추진을 통한 정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응답자수	상대비율	비고
매우 필요한 정책이며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124	34%	
필요하기는 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199	54%	
유사규모 도시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37	10%	
지금은 불필요한 정책이다	9	2%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우선 적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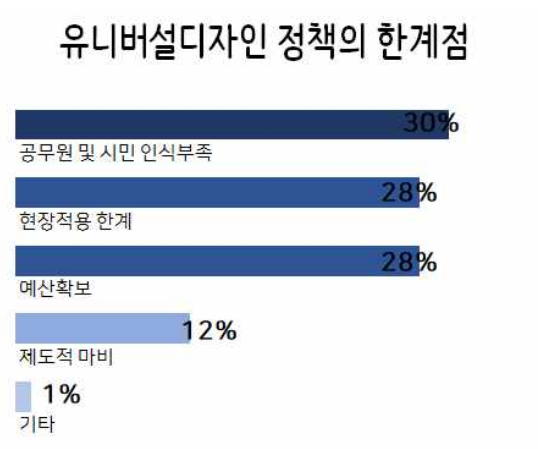
-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우선 적용 영역은 가로 49%, 공공건축물 28%, 공원 및 광장 18% 순으로 나타났음
- 시민들이 매일 접하고 도시경관의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인도 및 차도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체감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응답자수	상대비율	비 고
가로(인도, 차도)	179	49%	
공공건축물	102	28%	
공원 및 광장	68	18%	
공공정보매체	13	4%	
기 타	7	2%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적 한계

-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적 한계는 공무원 및 시민 인식부족 30%, 예산확보 28%, 현장에서의 적용 한계 28%, 제도적 미비 12% 순으로 나타났음
-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손쉬운 가이드라인,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이 요구됨



구 분	응답자수	상대비율	비 고
예산확보	104	28%	
공무원 및 시민 인식부족	112	30%	
제도적 미비	43	12%	
현장에서의 적용 한계	105	28%	
기타	5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제1조)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으로서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제3조)
-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제4조)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제7조)
-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도록 규정(제1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로 정의하고,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지칭(제2조)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제3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로 규정(제9조)
-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8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
-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함(제2조)
- 이 법률은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보행권)를 규정(제3조)
-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보행정책의 추진·수립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조)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제9조)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음(제16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

-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유 형	법규명	목적	주요내용
법 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장애인의 참여금지, 장애인의 장애 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설비 이용, 정보에 접근, 설치대상: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교통약자법	교통 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이동편의시설확충, 보행환경개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설치대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보행우선구역지정
	보행안전법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보행자의 안전, 접근의 편리성, 삶의 공간으로 쾌적성, 미관성 고려
조 례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공공시설의 조성, 제작, 설치,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 비교]

유니버설디자인 자치법규 제정 현황

• 자치단체 현황

- 광역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구성요소

-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
-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 기본계획수립,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실태조사 등
-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실현방안 : 인증마크의 교부,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설치 및 지정, 시범사업 시행 등
- 관계기관 등의 협조 : 공모전 및 세미나 개최 등,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교육 등
- 위원회 설치 : 위원회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타 지자체 정책추진 동향

• 서울시

- 정책추진 동향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는 별도로 서울형 무장애 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 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교육청 관련 건축물의 경우 국가인증인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서울형 무장애 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어,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 2014년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 사업추진 동향

- 서울시는 24종의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장애물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복지시설 UD컨설팅 프로세스 북 등을 제작 배포하여,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이외에도 서울시내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등을 대상으로 무장애공원 조성사업 및 산책로 등을 무장애화 하였고, 공공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등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기존의 민간시설, 복지시설, 공원 등의 점적인 정비에서 향후 도시환경 전반의 UD화를 목표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 정책추진 동향

- 경기도는 2013년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UD와 관련하여서는 제품 영역에 대한 것도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아 운영 중에 있으며, 안내사인 및 정보영역도 적용범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시행규칙 수준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도의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음
- 공공건축물 및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인증인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추진 동향

- 어린이·장애인·노인계층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마련을 위해 민·관·학 협업을 통해 복지시설 및 제품개발, 공간개선 디자인 컨설팅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표준설계 적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UD현장체험 교육 및 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탐험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화성시

- 정책추진 동향

- 화성시는 2008년 국내에서 최초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공공영역에 속해 있는 도시와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리고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에 조례 준수 의무기준을 명시함
- 자체 시행규칙을 통해 시설물의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UD위원회 통과를 조건으로 제도 준수를 강제하고 있음

- 사업추진 동향

- 화성시내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도로, 공원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동구청

- 정책추진 동향

-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화성시에 이어 2011년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에 의무기준을 강제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은 권장하고 있음

- 사업추진 동향

- 2013년 6월부터 어린이 공원에 대한 UD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1km 이내의 1개 구간에 대한 UD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까지 58개 공동주택단지에 점차적으로 BF(Barrier Free)와 CPTED(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할 계획임

•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2015년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조성 및 공모전 개최 등의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음

• **천안시**

- 천안시는 2015년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시책 추진,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진주시**

- 정책추진 동향
 - 진주시는 2012년 ‘진주시 무장애 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5년 무장애 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 조례에 의한 자체 인증기준인 ‘진주형 무장애 시설인증 기준’을 수립하여 국가 인증 기준으로는 인증 받기 힘든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이 최소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고 있음
- 사업추진 동향
 - 주거시설 개선, 공공공간 개선, 노인 등의 이동보조시설 지원 등의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모전,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별도의 진주시 무장애 도시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무장애시설과 관련된 국가 및 진주형 인증을 획득한 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장애 도시조성 관련내용 홍보 및 사업추진 실적과 계획을 게시하고 있음

•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2012년 국내에서 최초로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에 「전라남도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권장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0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02 가로

03 공원

04 공공건축물

05 공공정보매체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정의

원칙

- 순천시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환경이 요구됨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은 사회적·물리적 장벽의 없애고, 그러한 장벽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칙으로 함

방향성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을 목표로 사람중심의 가치와 포용의 기능성, 자연·문화 등을 반영한 정체성에 기반을 둠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을 기본철학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실현방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확산시켜 나감
-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순천시의 시정목표인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를 완성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능임
- 순천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연과 문화 이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은 유니버설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등 연관분야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방향성

지향가치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은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을 지향하며, 이는 노령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공동체,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출발하게 됨
- 노령자 배려 도시, 어린이 안전 도시, 장애인 친화 도시, 외국인 글로벌 도시, 공동체 지향 도시, 임산부 편의 도시를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표준이며 필수요소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지향가치

특징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에 관련된 기존 법률, 조례, 기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합·연계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발굴·제시 함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순천시민과 방문객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실현하고자 함

구분	세부명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건축법
기준·규칙·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순천시 도시건축 조례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성북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BF공원)

가이드라인 범위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가이드라인 제공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의 4개 부문 7개 영역, 34개 세부 항목으로 설정,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물리적 환경조성을 통한 이용접근성 제고

경기도 UD
가이드라인
2011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정보매체

제주도 UD
가이드라인
2016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교통

관광시설

공공정보매체

서울시 UD
가이드라인
2016

가로

공원, 광장

공공건축물

성북구 UD
가이드라인
2017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순천시 UD
가이드라인
2018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

가로(보도 및 차도)

구 분	주 요 내 용
보행공간	유효 폭, 유효높이, 단차, 기울기, 바닥마감, 배수, 점자블록
차량진입구역	보도와 차량진입의 관계, 주차장 진입구역, 요철포장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보도	
점자블록	점자블록 규격, 점자블록 재질, 설치방법
골목계단	손잡이, 형태, 재질과 마감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주차시설
시설물구역	공통, 안내시설, 우회정보, 여객정류장 설치, 버스정류장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진입공간, 바닥마감, 안내시설
차도	
속도저감 방안	차도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횡단보도 설치,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공원

구 분	주 요 내 용
진입공간	보행접근로, 매표시설,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관리사무소, 차량진입방지시설
공원보행로	산책로, 계단, 경사로
화장실	접근로, G화장실, 일반화장실, 방법 및 안전, 기타
편의공간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공간	접근로, 보행 유효 폭, 기타
놀이터	놀이시설, 휠체어 이용 어린이 놀이시설

공공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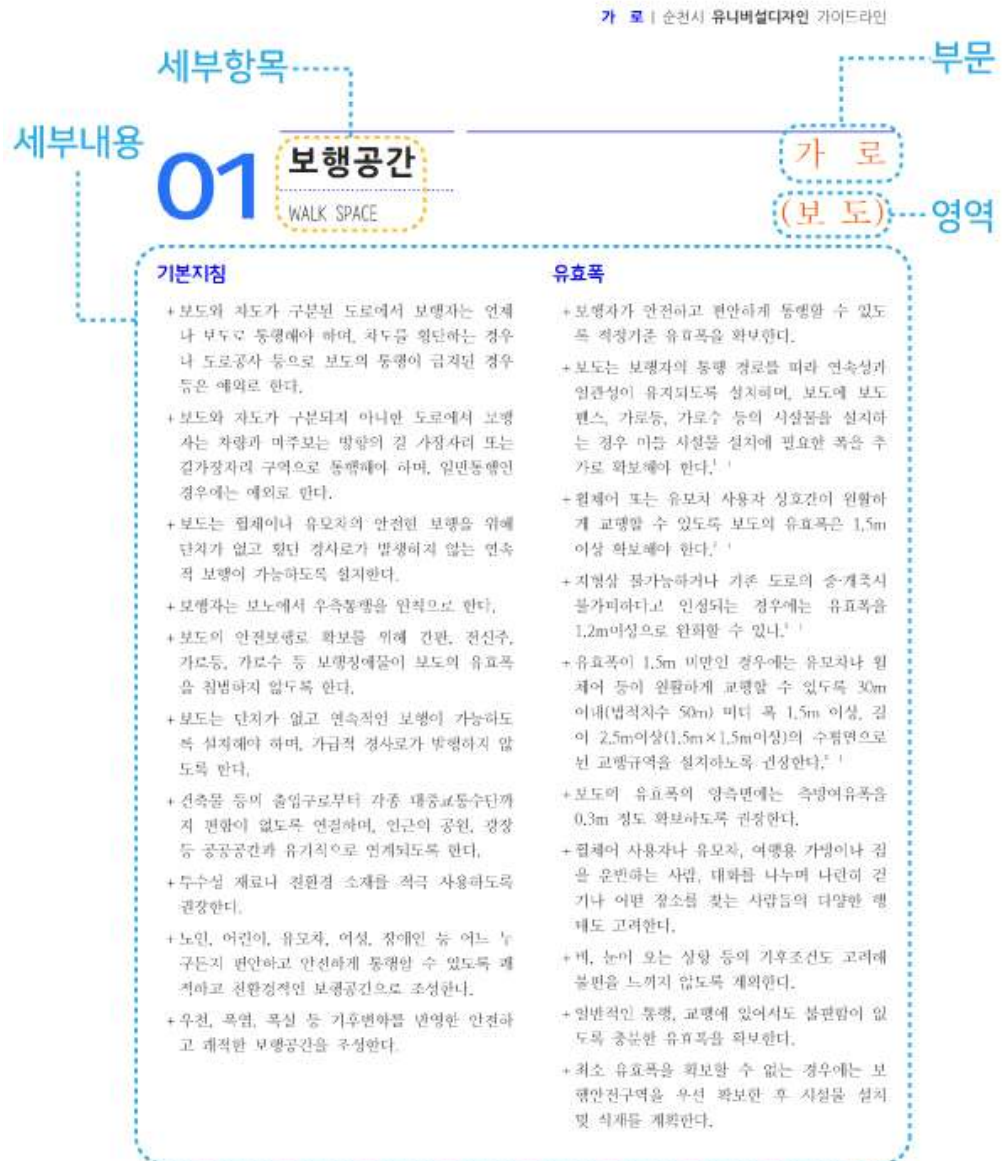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접근 공간	보행접근로 재질과 마감, 유효 폭, 기울기, 차도와의 경계, 보행안전통로, 배수구 덮개
	출입구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문의 형태, 턱 낮추기, 안내 및 경고시설
	주차구역 주차구역의 크기, 주차구역 표시, 보행안전통로, 조명과 보안, 유도 및 안내표시
이동 공간	복도/통로 유효 폭, 바닥마감, 복도의 구조, 손잡이, 보행장애물, 시각장애인의 유도, 안전성 확보, 조명
	출입문 유효 폭과 활동 공간, 문의 형태, 출입문의 손잡이, 턱 낮추기, 유도 및 안내
	경사로 구조와 형태와 유효 폭, 마감, 손잡이, 경사로 안내
	계단 형태, 유효 폭, 손잡이, 재질과 마감, 계단의 식별, 디딤판과 철판
	승강기(엘리베이터) 활동공간, 출입문, 승강기 내부, 승강기 조작설비, 안내장치, 안전 및 조명
	에스컬레이터 구조 및 형태, 손잡이, 승강장, 유도 및 안내
	휠체어 리프트 기본지침, 일반사항
	손잡이 설치, 손잡이 형태와 재질, 안내 표시
서비스 공간	화장실_ 공간 접근통로, 출입문, 바닥마감, 화장실부스, 안내표시, 안전 및 범죄예방
	화장실_ 설비 대변기, 대변기용 손잡이, 소변기, 세면대, 영유아 설비, 다목적화장실
	수유실 접근, 구조, 편의설비
	접수·안내 데스크 구조, 유도 및 안내, 비치용품
	안내표시 안내판의 형태, 표시방법,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비상경보장치, 유도안내
	지하주차장 조명, 안전 및 보안시설, 안내사인

공공정보매체

구 분	주 요 내 용
시각	설치방법, 유도안내기준, 문자, 픽토그램, 색상
촉각·청각·후각정보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안내표지판, 입식표지판, 음성안내, 유도신호, 후각정보, 경보 및 피난

가이드라인 구성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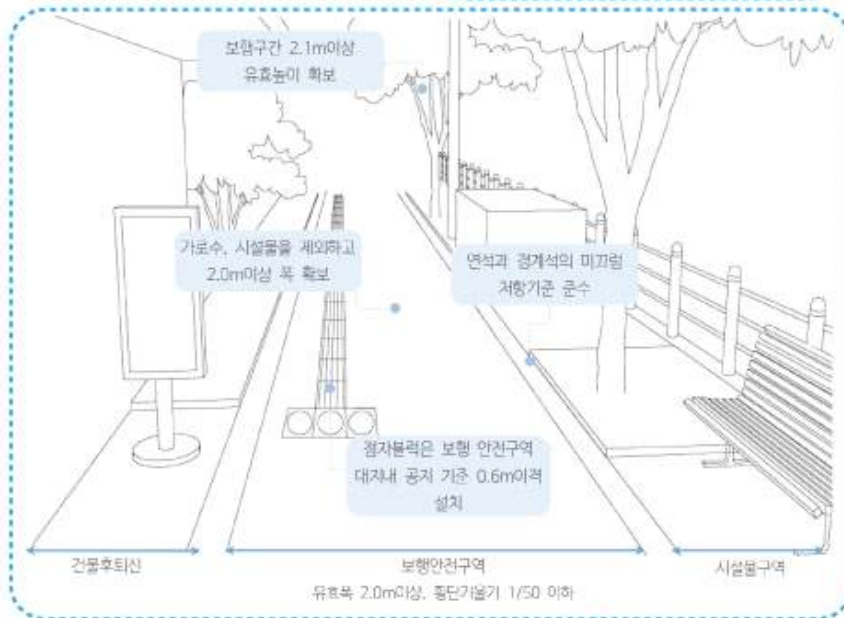
- 또한 실무자용 체크리스트와 참조그림을 기입해 활용도를 높이고 가이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

체크리스트

- 원칙적으로 황색 계열을 사용하되, 설치장소의 주변상황에 따라 조파를 잘 이루면서 병노나 재도의 차이가 큰 점자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주변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 및 다른 보행자과의 동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보행안전구역 대차내 공지 폭 기준선에서 0.6m 이격하여 설치한다. (도로)(이동)
- 자정물 등으로 인한 점자블록의 우회설치는 지양한다.
- **가형** 점자블록의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세부규정을 참고한다.

체크리스트

보행안전 통로 유효폭 1.5m이상 설치	<input type="checkbox"/>
1.5m 폭의 보도구간 : 음모차, 휠체어 교행 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보행구간: 2.1m 이상 유효 높이 확보	<input type="checkbox"/>
단차 발생시 진행방향 모따기 가공	<input type="checkbox"/>
진행방향 횡단기울기 1/50 이하	<input type="checkbox"/>
진행방향 종단기울기 1/18 이하	<input type="checkbox"/>
골리 넘어지지 않도록 평평한 마감	<input type="checkbox"/>
조금한 패턴 및 험탄한 색상 사용 지양	<input type="checkbox"/>
배수구 담개 구멍/높이: 1cm 이하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 : 보행안전구역 대차내 공지 기준 0.6m이격 설치	<input type="checkbox"/>
연석과 경계석의 미끄럼 저항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참조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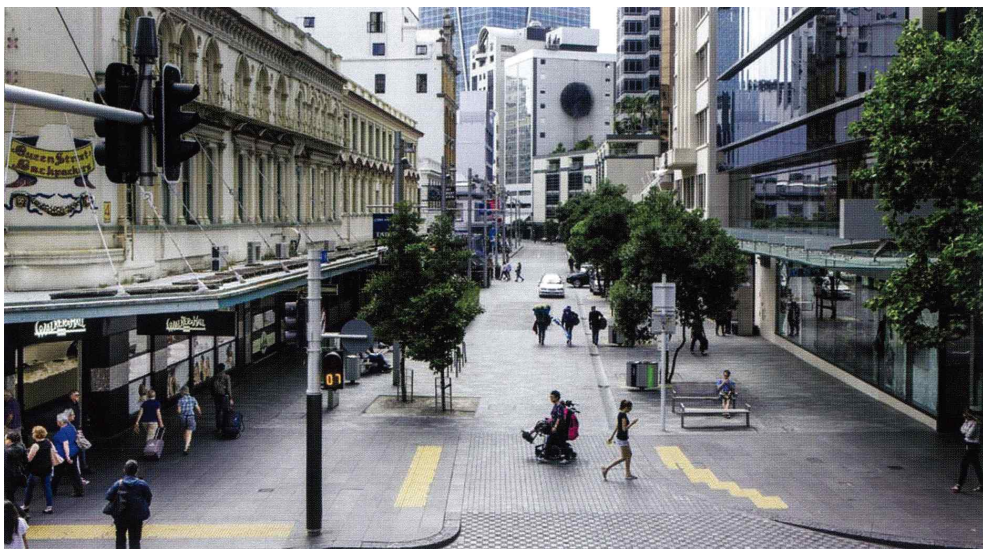
2. 가 로 개 요

적용범위

- 신규로 가로를 개설하거나 기존 가로를 재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
- 본 가이드라인에 지정하는 가로는 차량 통행이 위주인 고속도로 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일반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도로 포함
- 본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보도 폭이나 기울기 등에 대한 설계지침을 지형상 등의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 기존 도로는 예외로 하지만,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하여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

적용공간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공간은 가로를 보도와 차로로 구분하여 적용
- 보도는 보행공간, 차량진입구역, 대지안의 공지, 점자블록, 골목계단, 자전거 도로, 시설물구역을 대상으로 함
- 차도는 국지도로, 속도저감 방안,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함



01 보행공간

WALK SPACE

가 로 (보 도)

기본지침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나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하며, 일반통행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보도는 휠체어나 유모차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단차가 없고 횡단 경사도가 발생하지 않는 연속적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 보도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해 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보행장애물이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 건축물 등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수단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하며, 인근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 투수성 재료나 친환경 소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 노인, 어린이, 유모차, 여성, 장애인 등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
- + 우천,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를 반영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유효폭

-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정기준 유효폭을 확보한다.
-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보도펜스, 가로등, 가로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도로 구조·시설 규칙]
- + 휠체어 또는 유모차 사용자 상호간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해야 한다.[교통약자법]
- +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폭을 1.2m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 +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30m 이내(법적치수 50m) 마다 폭 1.5m 이상, 길이 2.5m이상(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교행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교통약자법]
- + 보도의 유효폭의 양측면에는 측방여유폭을 0.3m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여행용 가방이나 짐을 운반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걸거나 어떤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도 고려한다.
- + 비, 눈이 오는 상황 등의 기후조건도 고려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한다.
- + 최소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구역을 우선 확보한 후 시설물 설치 및 식재를 계획한다.

유효높이

- + 전방의 장애물 여부를 주시하지 않고 보행할 때에도 안전에 위협이 없는 충분한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 보행구간에는 2.1m이상의 유효안전높이를 확보한다.[교통약자법]
- + 유효높이는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보행할 경우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므로 법적기준 2.1m보다 상향된 유효높이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교통약자법]
- + 유효높이는 보행안전구역 뿐만이 아닌 인접 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설치구역)까지 적용한다.

단차

- +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마감한다.
-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시에는 진행방향 모따기 가공으로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울기

- + 보도는 단차가 없는 평탄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한다.
-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중·횡단 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치한다.



보도의 파손 및 움기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 관리가 중요

- +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 바닥 높이와 보행안전구역의 높이에서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할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 영역에서 경사를 보완한다.
- + 진행방향의 종단구배는 1/20이하(법적치수 1/18이하)를 권장하며, 지형상 또는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1/12이하로 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 + 진행방향의 횡단구배는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1/50이하(법적치수 1/25 이하)를 권장한다.[교통약자법]
- + 경사로 전체에 대한 구배 안내 및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안내사인을 설치한다.[BF]
- + 경사가 연속되는 지역의 평탄한 구간을 활용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바닥마감

- +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교통약자법]
-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유모차가 가급적 흔들리지 않으며, 이음새의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음새의 틈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교통약자법]



평탄하면서도 패턴을 활용하여 인근 대지내 상황을 알려주는 마감의 보도

- + 바닥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고 0.5cm이상의 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 바닥포장재는 특정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색채나 종류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등의 조잡함을 지양한다.
- + 타일계열의 바닥포장재는 줄눈을 좁혀 보행시의 불편을 줄이고, 사교석 계열의 거친 마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 + 투수성 보도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 재료의 명도 및 질감 등을 활용하여 보행안전구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 휠체어나 유모차, 하이힐을 신은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바닥재의 종류 및 시공방법을 선택한다.
- + 맨홀뚜껑 등의 시설물은 바닥 표면과 평탄하게 연속되도록 마감한다.
- +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연석과 경계석은 모두 미끄럼 저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미끄럼사고를 예방한다.
- + 저시력인의 시지각적 인지를 위한 포장재료간의 표면휘도는 LRV(Light Reflectance Value) 최소 30 이상을 권장한다.

배 수

- + 보행안전구역 내 배수구 설치를 지양한다.
- + 보도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로 하며,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1cm이하의 간격이 되도록 설치한다.[교통약자법]
- + 덮개의 표면은 보도 포장마감재와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며, 보도 포장재와의 이음새 간격을 최대한 좁혀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우수 처리는 보행 진행방향이 아닌 식수대나 차도 쪽으로 배수하도록 한다.
- + 보행자의 동선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배수구는 불순물이 걸려 배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틈새 간격을 여유 있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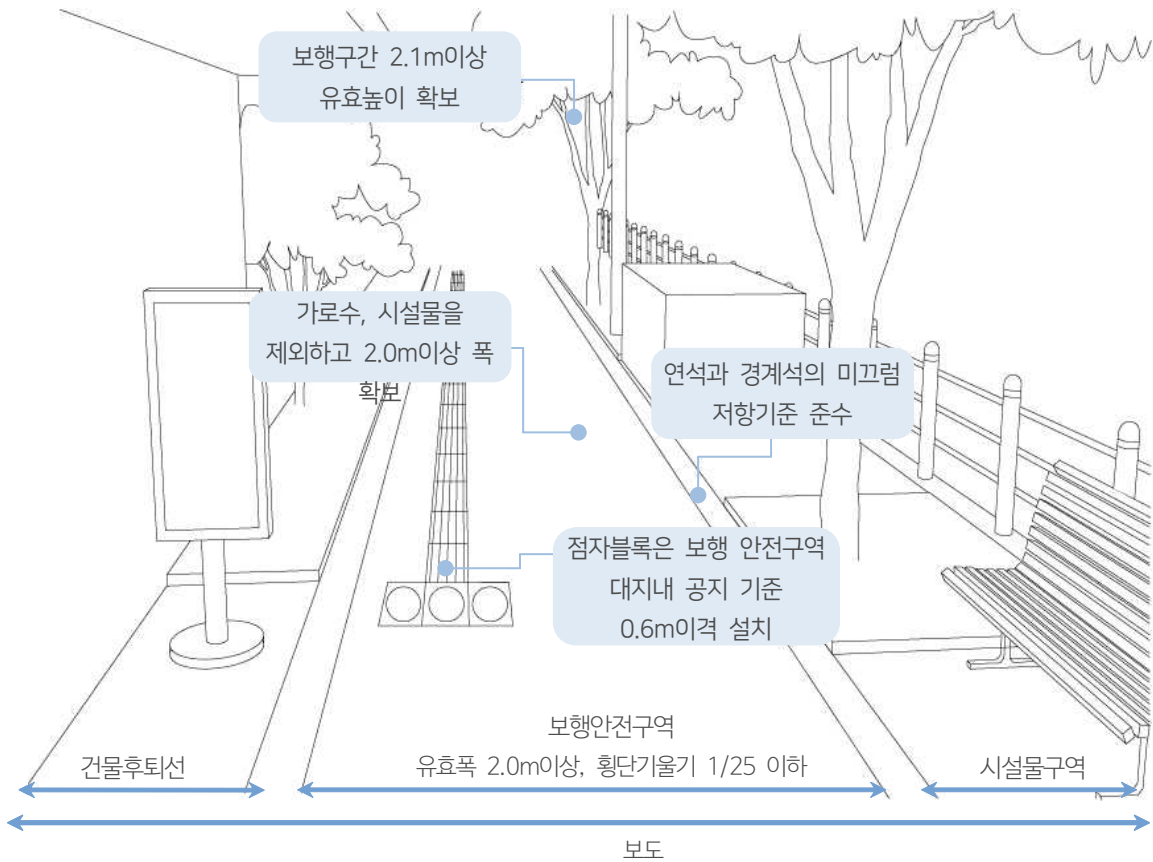
점자블록

- + 다른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유도는 통일된 방법으로 가로시설물 등에 의해 끊기지 않고 연속성이 있도록 설치한다.
- +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확보되는 보도는 점자블록(특히 선형블록)을 설치하기보다는 바닥포장재의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30cm, 돌출높이는 0.5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 점형블록은 건물출입구, 가로시설물 등 장애물이 있는 지점, 방향전환 지점,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 높이차가 있는 바닥면이나 추락위험이 시작되는 지점 등에 경고 및 주의 환기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 + 경고 및 주의환기용 블록은 보도의 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유도와 경고가 필요한 지점 등에 음성이나 진동 등과 함께 복수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 횡단보도와 교통섬의 진입부분 등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한다.[도로안전시설 설치]
- +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장애물이 완전 배제된 선형블록 좌우측의 최소폭은 각각 최소 0.9m이상이 필요하며, 가급적 1.2m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원칙적으로 황색 계열을 사용하되, 설치장소의 주변상황에 따라 조화를 잘 이루면서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큰 점자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해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설치한다.[교통약자법]
- +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 및 다른 보행자와의 동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보행안전구역 대지내 공지 쪽 기준선에서 0.6m 이격하여 설치한다.
- + 지장물 등으로 인한 점자블록의 우회설치는 지양한다.
- + 기타 점자블록의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세부규정을 참고한다.

체크리스트

보행안전 통로 유효폭 : 2.0m 이상	<input type="checkbox"/>
1.5m 폭의 보도구간 : 유모차, 휠체어 교행 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보행구간: 2.1m 이상 유효 높이 확보	<input type="checkbox"/>
단차 발생시 진행방향 모따기 가공	<input type="checkbox"/>
진행방향 횡단기울기 1/25 이하	<input type="checkbox"/>
진행방향 종단기울기 1/18 이하	<input type="checkbox"/>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편평한 마감	<input type="checkbox"/>
조잡한 패턴 및 현란한 색상 사용 지양	<input type="checkbox"/>
배수구 덮개 구멍/틈새: 1cm 이하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 : 보행안전구역 대지내 공지 기준 0.6m이격 설치	<input type="checkbox"/>
연석과 경계석의 미끄럼 저항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02 차량진입구역

CAR ENTRANCE ZONE

기본지침

- + 차량진출부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보도면은 높이변화가 없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한다.
- + 공공보도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차량통행에 따른 보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 + 보행자를 위해 보도는 설치 높이를 유지하는 고원식횡단보도나 보도 턱 낮춤 등의 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최소한의 보행안전구역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 + 턱 낮추기는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이용자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의 진입지점이나 기타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있는 곳에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는 시공방법이다.

보도와 차량진입의 관계

- + 자동차가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와 차량진출입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보도로의 차량진출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으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 + 차량진출입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설물 구역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 +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해야 한다.[교통약자법]

- + 차량진출입부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는 5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이가 5cm이상인 경우에는 1/6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 차량진출입부의 경사로는 보도 유효폭 2.0m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하도록 하며, 식재대가 있는 경우에는 식재대 폭을 활용한 기울기로 경사로를 설치한다.
- + 보도 폭이 좁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 폭만큼 보도면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한다.
- +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교통약자법]

주차장 진입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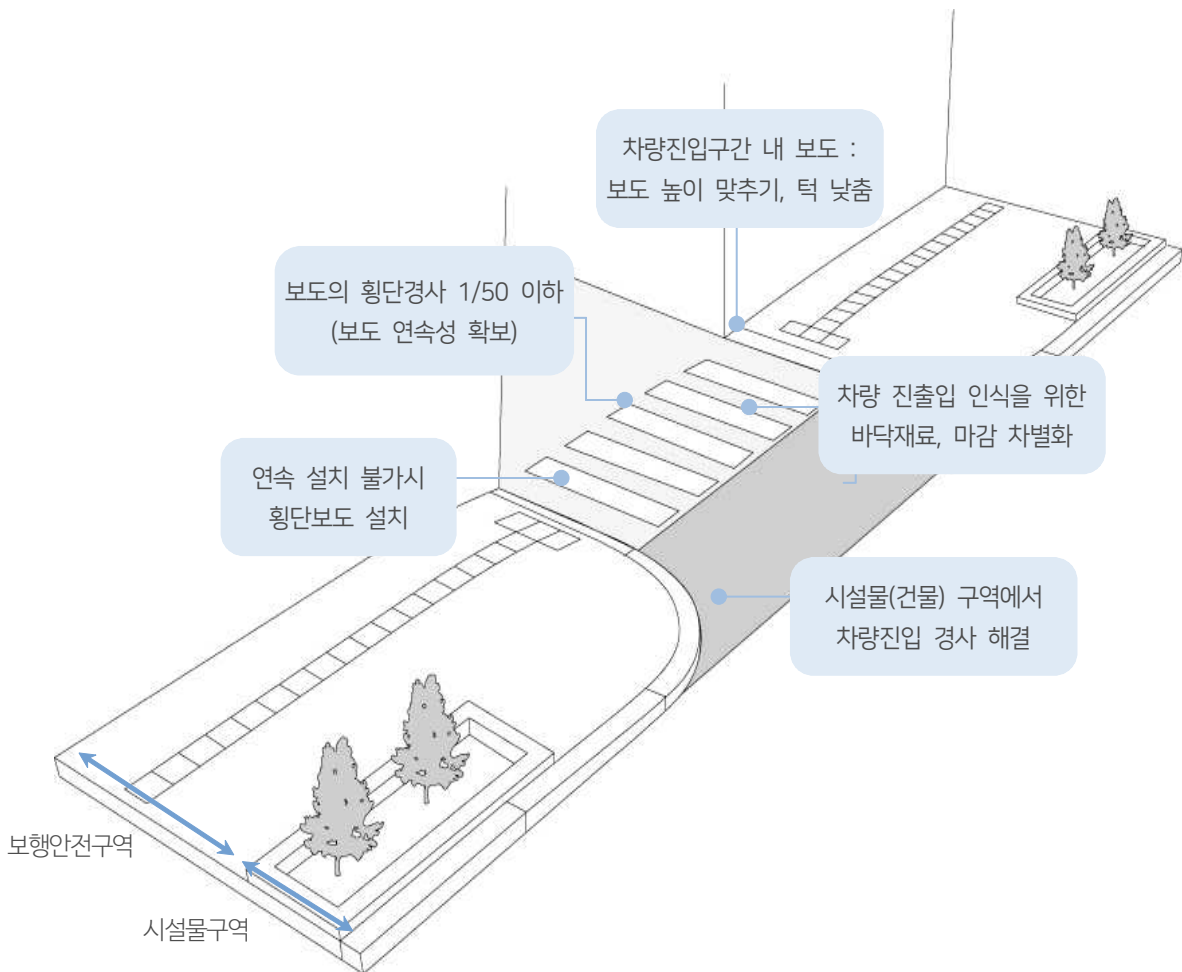
- + 차량의 주차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특히 진행방향의 횡단경사는 1/50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확보를 위한 경사가 발생할 시 적어도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교통약자법]
- +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하는 사실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재료·마감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 주차장 진입구간이 길게 형성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이 연속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철포장

- + 차량 진출입 속도를 저하시키고 보행자에게 경고음 발생시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진출입부에 요철포장을 할 수 있다.
- + 노면을 작은 요철 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한다.[교통약자법]
- + 횡단보도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차량진입구간 내 보도 : 보도 높이 맞추기 또는 턱 낮춤	<input type="checkbox"/>
차량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는 시설물 구역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차량 진출입 인식을 위한 바닥재료, 마감 차별화	<input type="checkbox"/>
진행방향의 횡단 경사도 1/50 이하	<input type="checkbox"/>
보행 안전구역의 단절 구간 최소화	<input type="checkbox"/>
연속 설치 불가시 : 횡단보도 설치	<input type="checkbox"/>
속도저하 및 보행자 경고음을 위한 진출입부 요철포장	<input type="checkbox"/>



03 대지안의 공지

PUBLIC OPEN GROUND

기본지침

- + 연접한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보행안전구역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계획한다.
- +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보행환경에 영향이 있을 때는 건축선 내부의 건축물에서 제거한다.
- + 공개공지는 인접보도와 단차가 없는 수평형태로 조성하여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조성한다.

건축물 전면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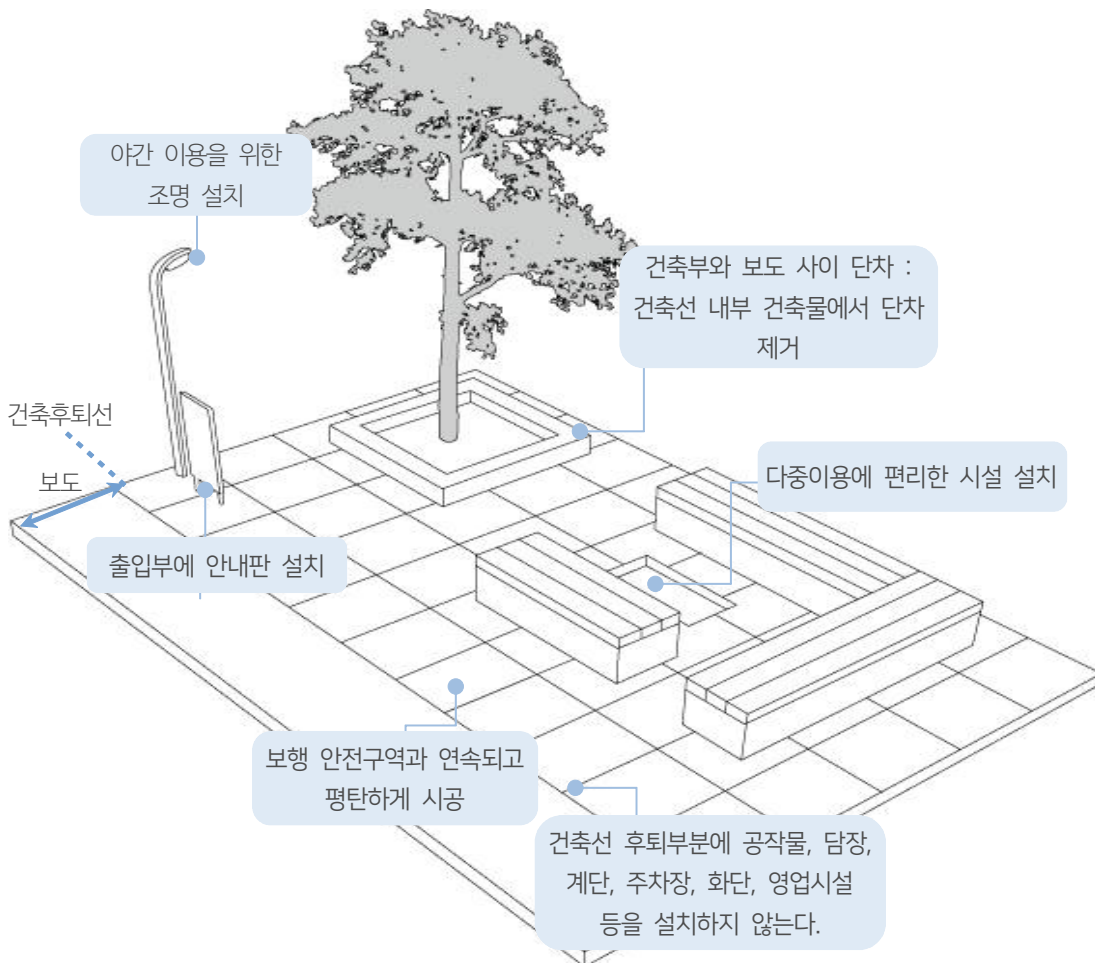
- + 보행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연접한 보행안전구역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계획한다.
- + 건축주의 자의로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보행 편의를 위해 연접한 보행 안전구역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단차는 건축선 내부의 건축물에서 제거하도록 한다.
- + 완만한 경사로 조성을 위해 보도를 침범하는 조성방법을 불허한다.
- + 연접한 보행안전구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화단 등 지장물의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한다.
- + 미관지구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순천시 경관지구 조례]

공개공지

- + 공개공지란 “건축물 전면부 영역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일정 기간에 부합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공공의 편의 및 도시의 미관을 위해 조성되는 십터 형태의 공지”를 지칭한다.
- + 지속 관리하여 각종 장애물로 인한 보행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도와 연속적으로 계획하여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주요 보행안전구역에 면하는 소공원 및 소광장 형태로 설치하되, 다른 인접 공공공간이나 타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 +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행동선 유지와 교통약자(휠체어 등)의 접근을 편리하게 한다.
- + 주차장으로의 전용을 금지한다.
- + 보도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접근로 설치를 권장한다.
- + 보도와 공개공지 사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12이하의 경사로 설치를 권장한다.
- +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예외무대·소규모 공중화장실(33㎡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한다.
- +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등의 조명을 설치한다.

체크리스트

보행 안전구역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시공	<input type="checkbox"/>
건축물과 보도 사이 : 건축선 내부 건축물에서 단차 제거	<input type="checkbox"/>
건축 후퇴선에 화단, 담장, 주차장 등의 설치 금지	<input type="checkbox"/>
보도와 공개공지사이 높이 차이는 1/12 경사로 권장	<input type="checkbox"/>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야간 이용을 위한 조명 설치	<input type="checkbox"/>
출입 부분에 안내판 설치	<input type="checkbox"/>



04 점자블록

BRaille BLOCK

기본지침

- + 색상, 질감의 차이, 손잡이 등 주변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동일 구역(건물, 공원, 보행 구간 등) 내에서는 블록의 배치, 색상, 시공 등이 통일되어야 한다.

점자블록 규격

- +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노란색)을 원칙으로 한다. 점자블록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는 포장재(황색계열의 색상)는 사용하지 않는다.
- + 점자블록은 0.3m×0.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 0.5 ±0.1cm로 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다.[장애인등편의법]
- + 점자블록의 국가표준은 KS F 4561이다.[2016년 표준 코드 기준]

점자블록 재질

- + 고강도 콘크리트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점자블록의 돌출부와 하부가 일체형인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실외에는 고무소재, 합성수지 등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제품, 철재 사용을 금지한다.

설치방법

-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버스정류장, 승강장, 연결 승강기 등)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경고 및 주의환기용 점형블록은 방향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등의 시작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화장실 전면 0.3m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0.9m 범위 안에 설치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블록의 좌우 0.9m내에는 보행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 + 선형블록 좌우에 0.9m 폭의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이용범위를 고려하여 최소 1.2m 폭의 무장애 보행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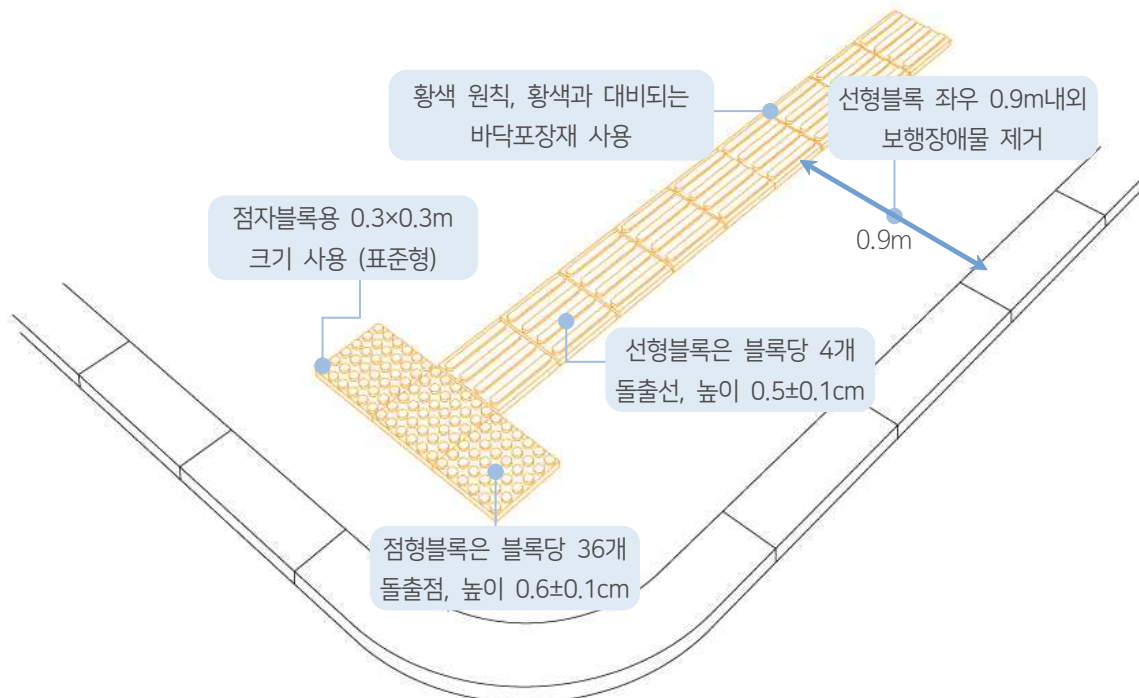
끊겨 있는 점자블록



연속적으로 연결된 점자블록

체크리스트

동일구역 (건물, 공원, 보행공간 등)내 통일된 방법으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황색 원칙, 황색과 대비되는 바닥포장재 사용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용 0.3×0.3m 크기의 표준형 사용	<input type="checkbox"/>
점형블록 : 블록당 36개 돌출점, 돌출점 높이 0.6±0.1cm	<input type="checkbox"/>
선형블록 : 블록당 4개 돌출선, 돌출선 높이 0.5±0.1cm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input type="checkbox"/>
선형블록 좌우 0.9m 내 보행장애물 제거	<input type="checkbox"/>



05 골목계단

STAIR AT PATH

기본지침

- + 구릉지 지역에 조성된 경사진 골목, 주택으로 진입을 위한 계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 + 노인의 경우 급경사의 경사보다 손잡이가 있는 계단이용을 선호한다.
- + 계단의 구간 길이가 긴 경우, 휴식을 위한 공간(참)을 설치한다.
- + 각 계단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계단을 밟을 때 규칙성을 갖도록 한다.
- + 골목의 형태와 구조를 감안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의 보행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시공한다.
- + 계단 손잡이는 몸의 균형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손잡이

- + 계단의 좌우 측면에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 중앙에만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 +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2단 손잡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장애인 등편의법]
- +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로 한다.
- + 계단의 끝부분에는 0.3m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장애인 등편의법]
- + 골목의 폭이 좁아 좌우 양측에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한 쪽 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되 계단의 시작에서 끝지점까지 연속되도록 한다.
- + 불가피하게 손잡이를 계단 중앙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에 일부에 불연속 구간을 만들어 이용자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한다.

- + 골목 계단의 형태가 직선이 아닌 경우, 형태를 따라 손잡이를 설치한다.
- + 손잡이의 마감 재료는 손으로 잡았을 때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권장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마감 손잡이는 지양한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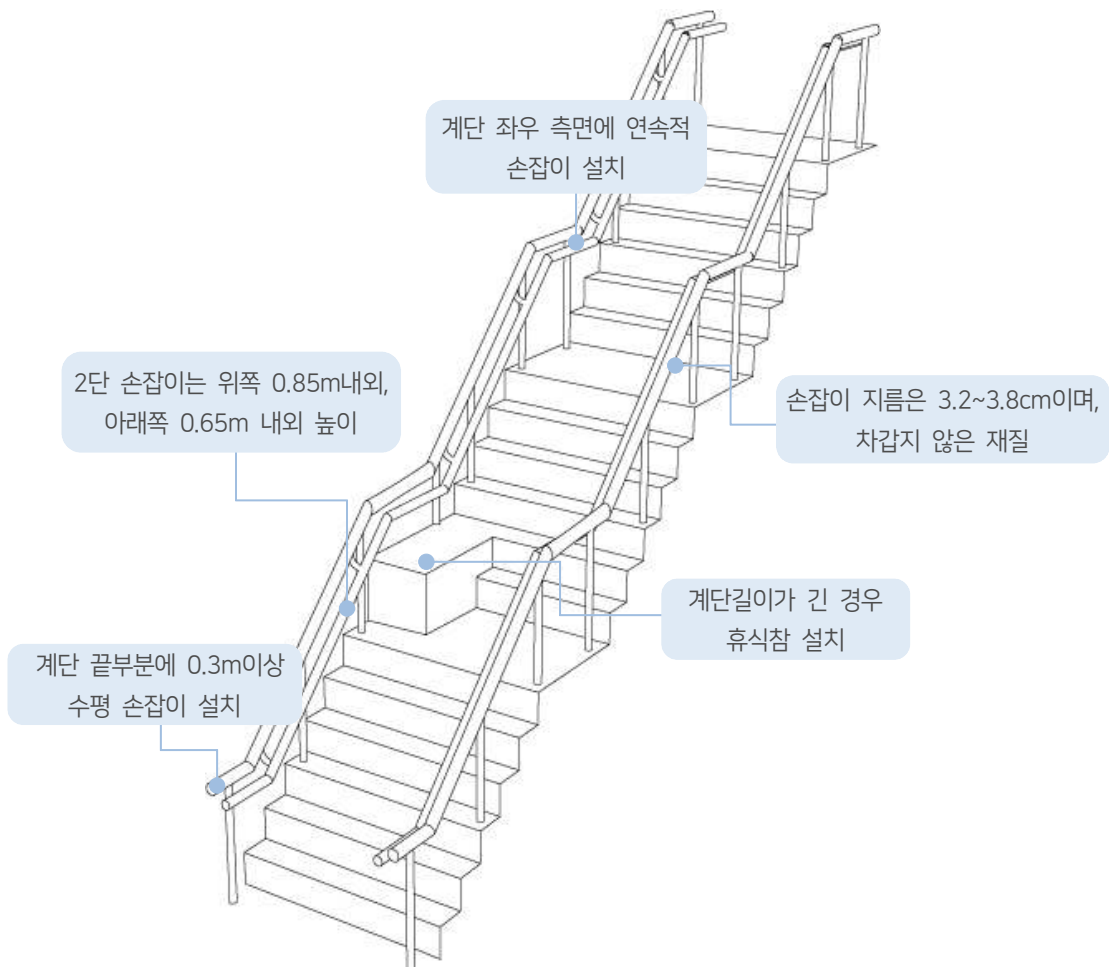
- + 계단의 수평면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 + 휴식 참이 없는 계단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 + 계단 중간에 별도의 휴식 참을 만들 수 없는 경우,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크기의 의자 등의 휴식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재질과 마감

- +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장애인 등편의법]
- + 계단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폭 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장애인 등편의법]
- + 계단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디딤판은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 + 디딤판의 좌우 바닥면 끝 부분은 목발,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높이 2cm이상의 추락방지턱의 설치를 권장한다.

체크리스트

계단길이가 긴 경우 휴식을 위한 참 설치	<input type="checkbox"/>
계단 좌우 측면에 연속적 손잡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2단의 손잡이 : 위쪽 0.85m 내외, 아래쪽 0.65m 내외 높이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 지름 3.2~3.8cm, 차갑지 않은 재질	<input type="checkbox"/>
계단 끝 부분은 0.3m이상 수평 손잡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균일한 각 계단의 높이	<input type="checkbox"/>
휴식 참에 의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계단 주변의 조명 설치	<input type="checkbox"/>



06

자전거 도로

BICYCLE ROAD

기본지침

- +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보행자,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 반영, 연속적인 주행 확보,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 도모, 타 교통수단의 연계성 고려, 친환경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 + 자전거도로는 보행안전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높이형의 설치를 우선 권장한다.
-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분류하며, 각각의 구분기준과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설치하며, 특히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공간에 비해 보행량이 많을 경우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표층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층되는 구간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암적색으로 통일한다.
- + 자전거도로의 난간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개방(open)형으로 하고, 충돌 시 지주부와 자전거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블록아웃형 구조로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 +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양방향을 기본으로 하며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폭(m)		
	도시지역	지방지역	공원 및 하천
양방향	2.4	3.0	3.0
일방향	1.5	1.5	1.5

- + 일방향 도로폭은 1.5m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 + 자전거전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5m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며 차량이 자전거이용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 폭을 확보한다.

제한속도별 구분	분리대 폭(m)
60km/h 이하	0.5m
60km/h 초과	1.0m

- + 보도에 식수대, 화단, 펜스 등의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구분한다.
- +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5~2%의 횡단경사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 따라 측구, 집수정, 맹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 1.5m,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로 한다.
- +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30km/h이상으로 하며, 속도에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에 정지 시거를 고려해야 한다.
- +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100m 간격, 시·종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지방지역 4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m)		
	자전거도로	보도	합계
도시지역 (분리형)	1.5 (일방향)	2.0	3.5
하천변 (분리형)	2.4 (양방향)	1.5	3.9
도시/하천 (비분리형)	3.0 (자전거와 보행자 공존)		

- + 도시지역 보도폭은 부득이한 경우 1.2m까지 축소 할 수 있다.
- + 자전거·보행겸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2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 분리형으로 설치할 경우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의 시거 및 운행에 지장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 분리형은 보도부에 설치하고,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하천변 등 주변여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 +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 + 자전거 전용차로 폭은 1.5m이상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폭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 +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방여유(보도 측)는 최소 0.25m이상을 확보한다.
- +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공간을 확보한다.

제한속도별 구분	분리공간
60km/h 이하	0.5m 이상
50km/h 초과	0.2m 이상

- + 분리공간은 제한속도 60km/h이하의 경우 백색 복선(실선 또는 점선, 0.5m)으로 표시하며, 제한속도 50km/h이하의 경우 백색 단선(0.2m)으로 표시한다.
- + 자전거 전용차로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50~100m 간격, 시·종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다.
- +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 + 자전거 우선도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경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인성 확보 기준은 교차각을 90°로 하며, 준비구간의 길이는 25m로 한다.
-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제한속도/교통량)은 다음과 같다.

제한속도(km/h)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기준 교통량
20km/h	3,500대/일 이하
30km/h	4,250대/일 이하
40km/h	5,000대/일 이하
50km/h	2,500대/일 이하
60km/h	분리된 자전거시설 설치 권장

자전거 경사로

- + 육교나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를 설치해야 한다.
- +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1.5m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높이가 3m이상일 경우에는 매 3.0m 마다 1.2m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 + 자전거 경사로와 펜스 간 이격거리는 35cm이상으로 설치하며, 자전거 페달이 걸리지 않도록 계단과 경사로의 높이 차이를 7.5~10cm로 한다.

- + 자전거 경사로의 흙 설치 시 15cm로 설치하여 자전거 바퀴가 끼이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 + 자전거 원활한 이동을 위해 경사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용편의시설

- +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이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차시설, 수리센터, 화장실, 대여소, 공기 주입기, 휴게소, 벤치, 편의점,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말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 +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야간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이나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주차시설

- + 공공기관 등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 자전거의 주차 및 보관을 위한 시설물로 자전거의 도난예방을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 자전거의 주차시설은 도난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야간 이용에 대비해서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 주변 환경과 토지이용 특성에 적합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 + 자전거 주차시설은 간단하고 용이하게 설치하며 보행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 + 안내도, 공기 주입기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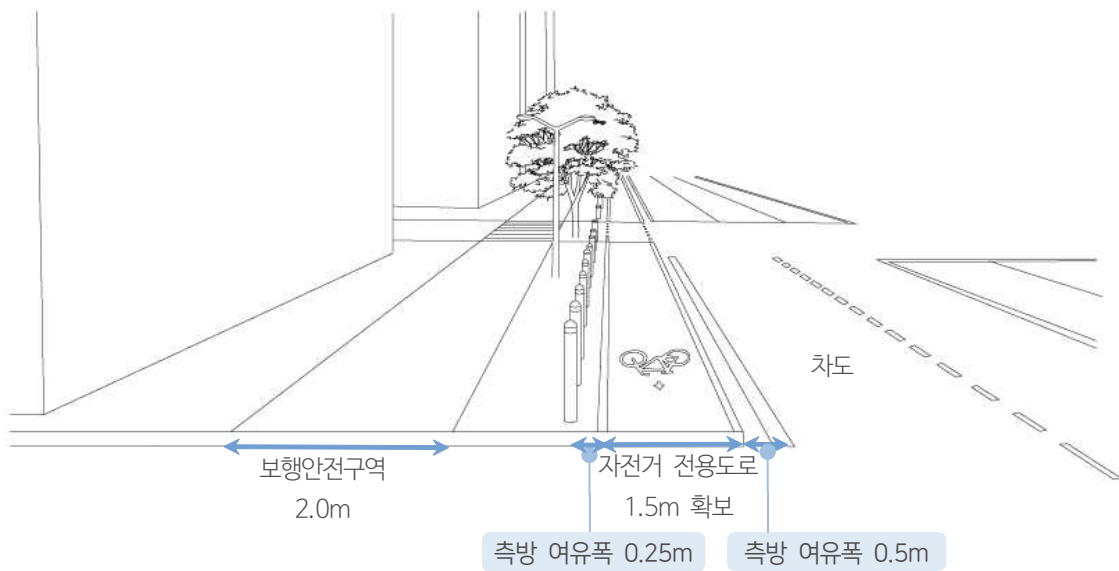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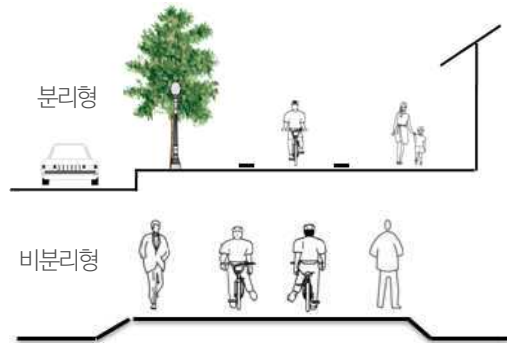
가로 시설물 등에 의해 끊겨 있거나, 보도의 폭이 좁아
자전거 통행에 문제 발생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차도는 물론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확보

체크리스트

- | | |
|------------------------------|--------------------------|
|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안전구역 구분 | <input type="checkbox"/> |
| 보행자와 자전거의 상충이 없도록 적절한 표지 설치 | <input type="checkbox"/> |
| 자전거도로 유효폭 1.5m 이상 | <input type="checkbox"/> |
| 편측 최소 0.25m 측방여유폭 확보 | <input type="checkbox"/> |
|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 | <input type="checkbox"/> |



07 시설물 구역

FACILITIES AREA

기본지침

- + 시설물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구역을 의미한다.
- + 시설물은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에 배치하거나, 이설 및 지중화 등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에 의한 가로 점유를 최소화 시킨다.
-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차량의 사고로 보행자의 안전위험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이설하는 등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아동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눈높이가 낮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및 녹지대를 조성한다.
- +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거나 보행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시설물은 최대한 철거하거나 최소화·통합해 시설물 구역 내에 설치하여 시설물 영역 외에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 보도 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녹지대의 폭은 보행안전구역을 우선 확보한 후 설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은 보도녹지대 내에 배치한다.
- + 안전성과 보행공간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도시열섬효과를 방지하고 우수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조정한다.

공통

- +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시설물의 점유면적을 최소화시켜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 색채를 적용한다.
- +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 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되, 교통약자 등의 배려를 위해 안전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 + 가로표지, 신호등, 가로등과 지주형 시설물들도 통합 설치를 권장하고, 그 외 공중전화, 가로판매대, 분전함, 가로수 등 모든 시설물은 시설물 구역 내에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조경시설이나 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 꼭 필요한 시설물도 있으나 우체통이나 공중전화 등 사람들의 형태와 사회적 여건이 변하여 효용가치가 떨어진 시설물은 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통합 또는 제거한다.

안내시설

- + 길찾기 과정에서 혼돈을 야기하거나 추측, 오해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상황, 장소 등 맥락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 + 지식의 정도나 이해의 차이, 연령, 신체능력이 다른 다양한 이용자가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공급 및 행정 중심에서의 정보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 + 다국어 표기 원칙을 준수하여 외국인도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우회정보

- + 가로 내 모든 통행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를 하여야 한다.
- + 급격한 경사로,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길 등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는 사전 정보 제공과 함께 우회정보를 제시한다.
- + 관광안내판 등 지도로 안내하는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이동설비 여부를 표기하여 이용자들의 사전 선택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객정류장 설치

- +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등은 가로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야간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한 승차대 공간이 되도록 한다.
- + 대기 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BF]

버스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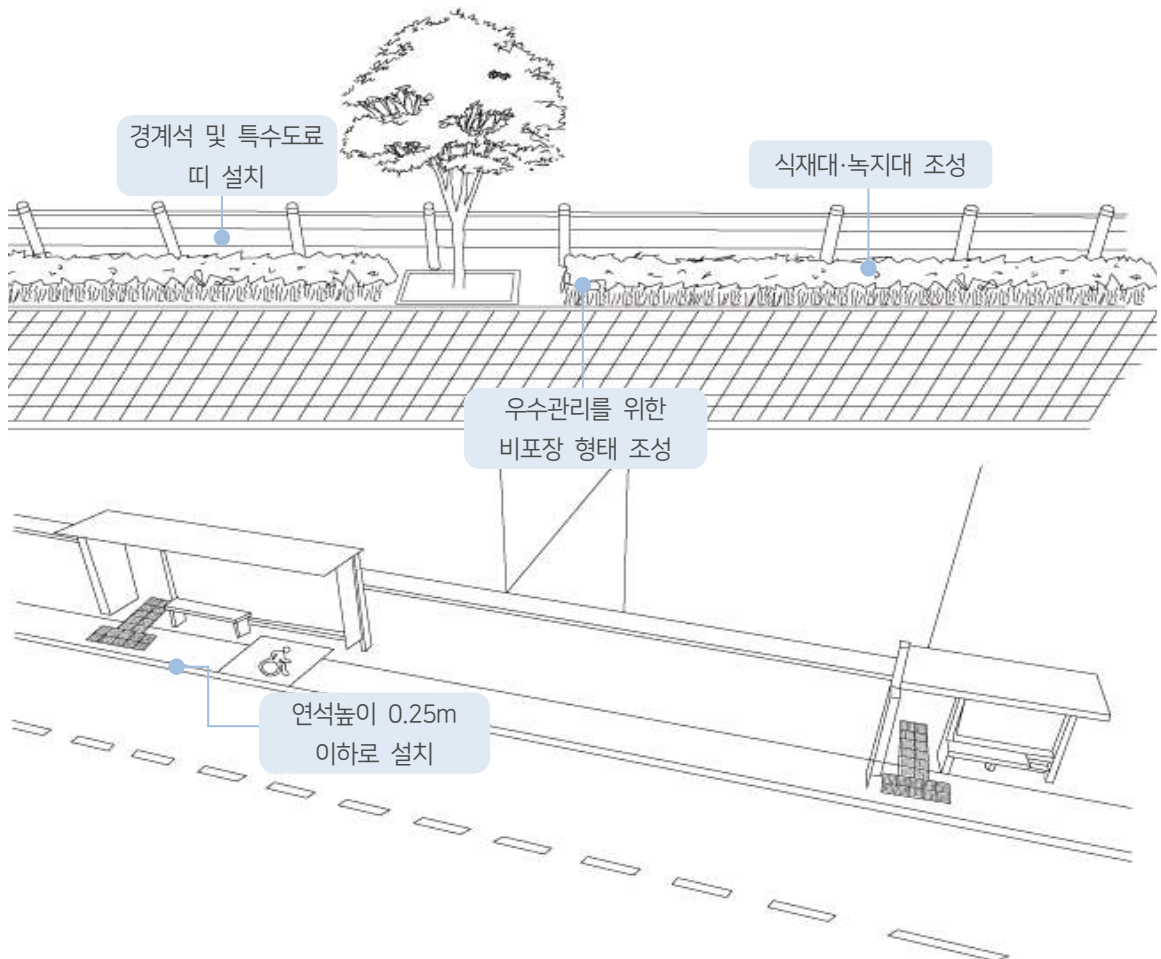
-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침해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부담이 적은 정류장을 조성한다.
- + 버스정류장은 주변 여건(수요), 가로 여건 및 교통상황, 보행 특성,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인접 마을 및 공항버스정류장과의 상충,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상충이 최소화되고 적절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 + 버스정류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대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 주변의 가로수나 시설물들로 인해 접근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며, 특히 가로수 설치를 제외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 + 버스정류장 쉼터는 보도폭 및 이용환경에 따라 보도중간형, 역상형, 보도후퇴형의 승차대를 설치한다.
- +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역상형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과 보도를 공용하여 사용한다.
- + 충분한 보행자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버스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공간을 축소하는 버스 베이 형태의 버스 정류장은 지양한다.
- + 무장애 정류장은 일반인 대기공간과 휠체어 대기공간을 구분하며, 휠체어 승강장 위치를 표시한다.
-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 + 장애인의 이동 및 승하차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의 보도 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좁을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 + 야간에 버스운전자가 정류장 대기자를 보지 못해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설치한다.
- +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유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승차대 일체형, 독립형, 표지판 일체형으로 설치하며, 정보표출 화면의 양/단면형은 대기수요 및 정류장 혼잡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정류장 접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면형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한다.
- + 입식표지판을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1.2m이하로 설치하고,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버스 도착 시 음성으로 안내한다.

- + 안내시설은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 영어 등 다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치한다.
- + 연석높이는 저상 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하며, 높이 0.25m이하로 설치한다.
- + 승강장과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형 가로경계석을 사용한다.
- +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은 다른 재질로 설치한다.[BF]
- +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15cm이하로 한다.[교통약자법]

체크리스트

각종 시설물의 통합적 설치	<input type="checkbox"/>
보행안전구역 및 보행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 설정	<input type="checkbox"/>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도 녹지대 설치	<input type="checkbox"/>
길 찾기를 위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보행안전 및 편의를 위한 우회정보 등의 안내 제공	<input type="checkbox"/>
여객정류장 :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야간에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설치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나 유모차 상용자를 위한 승강장 제공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알기 쉽게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01 국지도로

LOCAL ROAD

가 로

(차도)

기본지침

- + 가로에서 일어나는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 + 가시성이 높아서 시각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가로로 조성한다.
- +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력적이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가로를 조성한다.
- + 주변의 시설이나 건축물의 규모, 통행량, 인접공간의 너비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계획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 +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는 통과교통의 수요가 적고 보행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로 선정한다.
- + 보행동선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폭이 좁은 (2차선 이하) 도로에서 적절하다.
-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최소화한다.

진입구간

- + 차량 국지도로 진입시 발생하는 보행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보행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횡단보도를 연속의 높이만큼 올려서 보도와 단차가 없는 고원식횡단보도를 만든다.
-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고원식횡단보도를 설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행자 대 차량

사고가 빈번한 가로나 그밖에 고원식횡단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고려한다.

바닥마감

-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가 구간을 식별할 수 있게 해당구역 진입부에 입식표지판 설치 및 바닥표시를 하고, 기존의 차도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하거나 스탬핑 등의 기법으로 도로요철 패턴으로 변화를 준다.
- + 차량이 저속 운행 하도록 가로 표면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닌 거친 질감의 재료 또는 요철을 두어 차량의 속도 경감을 유도한다.
- + 보차도 혼용가로나 차량 운행을 금지한 보행 전용거리에서 포장 재료를 달리하여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안내시설

-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m 이내 주요 시설물, 1.2km 이내 여객시설 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교통약자법]
- +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교통약자법]
- + 보행자 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가이드를 병설한다.[장애인등편의법]

+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한다.[교통약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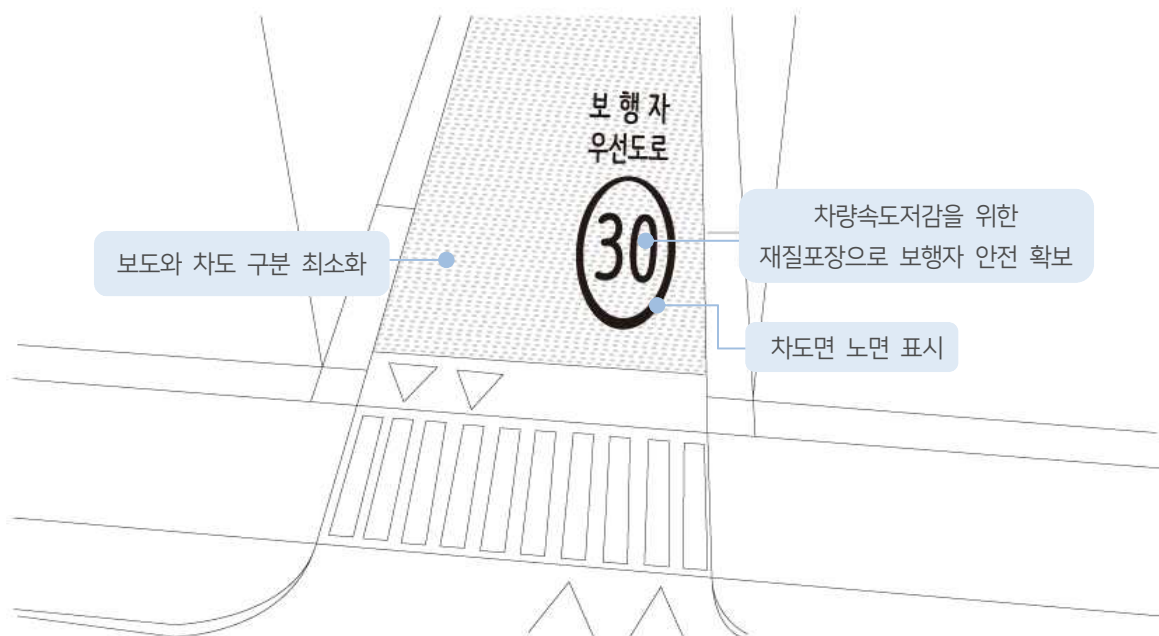
교차로 평탄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차량 과속 위험



이동편의성 증대를 위해 설치된 고원식 교차로

체크리스트

보행자우선도로로 구간 식별 : 표지판, 바닥표시, 바닥색상 및 재료, 요철패턴 등으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보행자우선도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 최소화	<input type="checkbox"/>
보행자우선도로로 진입구간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input type="checkbox"/>
차량 저속운행 유도 : 거친 질감의 재료나 요철 마감	<input type="checkbox"/>
보행자 안내표시판 : 교차로·보도구간 설치	<input type="checkbox"/>



02 속도저감 방안

SPEED REDUCTION PLAN

기본지침

- +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스쿨존 등에는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
- + 속도저감시설은 도로를 선형의 지그재그형으로 만들기, 차도의 일부 폭을 좁히기, 과속방지턱 설치, 요철 포장 등의 수법을 활용한다.
- +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시설을 설치한다.
-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 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시행한다.
-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등의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차도폭 좁힘

- +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 +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노선을 곡선화하거나 굴절 및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불라드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교통약자법]

-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여 차량이 정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BF]
- +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보도공간 확장의 효과를 내면서 커브를 조성한다.
- + 야간, 짙은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에 고휘도의 발색 도로 등을 이용하여 안내 및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BF]
-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 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 이외의 차도에는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한다.[BF]

도로포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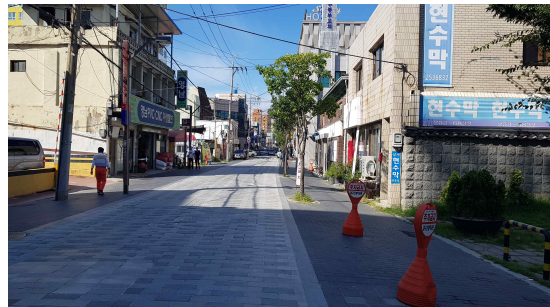
- + 국지도로와 같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혼선이 빈번한 곳은 차도면의 포장재료를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한다.
- + 포장재료를 선정할 때는 가로유형, 보행량, 교통량을 고려해야 하며,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투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각각 재료의 시공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국토교통부'를 준용한다.
- + 횡단보도 부분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 차량의 주차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 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보행안전구역은 단절없이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진행방향으로 횡단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 확보를 위한 경사가 발생할 시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



과속 방지턱

- +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교통약자법]
- +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좁게 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 + 길이 3.6m~4.0m, 높이 8cm~10cm의 원호형태로 차도 폭의 여유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BF]
- + 차도에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피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확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BF]
- + 과속방지턱을 하나만 설치할 경우,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과속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속으로 2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 + 한 개 이상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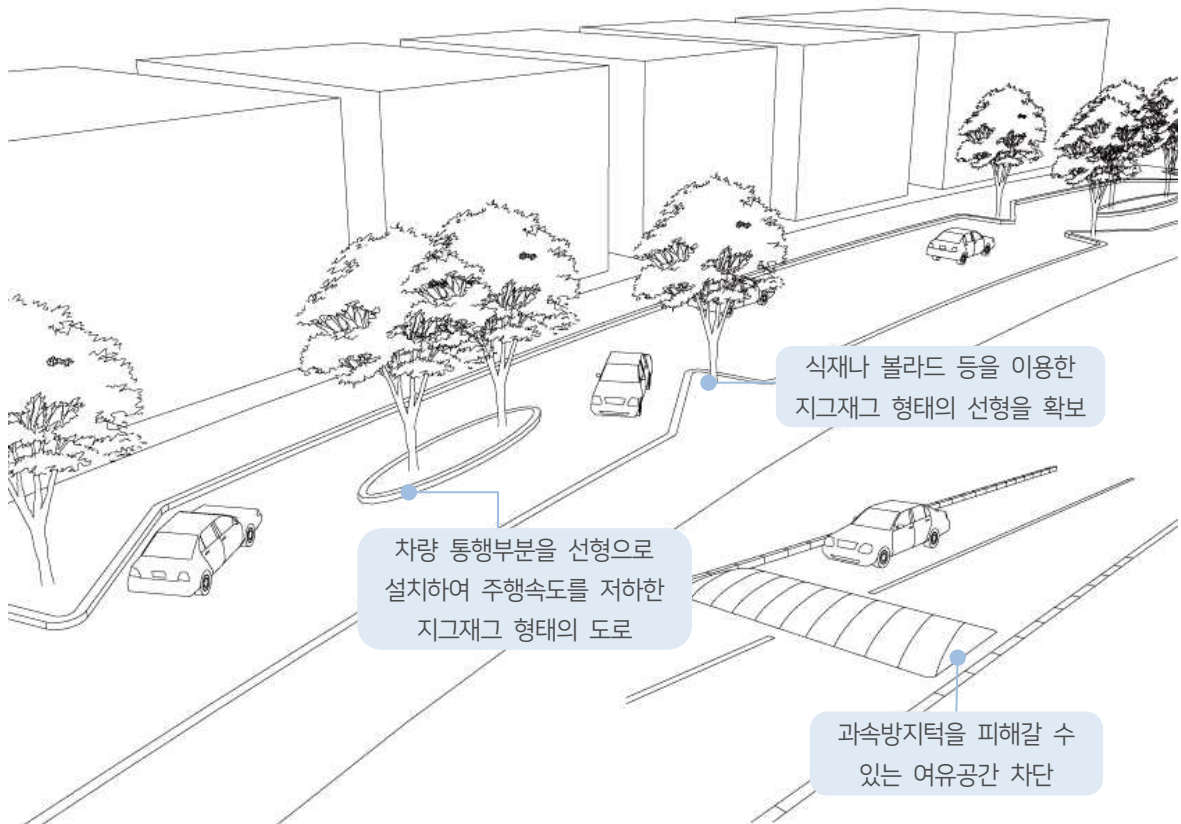
색상, 재질 등의 변화로 공간분류 및 속도저감 가능



색상, 재질 등의 변화로 공간구분 및 속도저감 가능

체크리스트

보행자 안전확보 지역에 차량속도 저감을 위해 차도 폭 좁게 설치	<input type="checkbox"/>
가로유형, 보행량,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도면의 포장을 달리 설치	<input type="checkbox"/>
과속방지턱 : 적절한 규격에 맞춰 여유공간 확보되지 않도록 설치	<input type="checkbox"/>
과속방지턱 2개 연속 설치 : 20~90m 간격	<input type="checkbox"/>



03 횡단보도

CROSSWALK

기본지침

- + 보행로의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교차횡단보도 또는 보행광장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 중심의 단거리 교차로를 제공한다.
- + 보행로는 보행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지하터널이나 육교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거리를 짧게 한 교차로로 계획한다.
- + 보행거리를 짧게 하기 위하여 교차횡단보도 혹은 보행광장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
-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연속되도록 조성한다.
-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차도면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면 높이에 맞추어 계획한다.

횡단보도 설치

- + 교통약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는 인접 보도와 같거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 시각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게 노면표시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BF]
- + 횡단보도 상에는 우수 트렌치 및 맨홀의 설치를 금지한다.
- + 가로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잔여 횡단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 횡단보도 제거나 이설시에는 기 설치된 점자블록과 턱 낮춤을 제거한다.

-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고원식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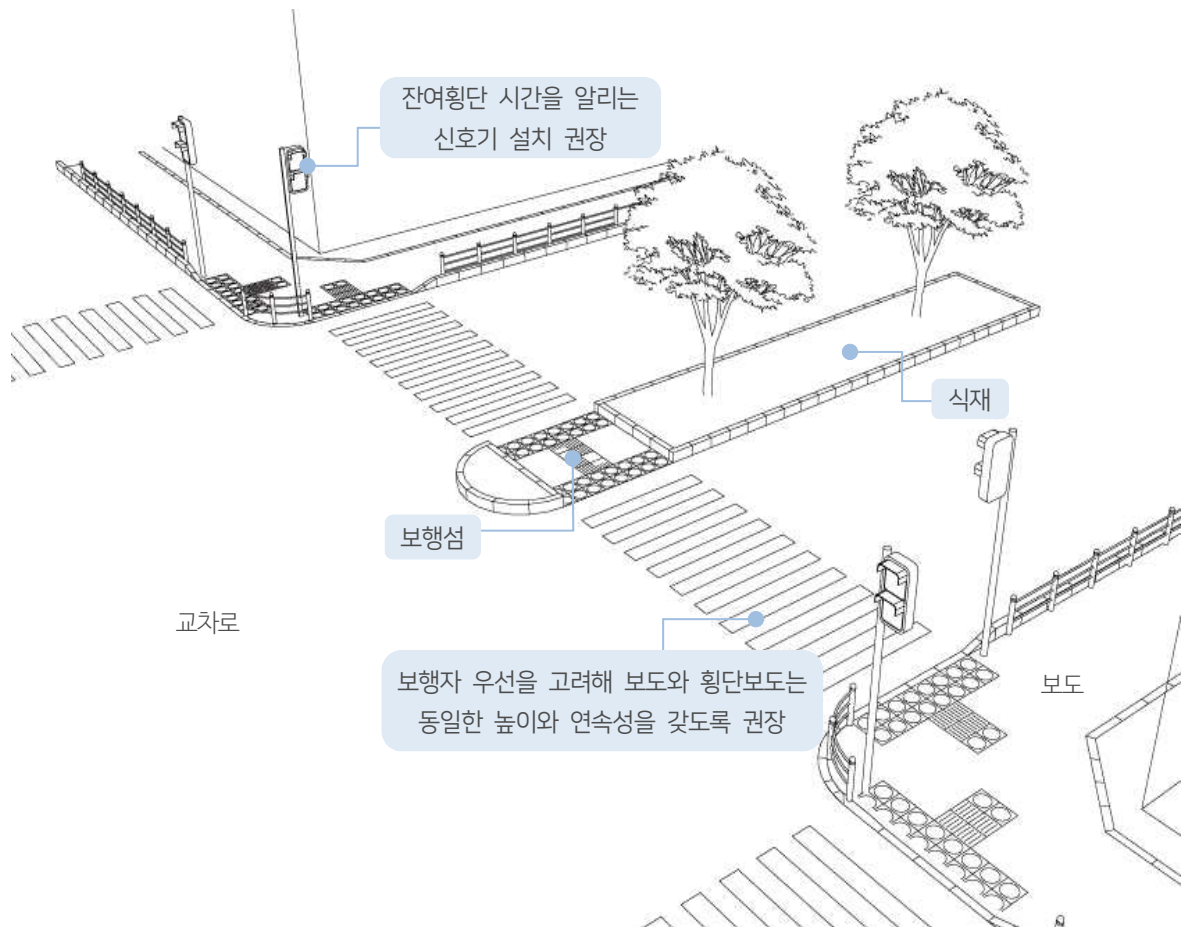
- + 교통약자의 교차로 횡단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 둘러싸인 면과 횡단보도를 함께 높여 보도와 단차를 제거한다.
- + 높여진 교차로의 면 전체를 주변도로와 구분되는 보도포장재를 적용하여 높여진 면을 강조한다.
- + 차량의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광로나 대로, 또는 오르막길과 경사가 심한 도로, 화물차나 응급차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 + 교차로 진입부에서 경사가 생기므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적절히 배수될 수 있도록 측구 등 주변 배수 체계도 함께 고려한다.
- +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교통약자법]

교통섬

- + 신호주기 이내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의 대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한다.
- +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섬 중 횡단보도와 연속되는 부분은 도로와 단차를 두지 않고, 조경을 설치하는 부분의 연석높이를 올려 설계한다.
- + 차도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최소 1.5m 폭으로 설치한다.
- + 교통섬이 차량운전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보도에 흔히 사용하는 블록과 다른 사양의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체크리스트

횡단보도 진입부 : 턱 낮춤 설치	<input type="checkbox"/>
횡단보도 폭 : 수평부 폭과 동일하거나 넓게	<input type="checkbox"/>
교차로로 둘러싸인 면과 횡단보도를 함께 높여 보도와 단차 제거	<input type="checkbox"/>
횡단거리가 긴 횡단보도는 차도와 같은 높이의 교통섬으로 조성	<input type="checkbox"/>
대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면서 차량진입은 불가한 구조로 조성	<input type="checkbox"/>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 : 기울기 1/12 이하	<input type="checkbox"/>



3. 공원

개 요

공원 정의

- 공원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공원 및 휴양 영역 중 공원을 중심으로 세부설계지침을 규정하며, 순천시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공공공간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수립
- 공원은 위치, 지형, 이용형태 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설계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물리적인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적 대응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용하기 좋은 공원이 되도록 설치·관리
- 이용자가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진입공간, 공원보행로, 화장실, 편의공간, 휴게공간, 놀이터 등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설치·관리

공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 중 도시공원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으로 함

01 진입공간

ENTRY SPACE

공 원

기본지침

- + 공원은 노인,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이 즐겨 방문하는 곳이므로 출입구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 공원 주변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가급적 최단거리로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공원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하기 쉬운 곳에 공원 입구의 위치를 지정한다.
- +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주출입구, 휴게공간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이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환경을 우선 고려한다.
- + 공원 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쉽게 동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출입구는 계획 단계부터 동선을 완전히 분리 설치하여 보행자가 공원 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 + 공원 주출입구는 대표시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 가까운 곳을 설치하고, 계단 또는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차가 없는 보행접근로로 계획한다.
- + 자전거보관소나 주차장은 공원 출입구 근처에 확보하며, 공원 내 자동차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보행접근로

-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모든 보행접근로는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공원 주출입구의 보행접근로 유효폭은 2.0m 이상, 기타 출입구는 1.5m 이상 확보하며(법적치수 1.2m이상), 공원의 규모나 이용수 등에 따라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상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cm이하(법적치수 2cm이하)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한다.[교통약자법]
- + 바닥마감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며, 바닥마감재의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교통약자법]
- + 공원 입구가 시작되는 보행진입로의 바닥마감재는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 보행접근로는 공원 내 보행로와 일체감을 주어 별도의 안내표지 없이도 연속성이 유지되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 + 동선 및 볼거리 등의 종합정보를 담은 통합적인 안내 체계를 확립한다.
- + 공원 주출입구 근처에는 공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와 점자블록으로 유도하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표기를 병기한다.

- + 공원시설의 접근로 중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포장재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주접근로와 공원 내 통행동선은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여 평탄하게 계획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완만한 경사로 및 승강기와 관련된 안내사인 등을 설치한다.
- + 보행안전구역과의 경계부에는 담장이나 보도용 방호울타리보다 녹지와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 무분별한 점자블록 설치 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 적절한 조도를 갖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우범화되지 않도록 한다.
- + 시각장애인이 충돌, 추락 또는 가시 등에 찢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유도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을 설치하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블라드나 화분 등 보행장애 요소는 제거한다.
- + 공원 입구 근처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공원 내로 자전거 진입 및 이용을 금지한다.

매표시설

- + 어린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표소 또는 매표기를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하며,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 매표소와 매표기의 전면에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접근하고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1.5m×1.5m이상 확보해야 한다.
- + 매표소와 매표기의 상부에는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원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매표기 전면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매표기에는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를 병기한다.

- + 매표소와 매표기에는 가방을 놓을 수 있는 선반, 우산이나 지팡이 걸이대 등을 설치한다.

주차장

-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원 보행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 공원의 효용 증진을 위해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법적 주차 설치대수 중 20% 이상을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G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G주차구역은 공원 주출입구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G주차구역에서 공원 출입구의 보행접근로까지 이르는 보행안전통로는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고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 + 주차장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이동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주차장출입구에 주차표지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안내판을 설치하고 노면표지를 명확히 한다.
- +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을 이용한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 공원 내 주차장 설치 불가로 인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공원 접근로에 대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함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

- + 자전거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원 보행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 자전거보관소는 공원 출입구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 자전거도로와 공원 외곽부가 만나는 곳에 설치한다.
- + 공원 주변의 자전거도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공원 이용 및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도시지역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소공원을 제외한 공원 내에는 자전거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대수는 자전거 통행 용량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대수 중 특수용도의 자전거보관을 위한 거치대를 10% 정도 확보하도록 한다.
- + 공원 외곽에 자전거 순환도로를 조성하여 외부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관리사무소

- +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에는 관리사무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감시기능과 안전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 + 관리사무소가 없는 도심 소규모 공원에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등에 안전지역을 지정할 것을 권장하며,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관리사무소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벽면 녹화를 권장한다.
- + 비상구급약을 비치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근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 보행로, 주차장 등 주요시설물과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인근 파출소로 연결되도록 한다.

차량진입방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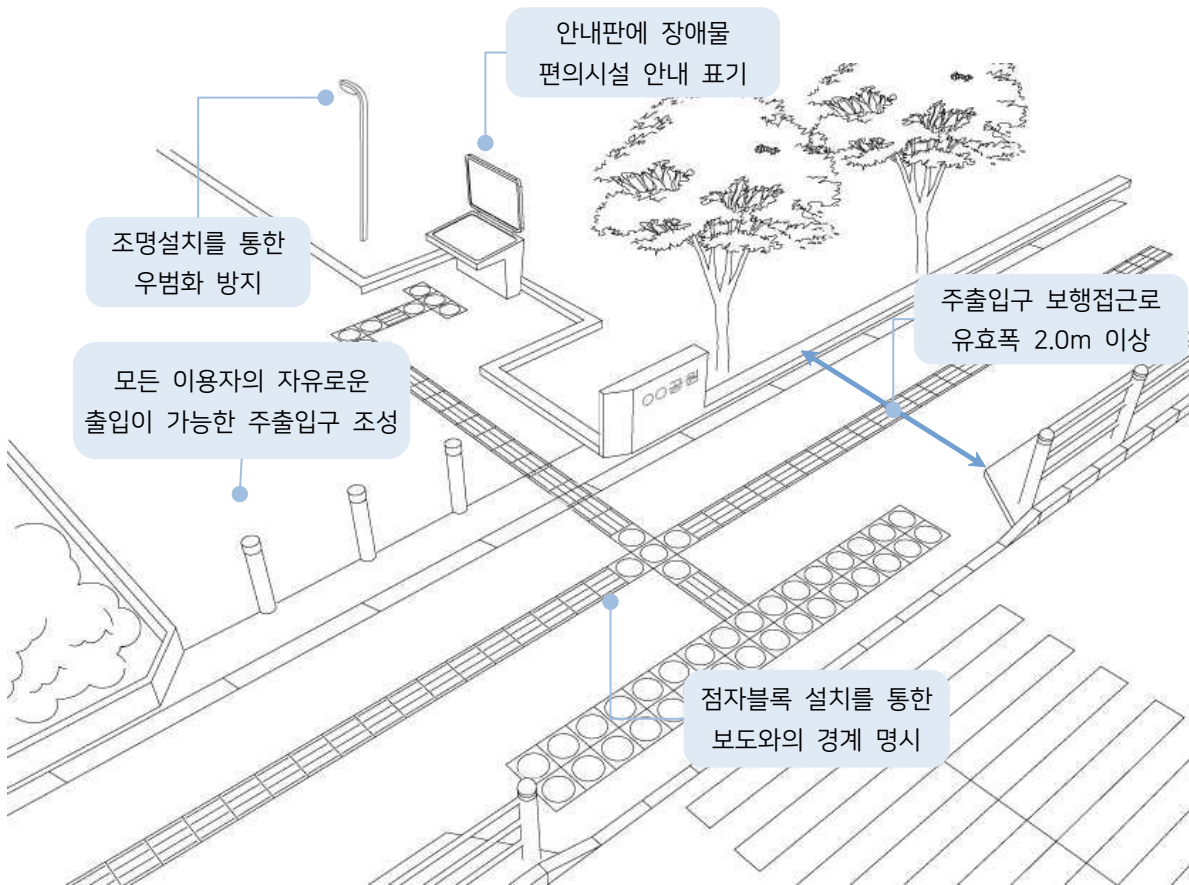
- + 자동차의 진입 방지를 위한 블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하여 유효폭 1.5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교통약자법]
- + 블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블라드 전후에 유모차나 휠체어의 활동공간은 1.5m이상의 수평부분(보도포함)을 확보한다.
- + 블라드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1.0m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0.1~0.2m 내외로 한다.[교통약자법]
- + 보도에 블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크기나 위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블라드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교통약자법]
- + 블라드 모양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디자인하며, 가급적 탄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 블라드 외부에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주야간에 관계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한다.[교통약자법]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체크리스트

모든 이용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주출입구 조성	<input type="checkbox"/>
주출입구 보행접근로 : 유효폭 2.0m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행 안전구역과의 경계부 : 녹지와 휴게시설 권장	<input type="checkbox"/>
조명설치를 통한 우범화 방지	<input type="checkbox"/>
보행진입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 명시	<input type="checkbox"/>
볼라드 설치시 유효폭 1.5m 내외 간격으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안내판에 장애물 편의시설 안내 표기	<input type="checkbox"/>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의 연결	<input type="checkbox"/>



02 공원보행로

PARK FOOT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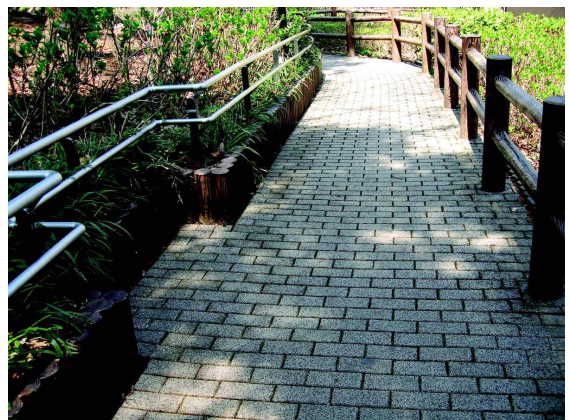
기본지침

- +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원 시설의 접근 통로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공원 내 보행자 동선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동선과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서비스 차량의 통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이용에 제한을 두도록 한다.
- + 보행로(산책로)의 주변에는 화초, 휴게공간, 부드러운 빛의 가로등,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 내부, 문화유적, 자연공원, 하천 등을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보행안전 구역으로 계획하고, 유도 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BF]

- + 지형상 산책로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완만한 경사로를 활용하며, 경사로만 설치하면 시각 장애인 등에게 불리하므로 계단과 병행 설치한다.[BF공원]
- + 산책로의 바닥마감은 우천시 등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가로와 연결되는 공원 내 보행안전구역에는 점자블록을 대신하여 바닥재로, 색상, 질감 등에 차이를 두어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바닥 마감재의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산책로의 기울기는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1/100 이하의 횡단구배로 한다.

산책로

- + 모든 이용자의 통행을 고려한 주요 산책로에는 공원의 주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 공원산책로는 노인, 어린이, 장애유무,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연속된 산책로 구조를 확보한다.
- + 공원 내 산책로는 유효폭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 높이 2.5m이내(법적치수 2.1m이내)에는 가로수 등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보행안전 통로를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지형상 불가피할 경우 보행안전통로는 최소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폭이 좁은 산책로의 경우 휠체어 교행구간 설치

- + 산책로 시작점 또는 주요 갈림길에 산책로의 전체 배치도(안내도)가 포함된 안내판과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 산책로 주변에 역사유적이 있는 경우, 역사유적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때 안내판 내용을 다국어로 표기하도록 한다.
- + 일정 규모 이상인 공원에는 산책로의 일부 구간을 애완견 동반 산책로를 지정할 수 있다.
-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책로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 산책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보행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높이는 4.0m미만으로 하며, 설치간격은 가로등은 20m이내 또는 15~30lux (바닥위 85cm 측정값 : KS조도기준)이상이 유지되도록 권장한다.
- + 산책로의 조명은 고효율의 LED조명기구를 설치하며,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자동점멸이나 조도조절기능이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 + 산책로의 포장은 투수성 블록이나 잔디 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적극 사용하며, 개보수가 용이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 시각장애인의 연속성이 있는 보행을 위해 물리적 환경의 연속성은 물론 전자식 신호장치나 산책로의 양옆에 보행유도띠나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턱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 + 산책로는 자동차 및 자전거도로와 교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보행자의 통행 우선성을 위해 고원식 횡단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 + 산책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 등을 변화시켜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주의환기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 시설물을 최소화 및 통합화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 산과 하천 산책로의 경우, 주요 갈림길과 출구에 주변 안내도를 설치한다.
- + 산과 하천 등의 긴 구간의 산책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벤치를 조성하여 산책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때 벤치가 산책로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 산책로 주변에 공중화장실 있는 경우, 주요 지점에 화장실 위치를 알리는 안내사인을 설치하고, 방향과 잔여거리를 표기한다.
- + 200~250m 간격으로 경로, 잔여거리 등이 표시된 방향사인 설치를 권장한다.
- + 수목 등으로 사인이 가려질 수 있는 곳에는 바닥면에 부착된 방향사인을 설치한다.
- + 산 등의 구릉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경우,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좌측 또는 우측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계단

- + 지형상 부득이하게 산책로에 높은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구조와 형태의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경사로를 병설하도록 한다.
- + 계단은 휠체어로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는 물론, 특히 임산부, 목발 이용자, 보행장애인 등에게는 매우 위협적이므로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 + 계단의 유효폭은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높이 1.8m이내마다 길이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의 수평부분이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계단의 디딤판 너비는 0.3m이상, 첩면 높이는 0.16m이하(법적치수 디딤판 0.28m이상, 첩면 0.18m이하)를 권장하며, 계단 중간에 디딤판 너비와 첩면 높이를 바꾸지 않고 동일한 치수로 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하며, 디딤판, 첩면, 계단코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마감재의 색상이나 재질 등을 달리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점자블록은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 0.3m 정도 떨어뜨려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는 가급적 양측면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의 폭이 3.0m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 + 계단의 좌우 측면에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 중앙에만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 +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는 수평손잡이를 0.3m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며, 문자정보와 함께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및 평탄한 동선 조성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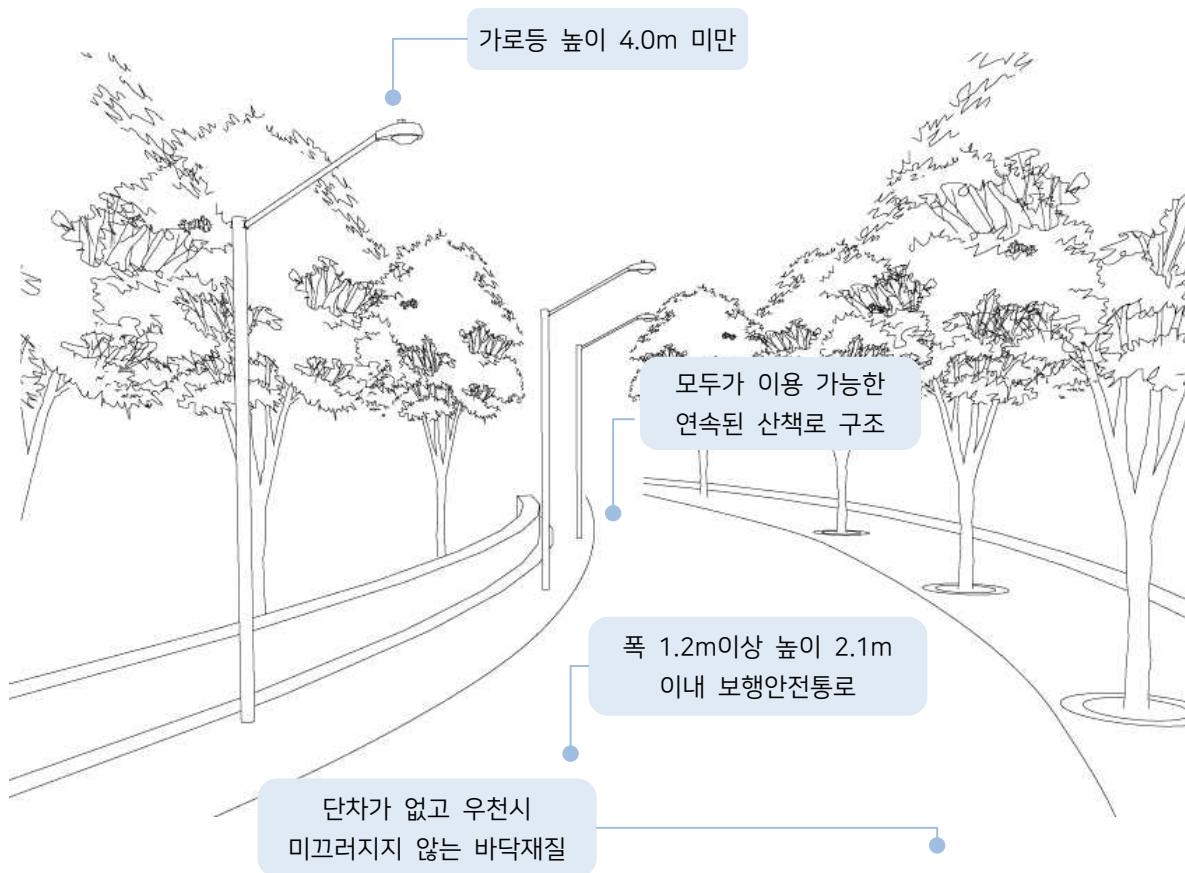
- + 공원 내 산책로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수직 이동시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활용하며, 가급적 계단을 병설할 것을 권장한다.
- + 경사로의 유효폭은 최소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 확보하며, 가급적 보행로와 동일한 폭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1/20이하(법적치수 1/18이하)의 완만한 경사를 권장하며,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12이하로 할 수 있다.
- + 경사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높이 0.75m이내마다 길이 1.5m이상의 수평부분이나 참을 설치해야 한다.
- +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경고용 점자블록은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 0.3m정도 떨어뜨려 설치한다.
- + 손잡이는 가급적 양측면에 2단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는 수평손잡이를 0.3m이상 연장설치하여 문자정보와 함께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단차 발생시 완만한 경사로 설치로 대체

체크리스트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연속된 산책로 구조 확보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설치 시, 계단과 병행 설치	<input type="checkbox"/>
사각지대에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 설치	<input type="checkbox"/>
가로등 높이 4.0m 미만 설치	<input type="checkbox"/>
폭 1.2m 이상 높이 2.1m 이내 보행안전통로 확보	<input type="checkbox"/>
단차가 없고 우천시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질	<input type="checkbox"/>



03 화장실

TOILET

기본지침

- + 공원 주출입구의 안내표지판 등에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유도하는 표시를 하며, 공원 어디서나 접근하고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 +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위치에 설치하며, 24시간 방범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용자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장애인전용 화장실 대신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하, G화장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 공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으로 계획하며,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자재와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다.
- + 도심 미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 + 원활한 공기순환으로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여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한다.

접근로

- +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출입구는 자연채광이나 인공조명 등으로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안심감을 주도록 한다.
- + 공원 주출입구의 안내표지판 등에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유도한다.
- + 화장실 내외부에서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G화장실

- + 공원에 설치하는 G화장실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며, 2개소 설치할 경우에는 설비 등의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 또는 설비 등의 종류가 다른 G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G화장실에 설치하는 부대설비로는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갈이대나 영유아거치대,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접이식 간이침대, 어린이용 대변기, 오스트메이트 등이 있으며, 공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일반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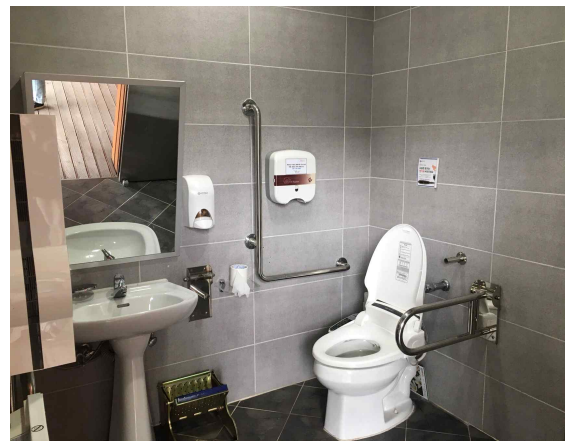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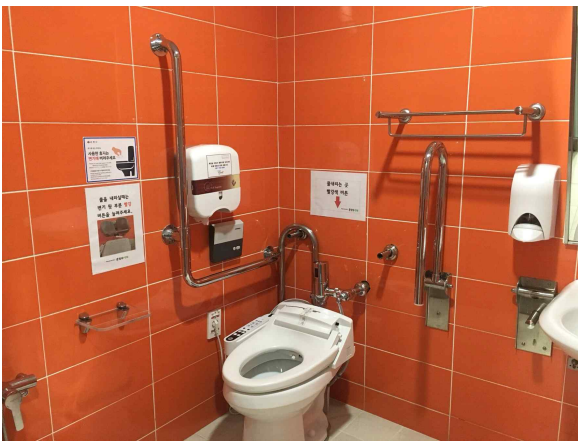
- +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를 남자 및 여자용으로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자화장실은 물론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방법 및 안전

- + 관리사무소 등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등은 G화장실과 남녀 화장실내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다.
- + 비상호출장치는 G화장실과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에는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단위부스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화장실 주변은 항상 밝게 유지하고 화장실 내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한다.
- + 비상시 피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설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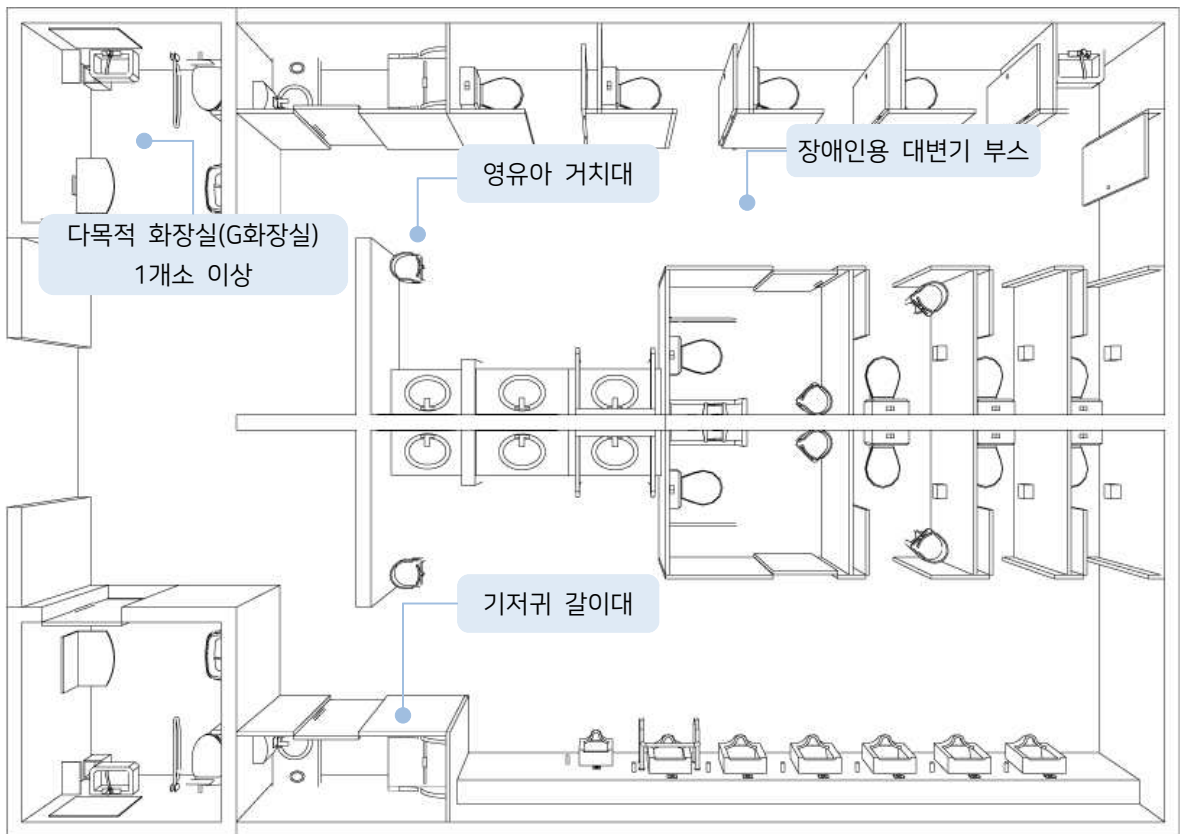
- + 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과도한 외관 디자인을 지양하며, 개방감 있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 외관은 원색적이며 과도한 색채사용은 지양하며, 실내는 편안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계획한다.
- + 주간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며,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면서 눈부심이 없는 부드러운 조명기구를 채택하도록 한다.
- + 벽면에는 유리블록 등을 사용하거나 천장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하며, 악취제거 등을 위한 환기는 자연환기만으로 원활한 공기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 + 마감재는 친환경적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적극 사용하며, 외벽에는 식재나 벽면녹화, 고효율 LED조명기구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도록 권장한다.



다목적 화장실의 주요 시설물과 배경 간의 색상 차이를 주어 인지성 확보

체크리스트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다목적 화장실(G화장실) 1개소 이상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	<input type="checkbox"/>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 거치대와 기저귀 갈이대 구비	<input type="checkbox"/>



04 편의공간

CONVENIRENCE SPACE

편의시설

- +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 영유아동반자나 임산부 등을 위한 수유실을 설치하여 공원의 가족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 애완견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애완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애완견을 동반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다.
- + 공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중전화,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역 등을 지정한다.
- + 방문자센터, 매점 등 이용객을 위한 공원 내 건축물은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구조하여야 한다.[BF공원]
-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하고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는 가능한 분리된 출입문으로 유도하도록 한다.[BF공원]
- + 관리사무소, 주출입구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 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공원 이용정보를 얻거나 음성안내기기, 휠체어, 유모차 등 편의장비를 대여 받을 수 있는 가이드센터 역할을 병행한다.[BF공원]
- + 관리사무소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하며, 에너지 절감 및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벽면 녹화를 권장한다.
- + 공원 보행안전구역,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과 연락이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인근 파출소와도 연결되도록 한다.

안내시설

- +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안내판이나 유도사인은 누구나 알기 쉬운 표기내용과 방법 및 사용하기 쉬운 형상으로 설치한다.
- + 안내판은 정확한 정보표시 및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다양한 안내 정보 전달 방법을 고려한다.
- + 공원 내 지형상 가파른 경사로 등이 조성되어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나 자전거, 애완견 동반출입 등이 제한되는 공간은 입구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 안내판은 대상 공원과 연계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공영주차장 보행자 출구 등 주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BF공원]
- + 공원 내에서는 공원 입구, 보행안전구역의 분기점, 주차장, 주요 시설 주변 등에 최소 2개소 이상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 공원 안내표지나 공원 시설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한다.
- + 인터넷이 가능한 무인정보검색대(무인키오스크)를 관리사무소 또는 공원 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 + 안내판에는 야간에도 문자 등 안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조도를 확보한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 + 안내판은 성인은 물론 키가 작은 어린이도 표기내용을 알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 + 안내표지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알아보기 쉬운 명료한 서체(순천서체 권장)와 크기, 색상을 사용한다.
-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정보 전달 방법을 고려한다.
- + 관광객의 편의를 돕도록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하며,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은 지양한다.
- + 관광안내소는 지역 정보물의 제공이 용이하면서 규모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를 권장한다.

체크리스트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출입의 편리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안내기, 휠체어, 유모차 등 편의장비 제공	<input type="checkbox"/>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이용자들을 위한 다국적 안내체계	<input type="checkbox"/>
안내정보를 적절한 위치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제공	<input type="checkbox"/>

순천만의 넉넉함과 단아함
세련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뤄진 획의 끝. 순천만의 넉넉함과 정갈함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원한 공간감이 느껴지는 '이'획의 형태.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서체
廓히며 뜻을 공경하는 순천의 뜻을 담은 형태로 기저판하게 만들어진 ㅈ, ㅊ, ㅊ 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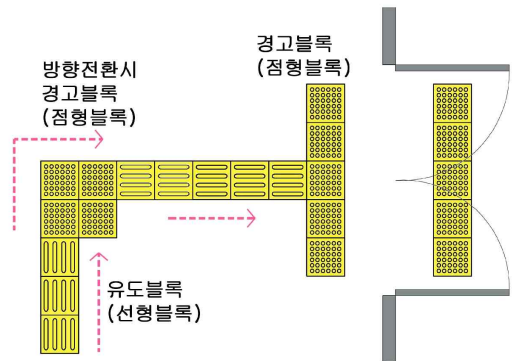
순천서체 사용

정겨운 순천

순천서체 사용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산책로 표지판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설치 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장치 설치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산책로 안내표지판

05 휴게공간

SERVICE SPACE

기본지침

- + 체력소모가 심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보호자와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통합이용시설로 계획한다.[BF공원]
- + 공원 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나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 등에 적절한 간격마다 쾌적한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 휴게공간은 시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키가 낮은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감을 주고, 접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 휴게시설에는 벤치, 탁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며, 자동판매기, 음수대 등을 설치하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 + 가족 등 여러사람 또는 혼자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 휴게시설은 공원 테마에 어울리며 주변과 잘 조화되는 재질과 형태로 디자인한다.

접근로

- + 휴게소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도차나 휠체어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보행 유효폭

- + 휴게소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은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유도차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보행로에 인접한 경우 보행로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 보행 동선의 주요 교차점, 대중교통 주 출입부, 주요 건축물의 전면, 중앙공간 등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머무는 일이 잦은 장소는 광장화한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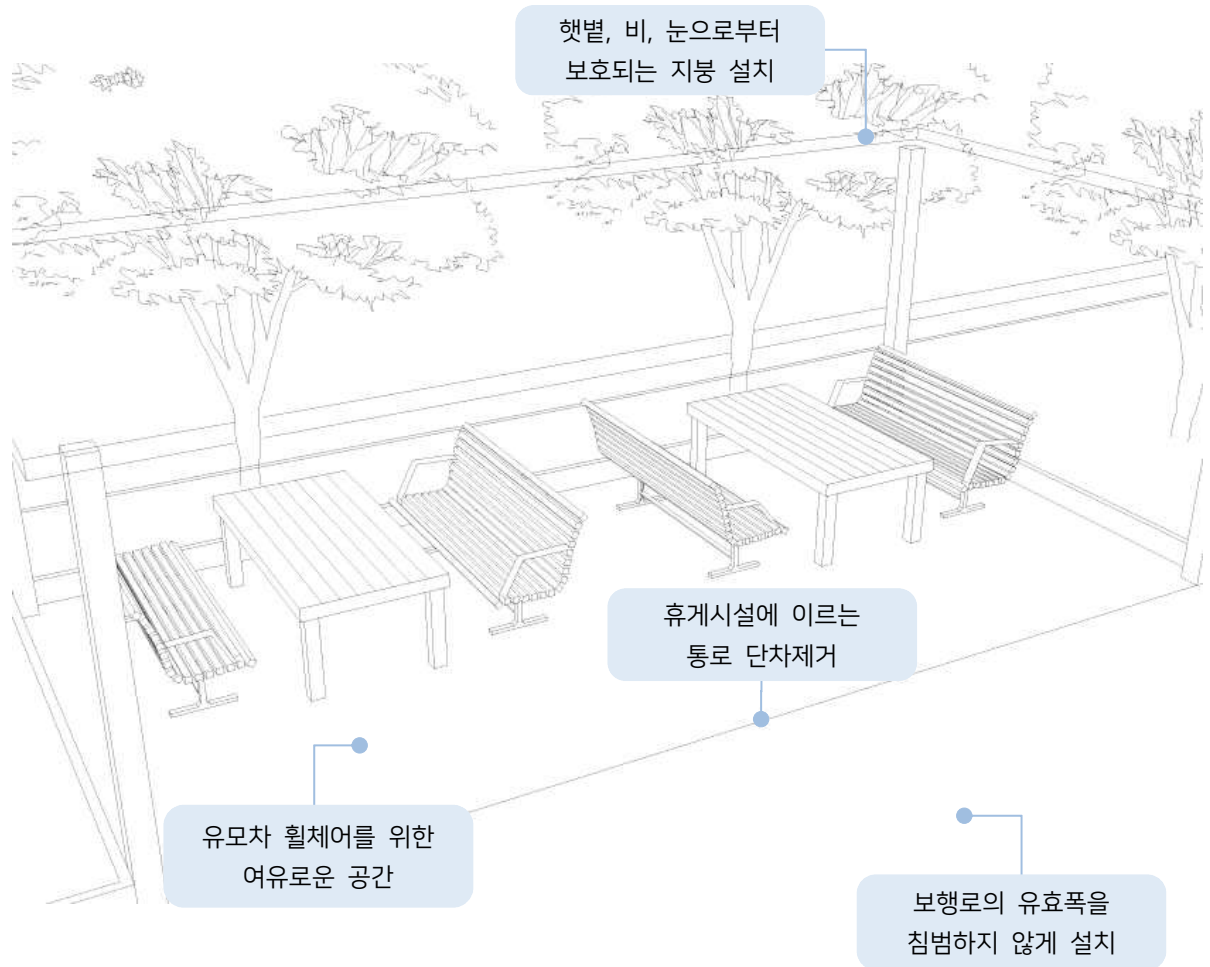
- + 휴게소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도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거나 만질 수 있는 자연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 + 기존 색상을 최대한 날리며, 랜드마크 가능한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 + 사계절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한다.
- + 가급적 직접 만지거나 먹을 수 있는 채소류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식물 식재를 고려한다.
- + 야간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유도안내 표시판 설치

체크리스트

야간 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명	<input type="checkbox"/>
보행로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게 설치	<input type="checkbox"/>
휴게시설에 이르는 통로 단차 제거	<input type="checkbox"/>
햇볕, 비, 눈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설치	<input type="checkbox"/>
유모차나 휠체어를 위한 여유있는 공간	<input type="checkbox"/>



06 놀이터

PLAY GROUND

기본지침

- + 놀이터는 놀이시설이 설치된 영역을 지칭한다.
- +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강한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함께 설치한다.
-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운동공간을 고려한다.
- + 장애아동 및 일반 어린이,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놀이시설을 통합시설로 설치하고, 불가능한 경우 보행안전구역과 가까운 놀이터 일부 공간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 + 기타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대와 치유를 돕는 공간을 제공한다.
- + 잔디, 고무블록 등 안전한 재료로 마감하고,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부드러운 바닥재와 딱딱한 바닥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 놀이 후 식수 공급과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권장한다.
- + 놀이터가 주차장 또는 차도와 인접한 경우, 놀이터 경계에 장벽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사고를 예방한다.

놀이시설

- + 놀이시설은 이용자들이 놀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배울 수 있는 요소로, 장애를 지닌 어린이도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다음의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단차를 제거한 시설물을 도입한다.
- 나. 단순한 놀이보다는 촉각이나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적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 다. 인위적 시설보다 흙과 물, 식물 등 자연소재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람직하다.
- 라. 신체발달의 촉진을 위한 어린이용 운동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 놀이시설은 휠체어 이용 어린이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마련한다.
- + 미끄럼틀은 나이 어린 어린이와 장애를 지닌 어린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와 손잡이를 설치한다.
- + 시각 장애를 지닌 어린이를 위해 종, 북 등의 다양한 소리를 내는 놀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 모든 놀이시설이 독성이 없는 재료와 마감을 사용하고, 안전을 위해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한다.

휠체어 이용 어린이 놀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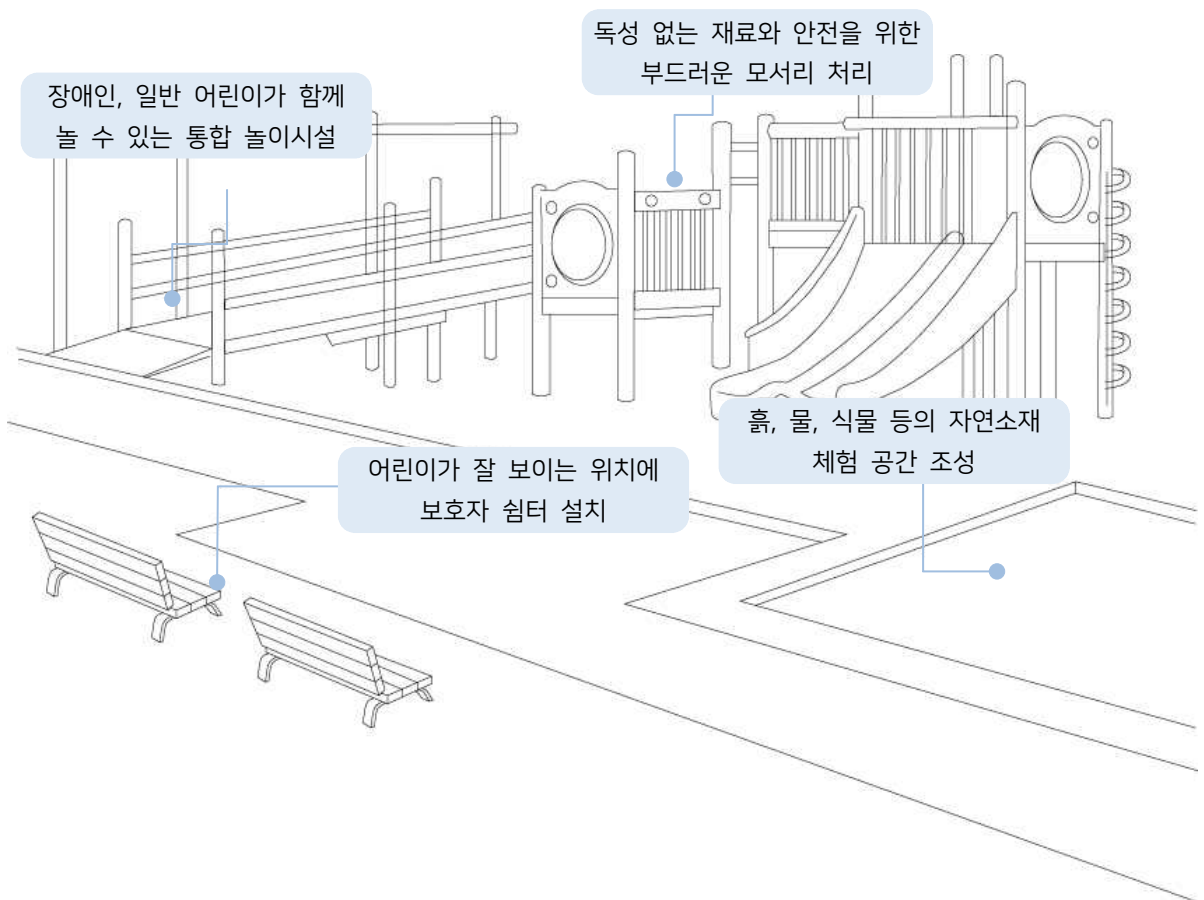
+ 이용자의 조작이 필요한 놀이시설을 계획할 때, 휠체어 이용 어린이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적절한 영역을 고려하도록 한다.

도달범위	3-4세	5-8세	9-12세
최대	915mm	1015mm	1120mm
최저	210mm	455mm	405mm

+ 휠체어 이용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경사로 등의 접근로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체크리스트

- 어린이의 모습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보호자가 휴게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쉼터 설치
- 장애인, 일반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 시설 설치
- 휠체어 이용 어린이가 조작 가능한 여유 공간
- 흙, 물, 식물 등의 자연소재 체험 공간 조성
- 독성 없는 재료와 안전을 위한 부드러운 모서리 처리



4. 공공건축물

개 요

적용범위

-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비롯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건축, 대수선 등 건축 행위가 있을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
- 향후 모든 시민을 비롯한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권장

적용공간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공간은 공공건축물을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공간으로 접근공간, 이동공간, 서비스공간을 그 정비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간별 기본지침과 세부 설치기준 수립
- 접근공간은 이용자가 공공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가로에서 출입구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대지 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함
- 이동공간은 로비에서 목적공간에 다다르기 위해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복도/통로, 실내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손잡이를 대상으로 함
- 서비스공간은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수유실, 접수·안내데스크, 안내표시,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함

01

보행접근로

WALK PATHS

공공건축물

(접근공간)

기본지침

- + 도로 및 주차장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일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만한 기울기로 하며, 손잡이, 주의환기용 점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동선과 자동차 동선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 + 보행접근로는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 유효폭, 마감재의 재질,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 보행접근로 및 대지내 통로는 화재 등 비상시 대비하여 안전한 피난통로가 되어야 한다.
-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을 설치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 조명을 적극 활용한다.
- + 비, 눈 등 악천후 시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이동경로에 계단이나 경사로는 물론 작은 단차도 없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로 유효폭과 바닥마감 등에 유의한다.
- + 시·청각 또는 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시각, 음성(또는 음향) 유도장치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재질과 마감

- + 바닥은 우천시 등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블록 등으로 보행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아야 하며,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줄눈간격은 0.5cm이하가 되도록 한다.
- + 광장 등 넓은 공간의 바닥마감 및 재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침수 및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블록 등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 보행접근로와 부지내 차도의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며,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재질이나 색채로 마감한다.
- +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주조색은 무채색으로 한다.
- +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여 조잡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한다.
- + 인터로킹 블록 등을 바닥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재 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유효폭

- +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에 이르는 주요 보행 접근로는 우산을 쓴 사람,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등 2명이 원활하게 교행 할 수 있도록 보행접근로 전체구간에 유효폭을 2.5m이상 (법적치수 2.1m이상)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주요 보행접근로 이외의 대지 내 통로는 유모차 동반자나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해 다른 보행자가 비켜질 수 있도록 최소 1.2m이상으로 하되, 휠체어의 방향 전환이 자유로운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가급적 유모차나 휠체어 상호간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1.8m이상 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2.3m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2개 이상의 보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교행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의 보행 장애물은 보행접근로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지면에서 높이 2.5m이내(법적치수 2.1m이상)에는 가로수의 가지나 상부충돌물이 없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양측 가장자리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0.3m이상의 색상, 질감 차이를 이용한 경고용 바닥재를 설치한다.

기울기

-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된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지형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짐을 가진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상하 기울기 1/24이하, 좌우 기울기 1/50이하로 설치한다.
- + 보도 및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18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1/12까지 완화 할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 +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는 경우 1cm이하 (법적치수 2cm이하)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보행접근로에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어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잡이, 주의환기용 점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 +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의 횡방향 기울기는 1/50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차도와의 경계

- + 보도에서 건축물 입구까지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 + 부득이하게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의 연속성을 우선시한 구조로 한다.
- + 보행접근로에 인접하여 대지내 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보행접근로와 부지내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6~15cm이하의 연석·올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차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부출입구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할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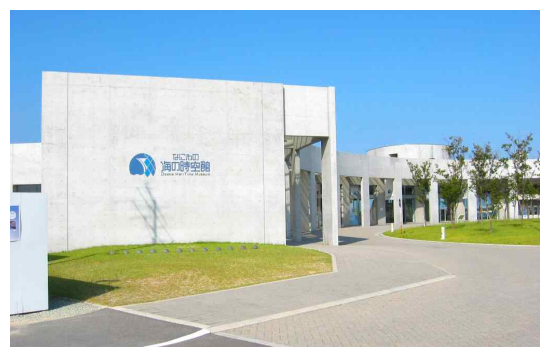
보행안전통로

-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보행장애물(가로등, 전주, 간판 등)은 시설물구역(가로등, 변압기등을 위한 별도의 영역)에 설치하여 보행안전통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보행안전통로의 좌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 0.3m이상의 유도존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 시각장애인 유도존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근에 턱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 등에 차이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대중교통으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도록 한다.[BF]

배수구 덮개

- + 배수로는 보행접근로를 가로질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배수구 덮개의 표면과 보행접근로 마감면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높이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한다.[BF][장애인등편의법]

- +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배수구 덮개는 격자구멍 등의 틈새가 없는 것을 권장한다.[BF]
- + 덮개의 마감재는 보행접근로와 동일한 재료를 권장한다.
- + 보행접근로에는 배수구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 + 부득이하게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접근로의 포장면과 단차가 없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틈새가 없거나 격자구멍이 1cm이하(법적치수 2cm이하)인 덮개를 사용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배수구 덮개의 격자 형태는 진행방향에 유모차 또는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보도와 대지내 보행접근로와의 단차없는 경계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



높이차이가 전혀 없는 평탄한 보행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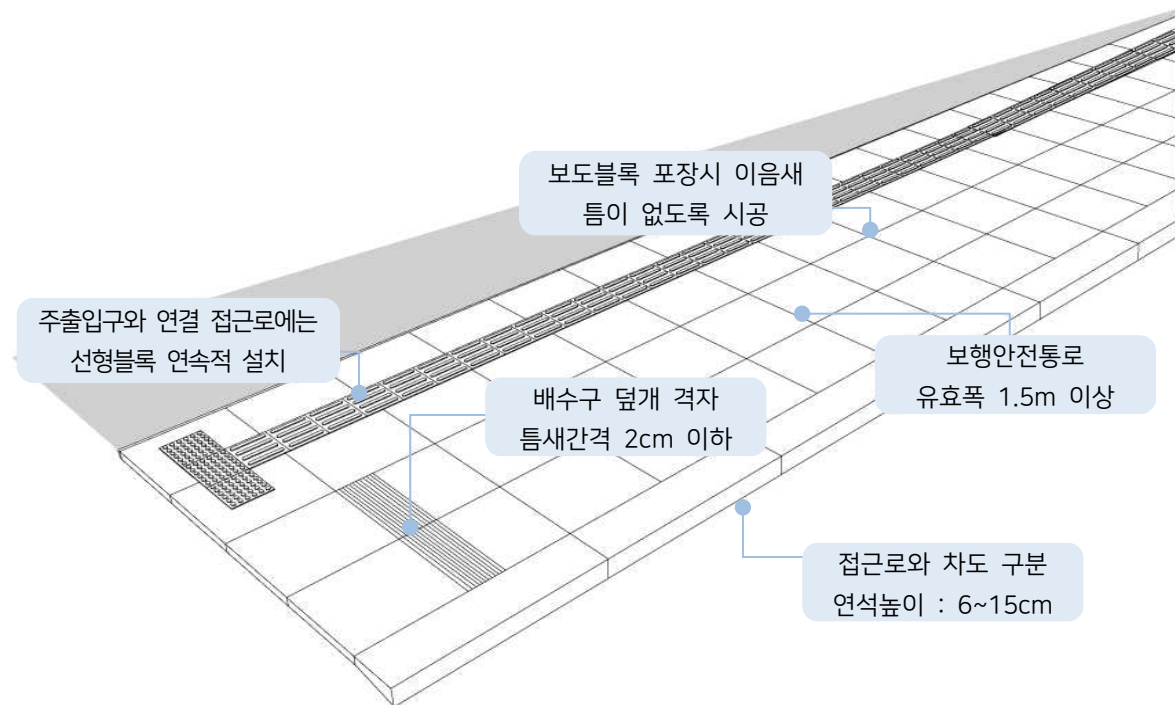


간격이 좁고 바닥마감재와
높이가 동일한 배수로 덮개 설치

체크리스트

대지내 보도는 자동차 보도와 반드시 분리	<input type="checkbox"/>
보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input type="checkbox"/>
보도블록 포장시, 이음새 틈이 없도록 시공	<input type="checkbox"/>
보행안전통로 유효폭 : 1.5m 이상	<input type="checkbox"/>
주출입구와 연결 접근로는 선형블록 연속적 설치	<input type="checkbox"/>
보도 및 접근로 진행 방향 기울기 1/18 이하	<input type="checkbox"/>

보도 및 접근로 횡방향 기울기 1/50 이하	<input type="checkbox"/>
주접근로의 단차가 있는 경우 높이차이 2cm 이하	<input type="checkbox"/>
접근로와 차도 경계 부분 : 연석, 울타리 등의 시설물 설치	<input type="checkbox"/>
접근로와 차도 구분 연석 높이 : 6~15cm	<input type="checkbox"/>
가로수 가지치기 : 지면에서 2.1m	<input type="checkbox"/>
보행장애물(가로등, 전주, 간판 등)은 장애물존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배수구 덮개 : 격자 틈새 간격 2cm 이하	<input type="checkbox"/>



02 출입구

ENTRANCE

기본지침

- + 건물의 출입구는 반드시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에는 계단이나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 + 주출입구는 도로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안전한 동선을 확보한다.
- + 주출입구의 전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 주출입구의 옥외 전면공간에는 비나 눈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한다.
-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에는 가능한 한 단차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여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주출입구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목적 공간까지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설 안내판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 주출입구에는 건물과 건물 내 편의시설(특히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시 또는 안내소가 있어야 한다.
- +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되어야 한다.

- + 부출입구도 주출입구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는 가능한 분리된 출입문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유효폭 및 활동공간

- +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은 유모차나 큰 물건의 운반, 휠체어 통행 등을 고려하여 0.9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문손잡이가 있는 부분의 측면은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문을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휠체어나 유모차의 회전 및 출입문의 개폐 동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5m이상, 반대쪽은 1.2m이상, 미닫이문은 좌우폭 1.9m이상, 깊이 1.2m이상을 확보한다.
- + 통행량이 많은 주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BF]
- + 부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0.8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BF]
- + 방풍실과 같이 출입문이 연속된 주출입구는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 주출입구 주변에 시각장애인용 시설종합안내판이나 우산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문의 형태

- + 주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유모차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및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 문이나 미닫이문을 병설하고,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수동문이나 반자동문의 문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0.8~0.9m이내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부착한다.
- + 자동문이 아닌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문 개폐가 용이하도록 반자동문의 버튼이나 문손잡이 쪽 옆에 최소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 출입문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흠 등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 + 미닫이문은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을 위해 가벼운 재질로 하며, 도어체크를 설치한 여닫이문은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확보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열린 출입문이 복도 등의 통로를 차단하거나 돌출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 등의 출입문이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 노인,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해 문 반대편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실의 문은 충돌방지를 위해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 + 자동문 등 전면이 투명유리로 된 출입문은 충돌방지를 위한 표식 등을 보기 쉬운 높이에 붙이도록 한다.

-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 + 자동문 설치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자동문 설치를 권장한다.[BF]

턱 낮추기

- + 주출입구에는 2cm를 초과하는 바닥의 높이차이나 턱, 문지방 등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BF]
- + 단차가 있어 턱 낮추기를 할 경우에도 기울기 1/12이하, 단차 2cm이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안내 및 경고시설

- + 주출입구 주변에는 건축물의 종합적인 정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도 보기 쉬운 위치와 높이에 설치한다.
- + 시각 장애인의 출입이 많은 주출입구에는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안내판 전면에는 유모차 동반자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반경 1.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보행접근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주출입구에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여 부출입구를 휠체어 사용자 등의 출입경로로 할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표시를 마련한다.[BF]
- + 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음향유도장치와 음성유도장치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청각장애인과 기타장애인을 위하여 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한다.
- +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 건축물 주출입구가 자동문인 경우, 문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문 옆에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 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주출입문 전면에는 바닥재질의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보다는 점형블록을 설치한다.[BF]
- + 주출입구 외부 전면공간이 차로나 주차장과 인접한 경우에는 경계부분에 안전펜스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 주출입구 벽면을 유리로 계획할 경우 어린이는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창밖을 보는 행태가 있으므로 문 경첩 부분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 + 미닫이문은 문짝과 문틀이 만나는 부분에 쿠션재 등을 설치하고 여닫이문은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이상 확보되는 도어체크 등을 설치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강화유리문일 경우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유리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면에서 높이 1.5m, 폭 10cm이상의 수평띠나 인지하기 쉬운 주위환기용 표식등을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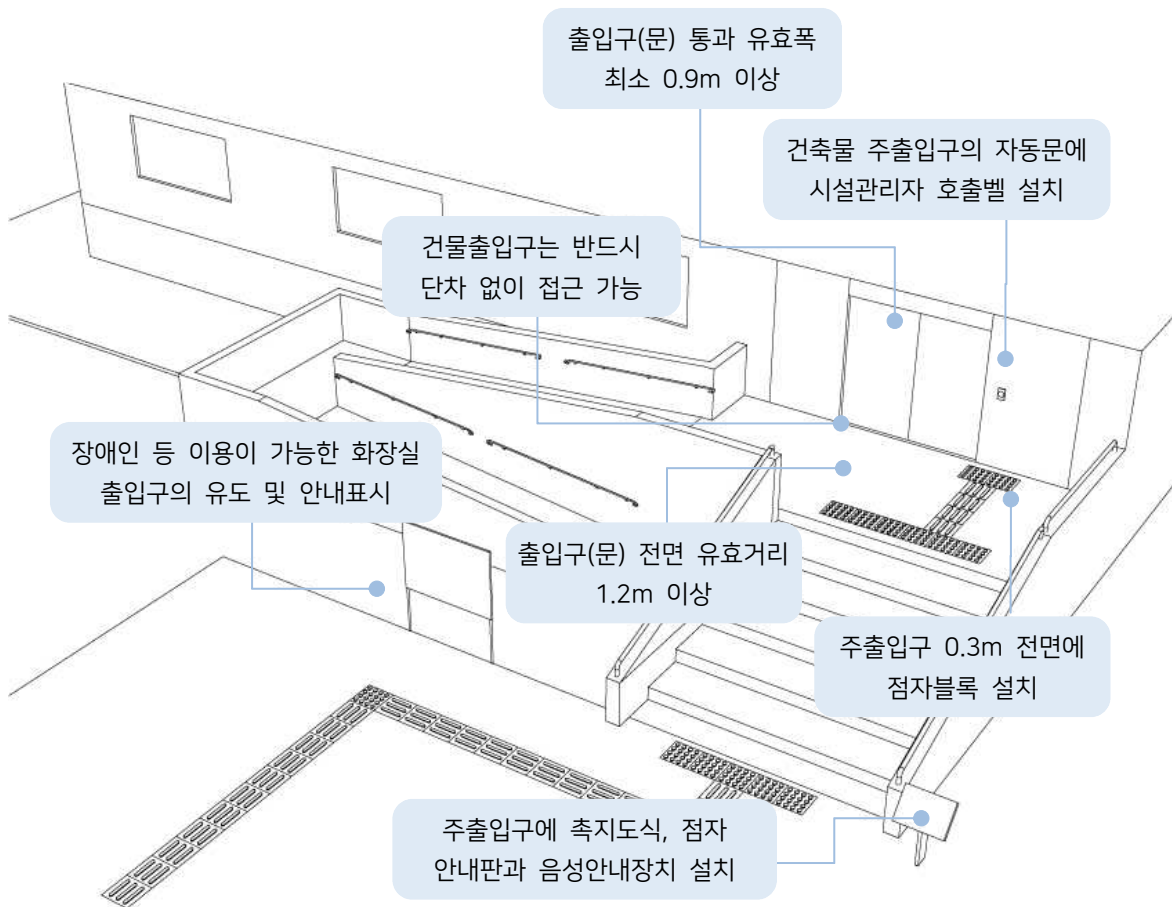
높이차이가 없고 누구나 인지 및 접근하기 쉬운 주출입구



자동문을 설치한 주 출입구

체크리스트

건물 출입구 : 반드시 단차 없이 접근 가능	<input type="checkbox"/>	건축법시행령 의거, 자동문 형태의 출입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등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의 유도 및 안내표시	<input type="checkbox"/>	주출입구 2cm 초과시 바닥 높이 차이, 턱, 문지방 불가	<input type="checkbox"/>
외부 출입시 바닥면은 눈,비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	<input type="checkbox"/>	단차의 턱 낮추기 : 기울기 1/12이하, 단차 2cm 이하	<input type="checkbox"/>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 최소 0.9m 이상	<input type="checkbox"/>	주출입구 :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 이상	<input type="checkbox"/>	점형 블록 : 건축물 주출입구 0.3m 전면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통행량이 많은 시설의 경우 주출입구 통과폭 : 1.2m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전용 시설 : 음향·음성 유도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출입문 전후에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주출입구의 자동문 : 시설관리자 호출 벨 설치	<input type="checkbox"/>



03 주차구역

PARKING ZONE

기본지침

- +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주차구역(이하, G주차구역이라 한다)과 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가 주출입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 + 시설의 용도, 규모에 따라 G주차구역 등의 동시이용을 고려해 여유 있는 주차구역수를 확보한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외에 임산부, 유아동반자, 노인 등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일반주차구역보다 여유 있는 폭을 가진 주차구역을 가급적 별도로 설치한다.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며 휠체어 사용자등이 승차 전·후에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구에 도달 가능한 보행안전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BF]
- + G주차구역 등에서 주출입구까지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 및 바퀴달린 가방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쉽도록 바닥에 단차가 없도록 하며,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 + G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및 경로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는 알기 쉽도록 배려한다.
- + 장애인 전용 주차면 수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 +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붕이나 캐노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평탄하여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 +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표시를 바닥면과 전면 등에 식별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 + 지정 주차장인 경우에는 입식표지판과 차량에 지정 주차인의 차량번호 등을 표시한다.
- + 야간의 이용을 고려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주차구역의 크기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0m이상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확보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주차면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로 한다.[교통약자법]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는 2면 이상의 복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법적 규정비 100%를 초과하여 확보한다.[BF]
- +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주차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의 주차대수 중 20%이상을 G주차구역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G주차구역의 폭은 2.7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해야 하며, 가급적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폭은 3.0m이상을 권장한다.
- + G주차구역의 차량 측면에는 임산부나 유모차의 통행이나 승강을 위해 폭 0.8m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언제나 주차할 수 있도록 복수로 설치하며, 좌·우측 어느 방향에서도 승강할 수 있도록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측면에는 휠체어의 통행과 승강을 위해 폭 1.2m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주차구역 표시

- +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은 가로 50cm, 세로 58cm이다.[장애인등편의법]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휠체어 그림은 백색을 사용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시표지판을 세우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BF]
- + 전면주차 혹은 후면주차에 따른 운전자의 승·하차 위치를 고려하여, 휠체어 활동공간 표시를 권장한다.
- + 휠체어 활동공간 1.2m를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휠체어 활동공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 길이 5.0m로 설치하고, 측면에 폭 1.2m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노면 표시한다.[장애인등편의법]

보행안전통로

- +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효폭 1.2m이상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보행안전통로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 짐 운반 등을 고려해 바닥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 +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 동선에 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통행표시가 된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BF]
- + 부득이하게 보행안전통로에 단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1/20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 보행안전통로는 대지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 주출입구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차량간섭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 보행안전통로에는 바닥면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보행안전통로와 G주차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조명과 보안

- + 옥외 주차장의 조명인 10 lux이상으로 하며, 조도균제도(최대 조도에 대한 최소 조도의 비율)는 0.4이상으로 한다.
- + 야간의 이용을 고려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계획과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 방법 등에 대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한다.

유도 및 안내표시

- + 안내표시는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연속으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BF]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식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공동주거, 복지관 등 우선 주차구역 등의 지정주차자일 경우에는 입식표지판과 해당 차량에 지정 주차자의 차량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안내는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각 면마다 벽 부착형 또는 입식의 형태 등으로 설치한다.
-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별도 주차구역을 마련 할 경우에는 주차구역의 유도 및 안내표지판에 해당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 + G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및 경로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각각의 주차구역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G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G마크 표시를 하고, 입식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 + 필요에 따라 후방확인을 위한 거울, 음성·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자동차의 출고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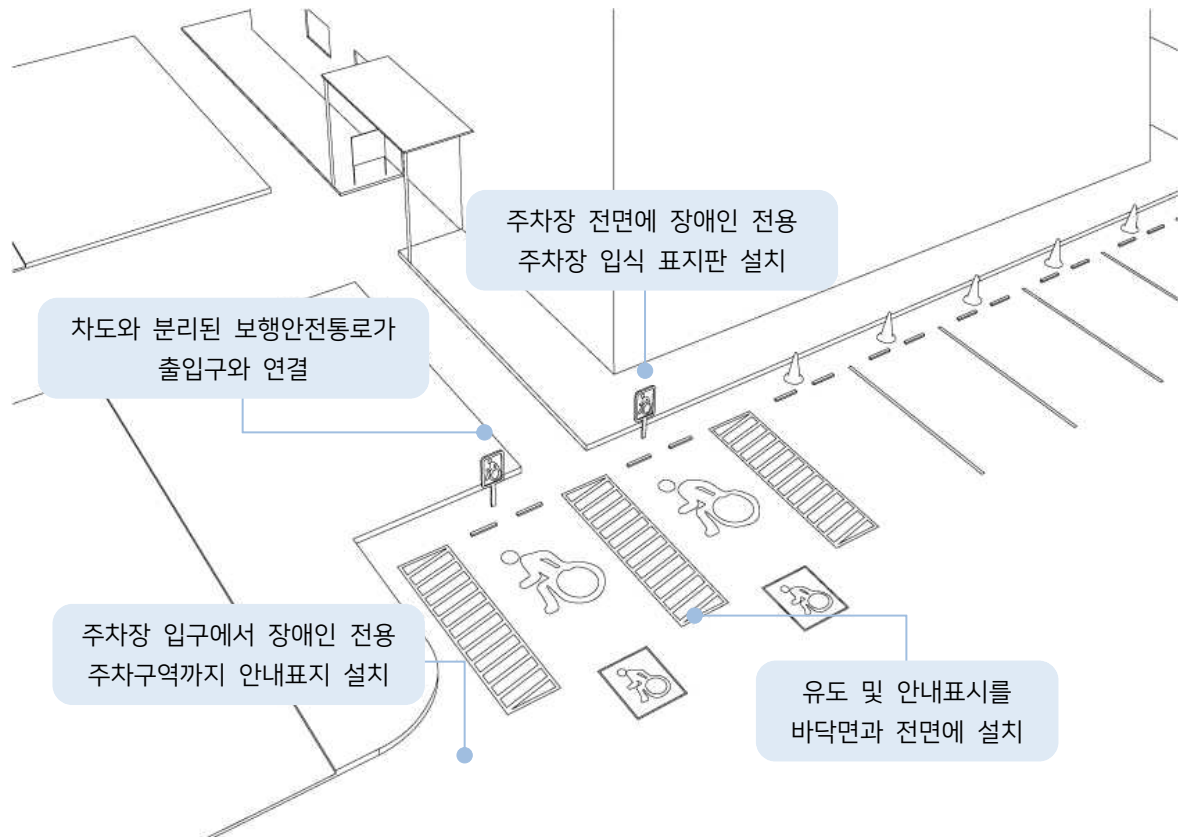
여유있는 주차장 폭 3.5m 이상 확보



주차구역 상부에 눈, 비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설치

체크리스트

승강기,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주차장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식 표지판 설치	<input type="checkbox"/>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가 출입구와 연결	<input type="checkbox"/>	입식 안내 표지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	<input type="checkbox"/>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과 전면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안내표지 설치	<input type="checkbox"/>
외부 주차장 : 지붕설치 (권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 보행 안전통로 : 폭 1.2m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최소 폭 3.3m, 길이 5m 이상	<input type="checkbox"/>	옥외 주차장 조명 : 조도 10 lux 이상, 균제도 0.4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도에 평행주차 : 폭 2m, 길이 6m 이상	<input type="checkbox"/>	차로 통과 보행동선 : 보행자 우선 통행표시	<input type="checkbox"/>
주차면의 바닥면 : 높이 차이 2cm 이하	<input type="checkbox"/>		



01 복도/통로

CORRIDOR

공공건축물(이동공간)

기본지침

-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 조건이나 동작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복도는 실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공간이므로 이용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적절한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해야 한다.
- + 이용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고, 설비기구나 기둥 등의 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 +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방향전환이 적고 복잡하게 연결되지 않는 구조의 복도로 계획한다.
- +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유도·안내정보를 적재적소에 설치한다.
- + 층별 또는 조닝별로 벽, 천장, 바닥 등의 마감재나 공간 연출을 달리하여 이용자가 시설 내 위치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한다.
- + 이용자가 이동 중 복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차가 없고 통행하기 쉬운 바닥마감재를 선정하여, 복도에서 어두운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계획 수립한다.
- + 복도에는 기둥이나 벽면돌출, 장식물이나 소화설비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유효폭

- + 유모차 이동이나 휠체어의 방향전환 등을 고려해 유효폭은 1.5m이상(법적치수 편복도 1.2m이상, 중복도 1.5m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 상호교행 할 수 있도록 1.8m이상을 확보한다.[BF]
- + 관리자용 복도는 1.2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복도의 모퉁이는 이용자가 방향 전환하기 쉽도록 벽 모서리를 0.3m이상 사선방향 또는 둥글게 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닥마감

- + 복도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바닥마감은 목발 등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바닥마감재로 카펫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모차, 휠체어, 김수레 등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행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한다.
- + 지팡이 사용자,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모가 지나치게 긴 양탄자는 지양한다.
- + 단차로 오인하기 쉬운 문양을 가진 바닥마감재는 지양한다.
- +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공간 등 일부 바닥면은 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단순한 이동공간이 아닌 변화가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 복도 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통행하기 쉬운 마감재와 시각장애자 등이 걷기 쉬운 마감재 등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 + 임산부, 어린이, 노인, 보행장애인 등은 작은 단차에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크므로, 바닥마감재의 이음새 틈이나 미세한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한다.
- + 복도 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通行하기 쉬운 포장재와 시각 장애인 등이 걷기 쉬운 포장재 등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 바닥마감 재료는 질감, 색상 등을 달리하여 시각 장애인의 유도 및 경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복도의 구조

- + 유효폭 1.5m미만의 복도는 길이 25m이내마다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유효폭 1.5m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 복도의 모퉁이는 이용자가 방향 전환이 쉽도록 벽모서리를 0.3m이상 사선방향 또는 둥글게 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잡이

- + 손잡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므로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지방법으로 설치한다.
- + 움켜잡기 쉬운 손잡이의 직경은 3.2cm ~ 3.8cm 정도이며, 기립할 경우 수직손잡이의 직경은 2.8~3.5cm 정도를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사용하기 쉽도록 2단 손잡이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이내로 설치하며, 2단손잡이의 경우 상단손잡이의 높이 0.85m내외, 하단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정도로 하며, 2단손잡이의 경우 하단손잡이는 손잡이 직경 1/2정도 상단손잡이보다 복도 측에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의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는 형상이어야 한다.
- + 손잡이의 재질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사용하기에 좋도록 차갑거나 미끄러운 금속제를 지양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로 설치한다.
- + 시각장애인에게 현재의 위치, 진행방향,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시판을 부착(안쪽 상부면 권장)해야 하며, 바깥쪽 상부면에는 문자정보를 병기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는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의 단면 형상은 움켜잡기 쉬운 크기의 원형 단면으로 한다.

보행장애물

- + 벽면이나 독립기둥 등에는 안전을 위해 돌출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2.1m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m이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m이하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소화기는 벽 매입식으로 하고, 의자, 자동판매기 등이 복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실 안내판은 바닥 설치식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통로상부는 2.1m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유효높이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바닥면에서 높이 0.6m이하의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시각장애인의 유도

- + 약시나 어느 정도 빛을 느낄 수 있는 시각장애자를 위해 가급적 중복도가 아닌 편복도로 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거나 한쪽 벽면의 색을 바꾸어 방향성을 인식하기 쉽도록 한다.
- + 점자블록에 의한 유도만을 의존하지 않고,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수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 계단시작과 끝지점·장애인전용승강기 조작기·화장실표지판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최단거리로 각 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도를 짧게 하며,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안정성 확보

- +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0.35m까지 킥플레이트(문이나 벽면 밑에 붙이는 판)를 설치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원활한 이동을 위해 벽이나 기둥 모서리는 각 벽면 0.3m이상을 사선방향으로 면 처리하거나 둥글게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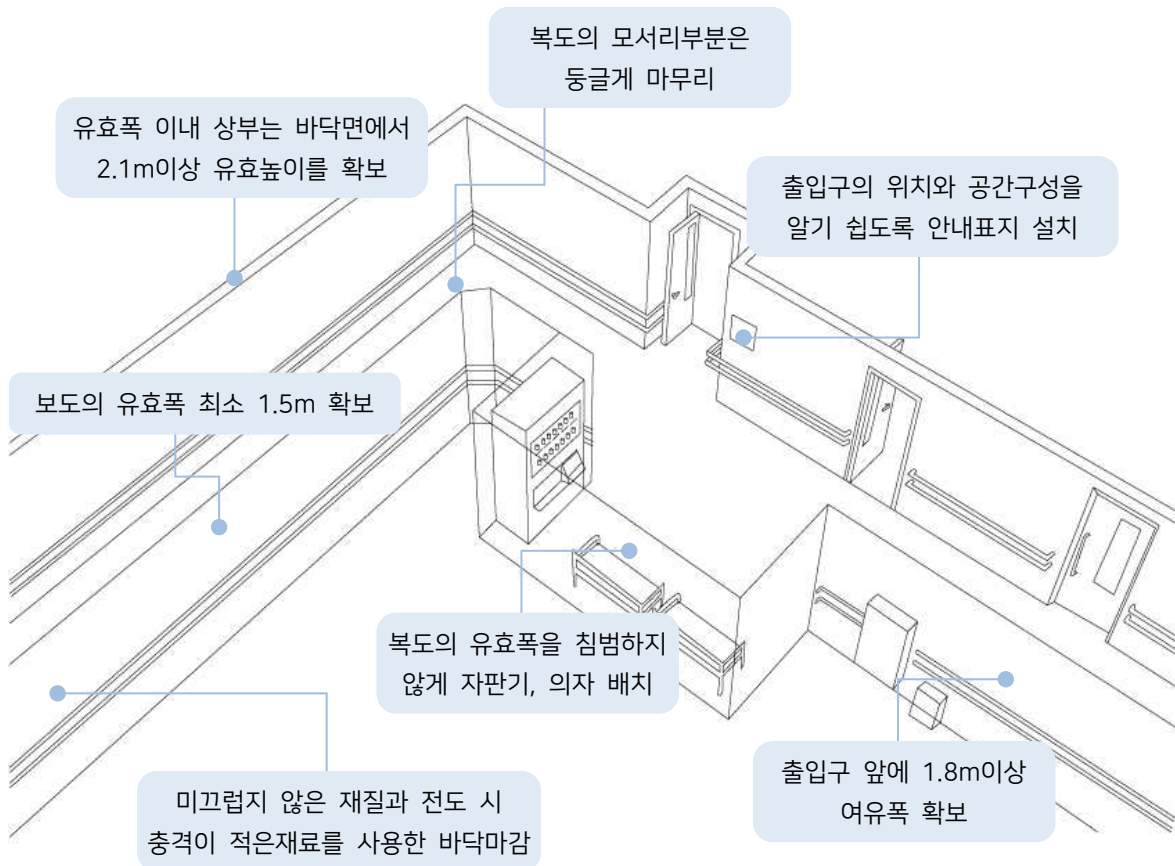
- +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장치를 적절히 설치한다.



보행영역의 바닥마감재를 달리하여 보행유도 및 실내출입구 위치 구분

체크리스트

바닥마감 :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전도 시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input type="checkbox"/>	유효폭 이내 상부 : 바닥면에서 2.1m 이상 유효높이 확보 <input type="checkbox"/>
복도 유효폭 : 최소 1.5m <input type="checkbox"/>	복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게 자판기, 의자 배치 <input type="checkbox"/>
출입구 앞 : 1.8m 이상 여유폭 확보 <input type="checkbox"/>	계단 시작과 끝 지점의 0.3m 전면에 접형 블록 설치 <input type="checkbox"/>
출입구의 위치와 공간구성을 알기 쉽도록 안내표지의 계획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사용자 배려 : 킥플레이트 0.15 ~ 0.35m 설치 (권장)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2단 손잡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복도의 모서리 부분 : 둥글게 마무리 <input type="checkbox"/>



02 출입문

DOORS

기본지침

- +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 노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며, 문턱 등에 단차가 없도록 한다.
- +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의 형태 및 구조가 되도록 한다.
- + 손잡이가 달린 쪽에 일정한 여유공간이 주어 손잡이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 실명(室名), 재실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열린 출입문으로 인해 복도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 공중 이용을 위한 실의 출입문은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에 부착하며, 점자 및 다국어 표기, 픽토그램 등을 통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효폭과 활동공간

- + 출입문의 폭보다 통과 유효폭이 좁다는 점에 유의하여 유효폭을 확보한다.
- +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유모차나 큰 물건의 운반을 고려하여 0.9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문의 개폐를 위해 문의 전면에는 1.2m 이상의 유효거리를 확보하되,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장애인등편의법]

- + 1.1m 이상의 여닫이문은 여닫기가 힘들고 문과 휠체어의 회전범위가 커져 오히려 불편하므로 지나치게 큰 폭의 여닫이문은 설치를 지양한다.
-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용이한 문 개폐를 위해 모든 실내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을 확보하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BF]
- +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문, 미닫이문, 반자동문의 경우,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문 손잡이와 터치 버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측면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BF]
- +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거리(두께)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결정한다.

문의 형태

- + 출입문은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을 가급적 자동문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장애인등편의법]
-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열린 출입문이 동선을 차단하거나 통로로 돌출되어 보행자의 통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BF]
- + 실을 출입하는 사람과 복도를 통행하는 사람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실내 출입문의 설치 위치는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한다.
- +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 시간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출입문의 경우, 바닥에서부터 높이 0.6m 되는 지점에 폭 0.2m, 높이 0.9m의 투시창 설치를 권장한다.
- +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은 유리면 충돌방지를 위해 주의환기용 표식 등을 보기 쉬운 높이에 붙인다.

출입문의 손잡이

- +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린이 등을 위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를 설치한다.
- + 문손잡이의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키가 작은 어린이의 사용을 배려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문잡이의 형태는 돌려서 사용하는 노브형은 지양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의 끝부분에 옷자락이 걸리거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형태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턱 낮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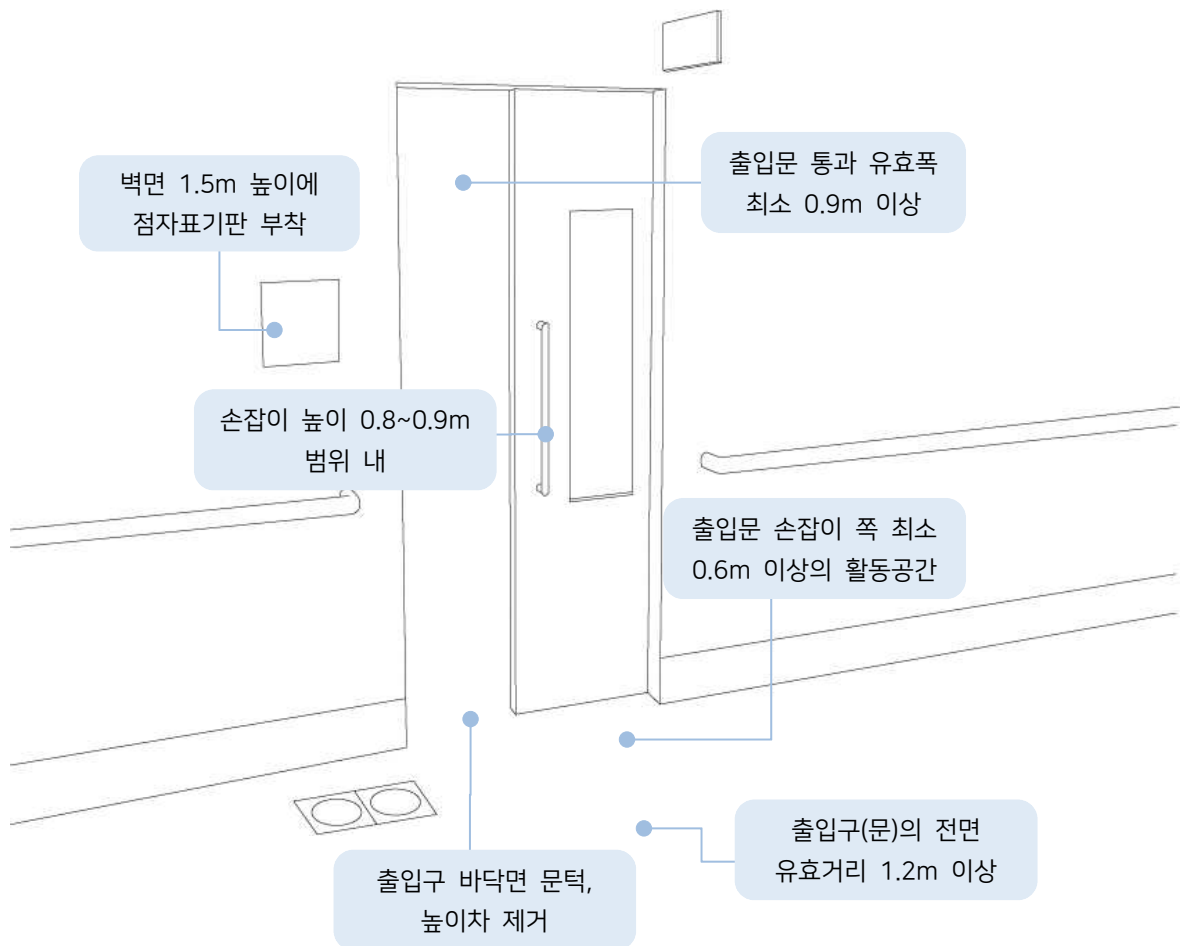
-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장애인등편의법]
- + 2cm이하의 턱이라도 휠체어가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사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턱낮추기를 위하여 설치한 경사면의 경사도는 1/12이하가 되어야 한다.
- + 실내출입문 바닥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출입과 노인,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문턱이나 홈과 같은 단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장애인등편의법]

유도 및 안내

- + 주된 실의 출입구에는 양측 손잡이 및 문손잡이 측의 벽면이 1.5m의 높이에 실명표지판 설치하고, 점자 및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실내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의 복도 손잡이에 실명을 점자표기하고, 하부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은 출입문 전면의 측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 + 돌출형 실명표지판을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복도의 보행장애물 범위인 높이 2.1m 이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 복도 벽면 마감재와 실내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도록 한다.

체크리스트

출입문 통과 유효폭 : 최소 0.9m 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입문 손잡이 : 수평/수직 막대형, 지렛대형(일명 레버형)	<input type="checkbox"/>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 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입구 바닥면 문턱, 높이차 제거	<input type="checkbox"/>
출입문 손잡이가 있는 쪽에 최소 0.6m 이상 활동공간	<input type="checkbox"/>	경사면 설치 : 경사도 1/12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동문의 충분한 개방 시간, 넓은 감지 범위	<input type="checkbox"/>	호실번호, 명칭 : 벽면 1.5m 높이에 점자표기판 부착	<input type="checkbox"/>
출입문 손잡이의 높이 : 0.8~0.9m 범위 내	<input type="checkbox"/>		



03 경사로

RAMP

기본지침

- +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설치위치, 기울기, 폭, 바닥마감재, 경사로 참, 손잡이 등을 고려한다.
- + 보행자, 유모차, 휠체어사용자, 짐수레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여유있는 폭으로 계획하도록 배려한다.
- + 경사로의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계단을 병행하여 설치한다.
- + 수평이동경로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축물 구조상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수평이동 동선 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 건축물 주출입구 등 건축물 외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상부에 햇볕,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실내에 설치하는 경사로는 대피로로 사용하기에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대책을 수립한다.

구조와 형태와 유효 폭

- + 경사로의 유효 폭은 복도와 동일한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0.9m까지 확보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굴절지점,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경사로의 기울기는 가급적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1/15이하(법적치수 1/12이하)를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기울기 1/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층간 이동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너무 완만한 경사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BF]
- + 경사로는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수직이동을 위하여, 방향 전환 없는 직선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건물 외부의 경사로에는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마감

- +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마감재를 사용한다.[BF]
-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참 등의 0.3m 전면에는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벽면 충돌을 대비하여 벽면에 충격 완화용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어린이, 노인, 약시자 등이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 경사부분과 수평한 참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명도차이, 채도차이, 질감차이, 조명방기 등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 옥외에 설치되는 경사로는 비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용 타일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경사로 양측면에는 휠체어나 유모차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BF]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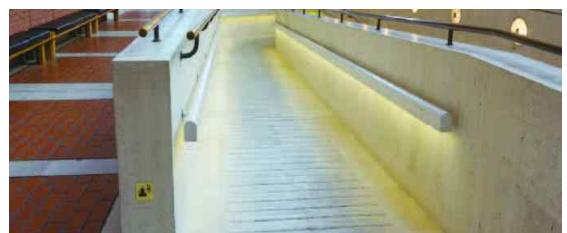
-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며, 양측면에 2단손잡이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해야 하며, 손잡이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이나 벽 방향으로 구부린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이내로 하며,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이내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손잡이는 2단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수평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BF]
- + 주변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 및 명도 차이가 명확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 +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2단 연속손잡이를 설치한다.[BF]

경사로 안내

- +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하고 안내하는 사인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 + 휠체어 사용자는 경사로로,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 분리하여 유도하고 유효폭이 1.5m이하인 경사로에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 + 경사로 이외의 접근로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유도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휴식점 등에는 경고용 바닥포장재를 0.3m이상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 약시자, 노인, 어린이 등이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를 두는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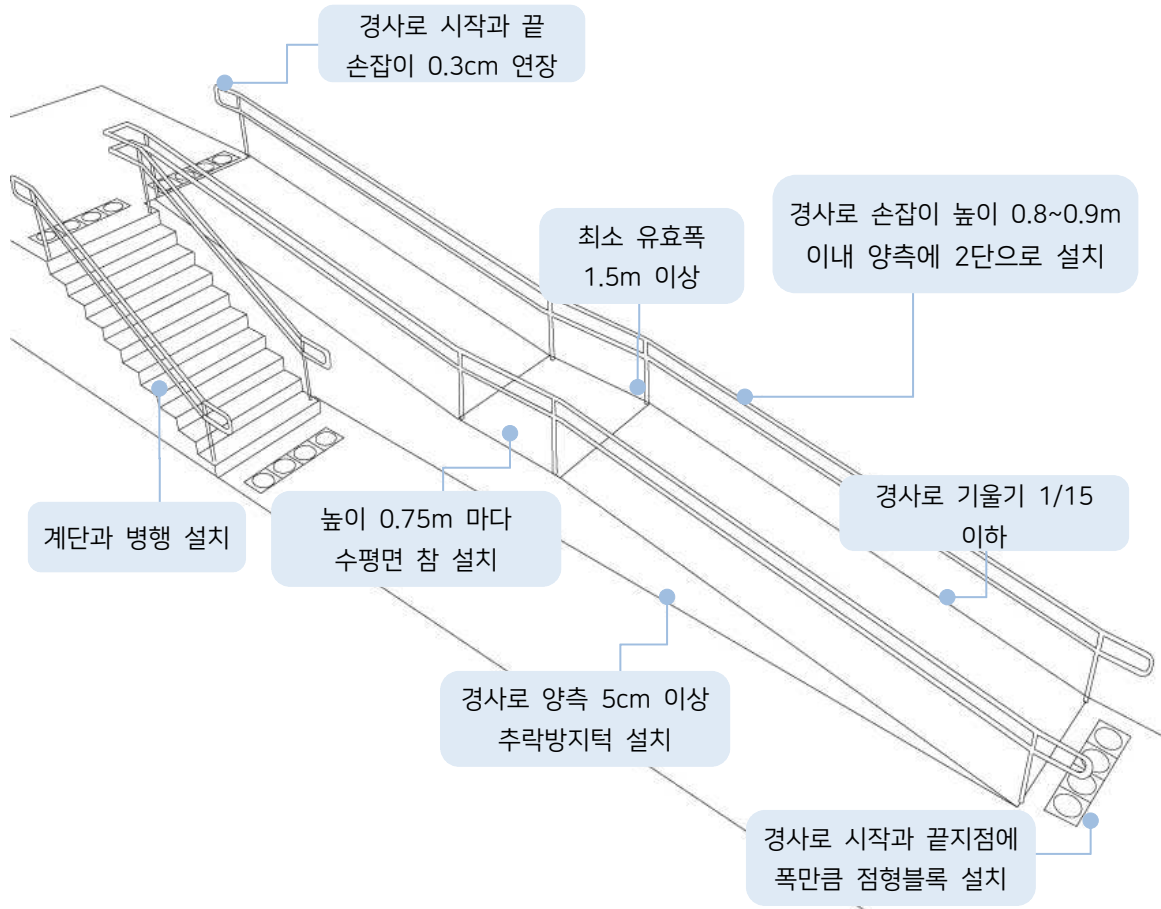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설치



2단 손잡이와 조명, 미끄럼방지 처리한 바닥면의 경사로

체크리스트

계단과 병행 설치	<input type="checkbox"/>	수평면 참 설치 : 높이 0.75m 이내마다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기울기 : 1/15 이하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시작, 끝 손잡이 : 0.3cm 연장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유효폭 : 최소 1.5m 이상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손잡이 양측 설치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양측 5cm 이상 추락방지턱 설치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손잡이 높이 : 0.8~0.9m 이내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시작, 끝, 참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손잡이 2단 설치	<input type="checkbox"/>



04 계단

SRAIRS

기본지침

- + 계단은 오르내리는 동작을 행하는 장소로,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안전한 피난 동선으로 활용되도록 설치한다.
- + 불규칙한 첩면의 높이 차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주 원인이 되므로, 하나의 계단에서 디딤판·첩면의 치수가 도중에 바뀌지 않게 동일하도록 설치한다.
- +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넘어지기 쉬우므로 디딤판이나 계단코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 계단 손잡이는 양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신체조건이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2단 손잡이를 설치한다.
- + 계단의 안전지수는 첩면(계단 디딤판 사이의 세로면)과 디딤판의 비례로 결정된다.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계단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수를 동일하게 한다.

형태

- + 계단은 평상시 층간이동에 유용한 공간이면서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이동경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 +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한다.[장애인 등편의법]

-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휴식 참이 없는 계단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하므로, 구간 길이가 긴 계단에는 중간에 휴식 참을 설치한다.
- + 계단 하부의 높이가 2.1m이하인 경우에는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망이나 의자, 식재, 점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 + 돌음(나선계단) 계단은 시각장애인이 실족할 위험이 크고 이용하기 어려움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 +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유효폭

-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머리가 계단 하부에 부딪히지 않도록 2.1m이상의 높이를 확보한다.
- + 관리자용 계단을 제외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이나 목발사용자,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1.5m이상(법적치수 1.2m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 등편의법]
- + 옥외피난계단은 0.9m이상으로 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손잡이

- + 계단 손잡이는 방화문 등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계단 참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설치하며, 계단 양측에 2단손잡이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며, 손잡이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방향으로 구부린다.[장애인등편의법]
- + 높이가 1m이하인 계단을 제외한 계단 폭이 3m를 넘을 경우에는 중앙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 +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손잡이는 2단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는 계단의 양측 모두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질과 마감

- +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디딤판은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 +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한다.[장애인등편의법]

계단의 식별

- + 계단코, 철크, 디딤판은 약시 등 시력이 좋지 않는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명도차이, 채도차이, 질감차이, 조명의 밝기 등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 계단을 내려올 때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딤판 및 계단코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채도 및 색상을 달리하여야 하며, 특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지점은 식별성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한다.
- + 약시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조도는 150 LX이상을 확보하고 조명으로 인한 음영으로 철크와 디딤판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BF]
- + 에너지 절감과 쾌적함을 위해 외벽에 면한 계단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측창이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 + 야간에도 발을 헛딛지 않도록 천창 조명,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디딤판과 철크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디딤판과 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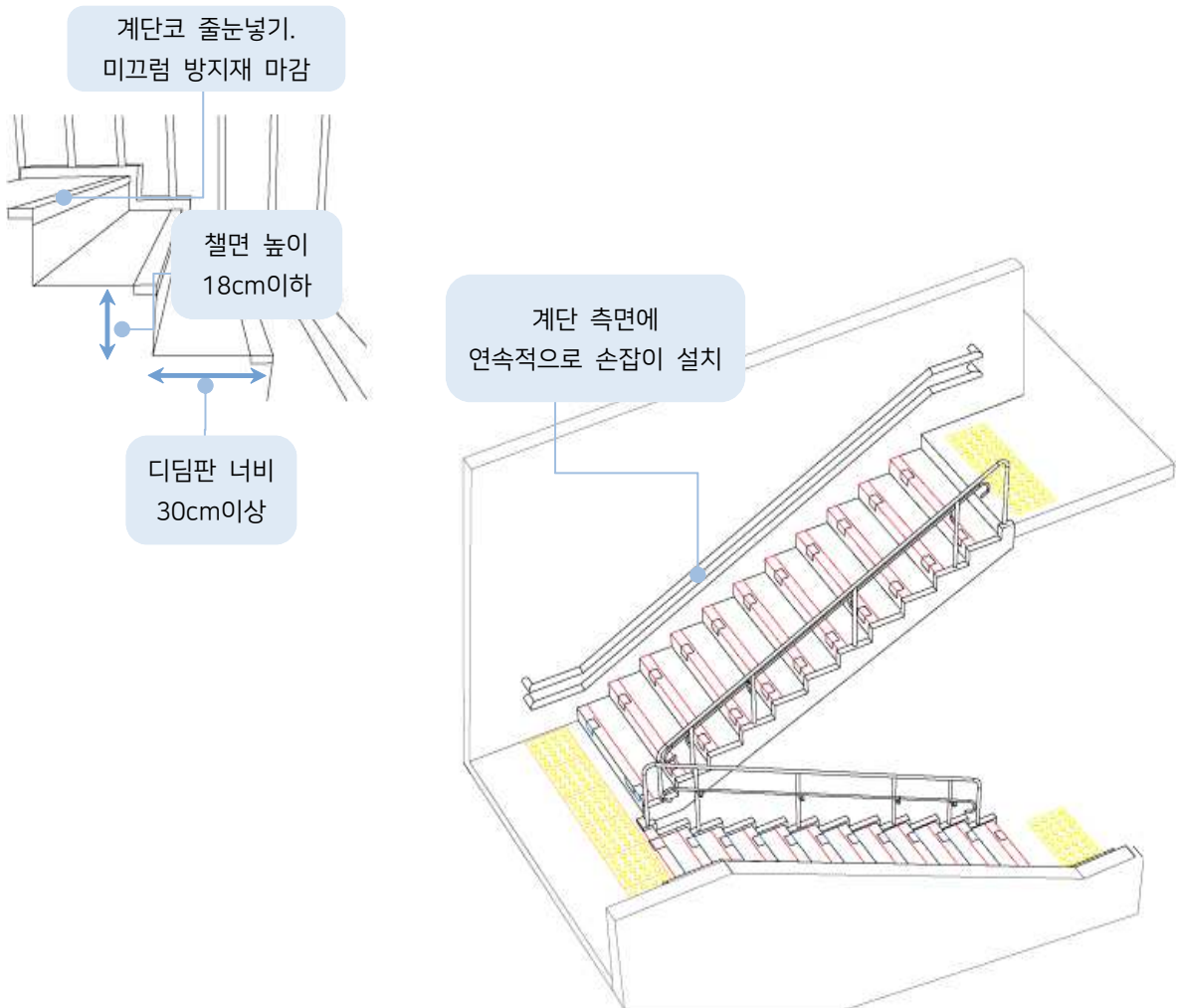
- + 계단 안전치수(철크+디딤판=46cm)는 철크와 디딤판의 비례로 결정된다.
- + 디딤판 너비는 30cm이상, 철크의 높이는 16cm이하(법적치수 디딤판 28cm이상, 철크 18cm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에서 치수를 도중에 바꾸지 않고 균일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디딤판의 끝부분은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철크의 기울기를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며, 계단코는 3cm이상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철크면을 설치하며, 투명한 유리판으로 된 계단을 지양한다.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디딤판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체크리스트

계단과 참 유효폭 : 1.5m 이상	<input type="checkbox"/>
계단 측면에 연속적 손잡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계단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 형태 (나선형 불가)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높이 : 0.8~0.9m 이내, 2단 설치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양끝, 굴절부분 층수, 위치 점자표지 판 부착	<input type="checkbox"/>
150Lx 이상의 조도 확보	<input type="checkbox"/>
계단 시작, 끝 : 손잡이 0.3cm 연장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지름 : 3.2~3.8cm	<input type="checkbox"/>
계단코 : 줄눈넣기, 미끄럼방지재 마감	<input type="checkbox"/>
점형블록 : 계단 시작과 끝 지점 0.3전면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디딤판 너비 28cm이상, 철크면높이 18cm 이하	<input type="checkbox"/>
높이 1.8m 마다 수평면의 참 설치 (권장)	<input type="checkbox"/>



05 승강기

ELEVATORS

기본지침

- + 승강기는 상하층의 이동수단으로서 이용빈도가 높은 설비이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한다.
- +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며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 + 승강기 조작 설비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쉽게 설치한다.
- + 승강기 출입문의 전면공간, 내부공간은 이용객 수를 고려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 승강로비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도착여부,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운행정보 및 안내를 제공한다.
- + 주출입구 가까운 위치에 접근 가능한 통로로 연결하여 설치하여 인지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활동공간

- + 승강로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내리는 이용자,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5m×1.5m이상(법적치수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되, 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은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BF][장애인등편의법]

- + 노인, 임산부 등이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 승강로비의 활동공간은 복도 등의 통로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출입문

-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5m이상(법적치수 0.8m이상)으로 하며,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휠체어의 이용이나 큰 짐의 운반을 고려해 0.9m이상을 권장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하며, 틈새 간격은 휠체어, 목발, 지팡이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2cm이하(법적치수 3cm)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감지기식 개폐장치의 감지높이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1.4m이하로 한다.
-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노인, 장애인 등은 행동특성상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의 닫히는 속도를 열리는 속도보다 느리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
- +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투시창)를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승강기 내부

-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가 1.35m이상으로 하며, 신축건물의 경우 폭은 1.6m이상으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 수평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0.9m내외, 지름은 3.2m~3.8m, 벽과 손잡이의 이격거리는 5cm 내외로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를 확인하고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 0.6m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노인, 임산부 등이 층간 이동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잠시 걸터 앉을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승강기 조작설비

-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로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기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하는 스위치 조작설비의 높이는 성인 및 시각장애인은 1.5m,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용은 0.85m 내외로 하며, 층수버튼, 개폐버튼, 비상호출 및 상호통화용 버튼에 점자표기를 하여야 한다.
- +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내외로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양각)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를 표시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조작버튼은 손등이나 팔꿈치로도 누를 수 있는 큰 것을 권장한다.

- + 조작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이어야 한다.[BF]
- + 승강기 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밀면이 25° 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로 한다.[BF]
-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기판을 부착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세로형 조작반의 배열은 아래에서부터 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층수 버튼- 비상호출버튼(인터폰)-문자정보판(층수 및 방향표시)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버튼의 좌측에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 + 가로형 조작반의 층수 버튼의 배열은 낮은 층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지그재그로 층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 + 가로형 조작반의 배열은 상단 좌측에서부터 비상호출버튼(인터폰)-문자정보판(층수 및 방향표시)-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의 순서로 배열하며, 하단에는 층수 버튼을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가로형 조작반의 점자는 층수 버튼은 버튼의 상단에 표기하며, 나머지 버튼은 좌측에 표기하도록 한다.
- + 조작반의 점자는 가로형일 경우 층수 버튼의 상단에 나머지는 좌측에 표기하며, 세로형일 경우 모든 버튼의 좌측에 점자를 표기한다.

안내장치

-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며,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층수 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BF]
-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안전 및 조명

- + 승강기의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 lx 이상으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하거나 승강기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각 층 승강기 조작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장애인등편의법]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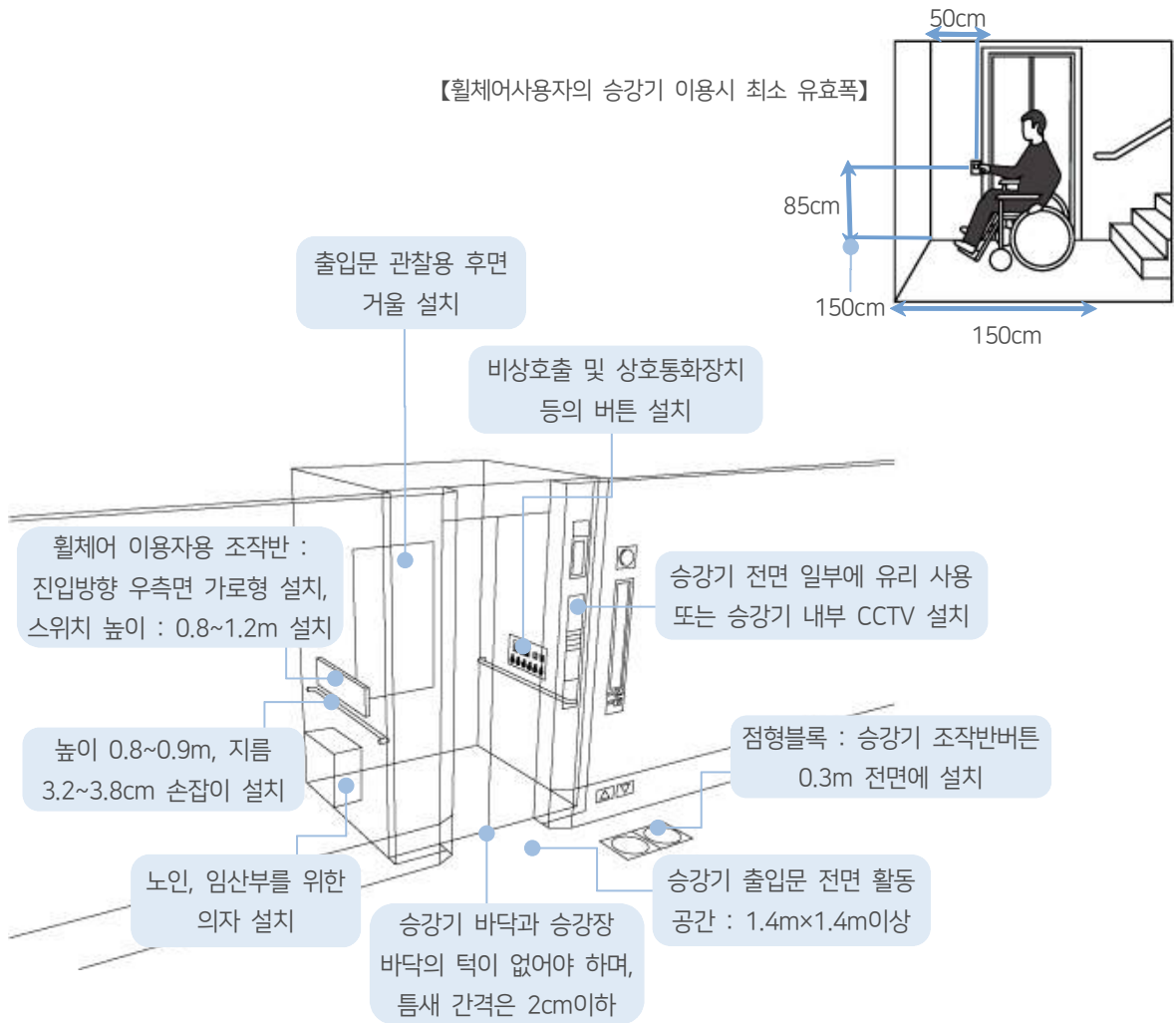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 : 폭 1.1m 이상, 깊이 1.3m 이상	<input type="checkbox"/>
승강기 출입문 전면 활동공간 : 1.4m×1.4m 이상	<input type="checkbox"/>
점형블록 : 승강기 호출버튼 0.3m 전면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 0.9m 이상	<input type="checkbox"/>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 2cm 이하	<input type="checkbox"/>
감지기식 개폐장치의 감지높이 범위 : 높이 0.3~1.4m 이내	<input type="checkbox"/>
내부 휠체어 이용자용 조작반 : 진입방향 우측면 가로형 설치	<input type="checkbox"/>
가로 조작설비 등의 모든 스위치 높이 : 0.8~1.2m 설치	<input type="checkbox"/>
버튼식(양각)의 조작설비, 층수 등의 점자 표시	<input type="checkbox"/>
비상호출 및 상호통화장치 등의 버튼 설치	<input type="checkbox"/>
노인, 임산부를 위한 승강기 내부에 의자 설치	<input type="checkbox"/>
수평 손잡이 설치 : 높이 0.8~0.9m 이내, 지름 3.2~3.8cm	<input type="checkbox"/>
승강장 :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 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내부 : 도착 층 및 운행상황 표시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승강기 전면 일부에 유리 사용 또는 승강기 내부 CCTV 설치	<input type="checkbox"/>



투시창 설치, 발로 누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후면 관찰용 전면 거울과 시·청각 안내 설치



조작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양각형태의 조작버튼



06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기본지침

- + 에스컬레이터는 상하층의 이동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한 설비이지만,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시각장애인, 보행장애인 등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직이동수단이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 + 휠체어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병행 설치하여 이용자가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디딤판 폭과 끝부분 처리, 손잡이 형태, 이동속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다.
- +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다르게 설치한다.

구조 및 형태

- +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유효폭 1.2m이상은 양측 손잡이를 잡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어린이 동반이나 노인, 휠체어사용자의 승·하강을 고려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또는 1.2m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디딤판의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디딤판의 끝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색상,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1분당 30m 이내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손잡이

- +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m이상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m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손잡이는 움켜잡기에 용이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야 한다.

승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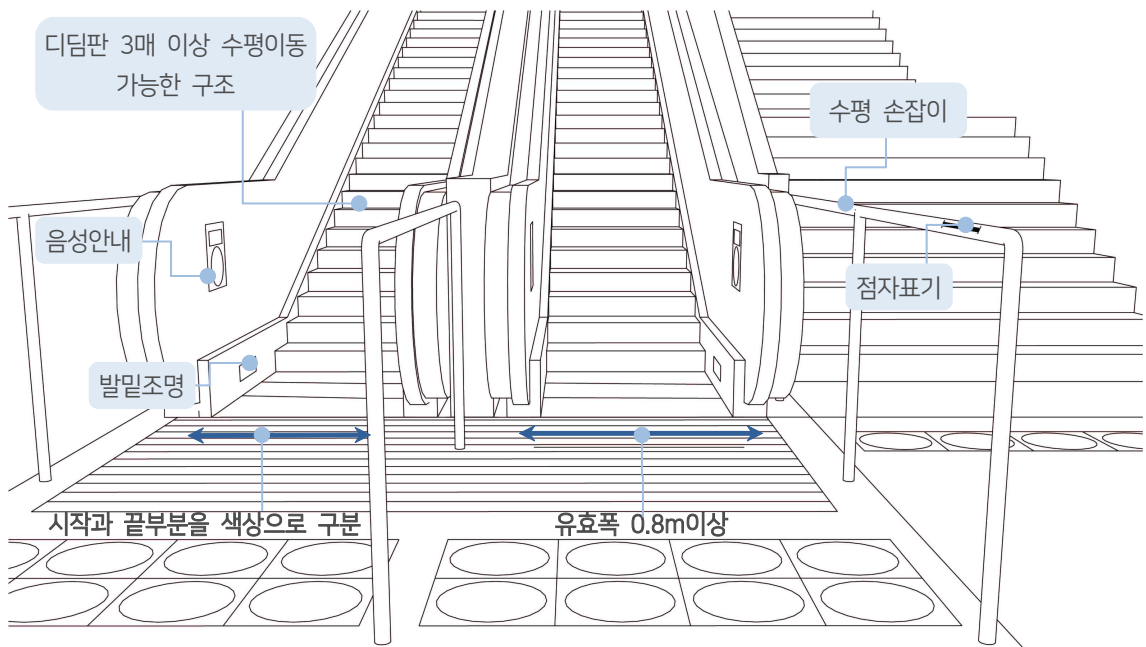
- +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 바닥마감재와 질감, 색상 등의 차이를 두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승강장 전면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안내 및 유도

- + 에스컬레이터 양 끝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진입가능여부를 표시하고 음성안내장치 등의 필요한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

체크리스트

디딤판의 끝부분은 인지하기 쉬운 색상, 재료 등으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의 가까운 곳 진입가능 여부 표시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 장치 설치 및 안내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가까운 거리에 계단과 엘리베이터 설치	<input type="checkbox"/>



07 휠체어 리프트

WHEEL-CHAIR LIFT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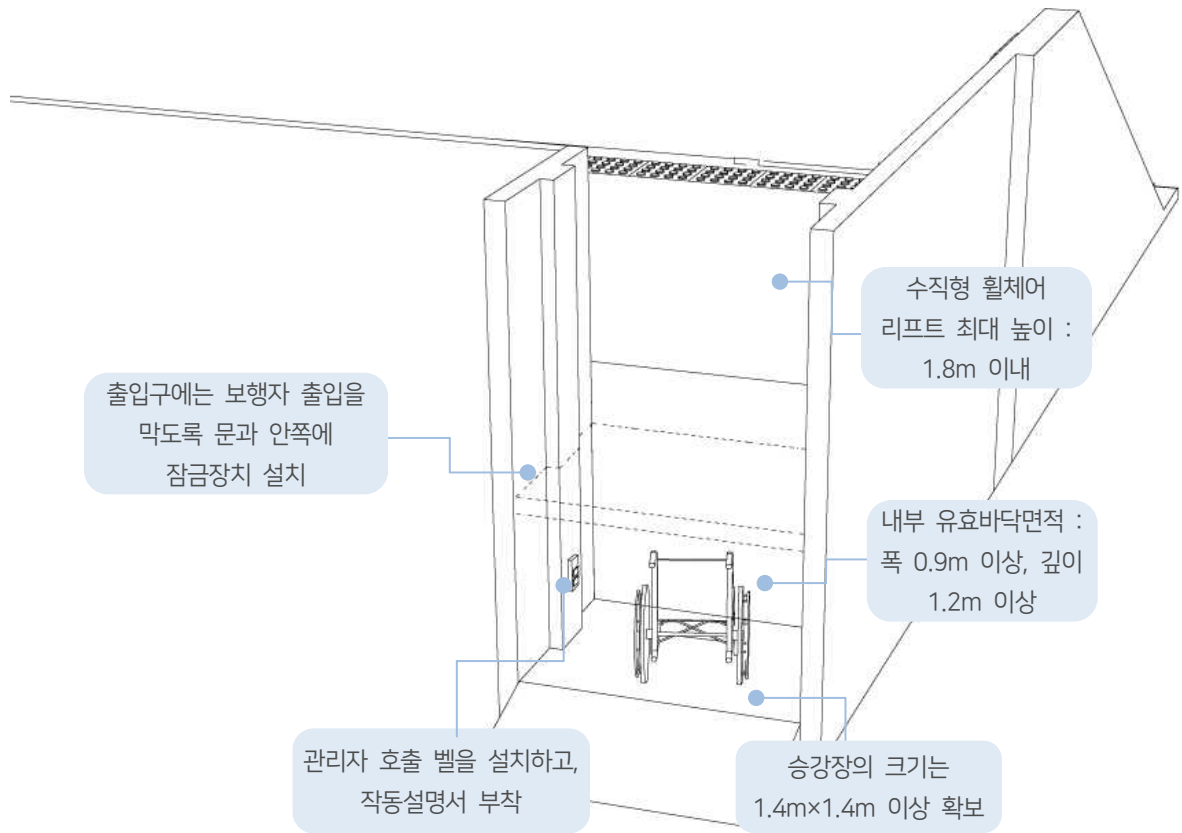
- + 휠체어 리프트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낮은 층고의 건물 또는 개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의 수직 이동을 위해 설치한다.
- + 휠체어 리프트의 위, 아래 출입구에는 보행자가 리프트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문과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최대 높이 1.8m이내에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하지 않는다.

일반사항

- +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승강장을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장의 크기는 리프트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1.5m×1.5m 이상(법적치수 1.4m×1.4m이상)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승강장에는 휠체어 리프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체크리스트

보행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과 안쪽 잠금장치	<input type="checkbox"/>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 최대 높이 1.8m	<input type="checkbox"/>
승강장 크기 : 최소 1.4m×1.4m 이상	<input type="checkbox"/>
시설 관리자 호출 버튼 설치, 작동 설명서 부착	<input type="checkbox"/>
내부 유효 바닥 면적 :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	<input type="checkbox"/>



08 손잡이

HANDRAIL

기본지침

- + 어린이, 노인, 임산부,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조건 및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2단 손잡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 손잡이는 몸의 균형유지 및 추락방지를 위해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 시각장애인에게 손잡이는 현재의 위치, 진행방향,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위치마다 손잡이 상부면에 점자로 정보를 표시한다.

설치

- +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2단 손잡이를 설치한다. 위쪽 손잡이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로 하며, 2단 손잡이의 경우 하단손잡이는 손잡이 직경의 1/2정도를 더하여 상단 손잡이보다 복도 또는 계단 측으로 설치한다.
- + 손잡이와 벽, 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랫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손잡이 형태와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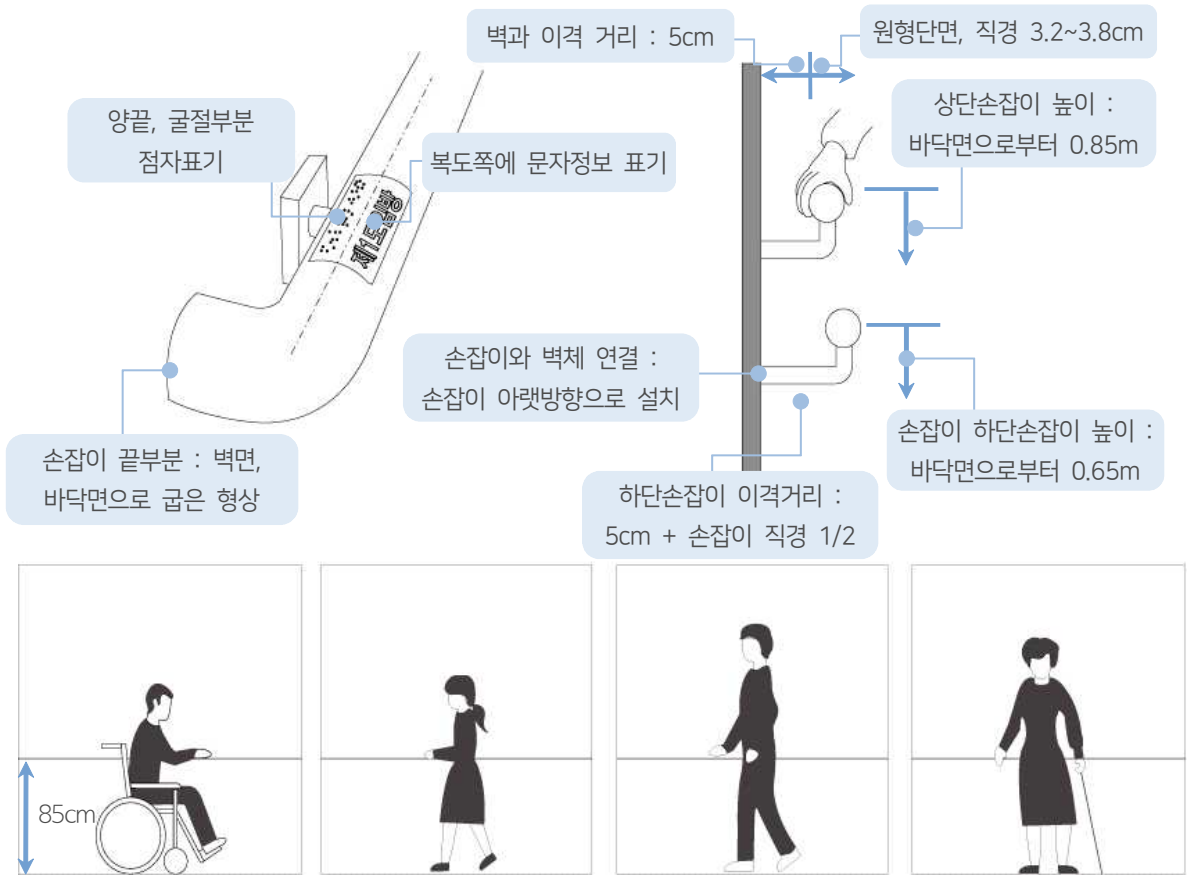
- + 손잡이의 단면 형태는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3.2cm~3.8cm로 한다.
- +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거나, 2단 손잡이는 상하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
- + 손잡이의 재질은 여름과 겨울에도 사용하기 좋도록 차갑거나 미끄러운 금속재료를 지양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로 설치한다.

안내 표시

- + 시각장애인에게 현위치, 진행방향,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안쪽 상부면 권장)해야 하며, 바깥쪽 상부면에는 문자정보를 병기한다.

체크리스트

2단 손잡이 : 위쪽 0.85m, 아래쪽 0.65m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 원형, 직경 3.2~3.8cm, 높이 0.8~0.9m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은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힘	<input type="checkbox"/>
촉감 좋은 재질 사용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손잡이 높이】

01

화장실_공간

TOILET_SPACE

공공건축물 (서비스공간)

기본지침

- +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며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동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람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하 G화장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 다목적화장실은 각 층별로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가급적 외손잡이, 오른손잡이, 편마비 등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위치에 서로 다른 2개소 설치를 권장한다.
- + 각 층마다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일반화장실내에 일반 대변기 단위부스 중 하나를 장애인용 부스로 설치한다.
- + 일반화장실에 영유아 동반자나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며,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남녀화장실에 각각 1개이상 설치한다.
- + 폭이나 천정고는 가급적 넓고 높게 하여 폐쇄감을 없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생리, 위생 이외의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될 수 있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조건으로 방법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 배수가 용이하며 항상 청결하고 보행에 안전한 화장실 바닥을 유지해야 한다.
- +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고 원활한 공기순환과 밝기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해야 한다.

접근통로

- +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화장실의 접근 유효폭은 단차가 없는 1.5m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F]
- + 기존 건축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18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BF]
- + 화장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도록 권장한다.

출입문

- + 남녀화장실을 완전 분리시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위치나 방향 등을 결정한다.
- + 화장실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거나 자동문을 설치한다.[BF]
- + 화장실 내·외부 상호간은 물론, 출입문으로 인해 문턱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BF]
- +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1.2m이상(법적치수 0.9m이상)을 확보한다.[BF]

- + 출입문 전면에 문의 개폐와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및 회전에 필요한 1.5m×1.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바닥마감

- + 화장실의 출입구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바닥마감재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 청결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선정하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으로 한다.
- +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에는 0.5m이하의 줄눈으로 길러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BF]
- + 화장실의 물청소 등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는 1/100이하로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한다.
- +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는 오염이 강하고 자국, 흠집이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미끄러운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화장실부스

대변기 부스

- +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을 확보한다.
- + 대변기부스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대변기부스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이상을 확보하며, 여닫이문일 경우 개폐 방향은 통로가 아닌 대변기부스 안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 + 부득이하게 다목적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대변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 + 잠금 장치는 견고하면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대변기부스에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잡고 일어나기 쉽도록 수평 및 수직 손잡이의 설치를 권장한다.
- + 대변기부스 내에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이나 옷 등을 걸 수 있는 고리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 단위부스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6~8cm 정도의 틈새를 확보하여,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 + 단위부스 높이는 2.0cm 정도로 하며, 상부는 환기를 고려하여 개방된 구조로 한다.
- + 대변기는 가급적 양변기로 하며, 비대기능과 자동세정장치 등이 있는 좌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 수 와 소변기를 합친 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

- + 일반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대변기부스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와 출입문의 유효폭 0.9m이상으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대변기부스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 되도록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고정식 수평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 + 출입문 형태는 가급적 미닫이문이나 접이문을 권장하며, 여닫이문을 설치할 경우 부스 내부에 휠체어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며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대변기의 양옆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6~0.7m의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며, 한쪽에는 고정식, 다른쪽에는 회전식으로 하며, 손잡이 간격은 0.7m 내외로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회전식 수평손잡이는 접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 한다.
- + 대변기 한쪽 옆에는 길이 0.9m이상의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며,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안내표시

- +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턱, 바닥, 천장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 화장실, 다목적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 +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표지, 음성유도장치 등을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건물 내 특히 승강기 내부 등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한다.

안전 및 범죄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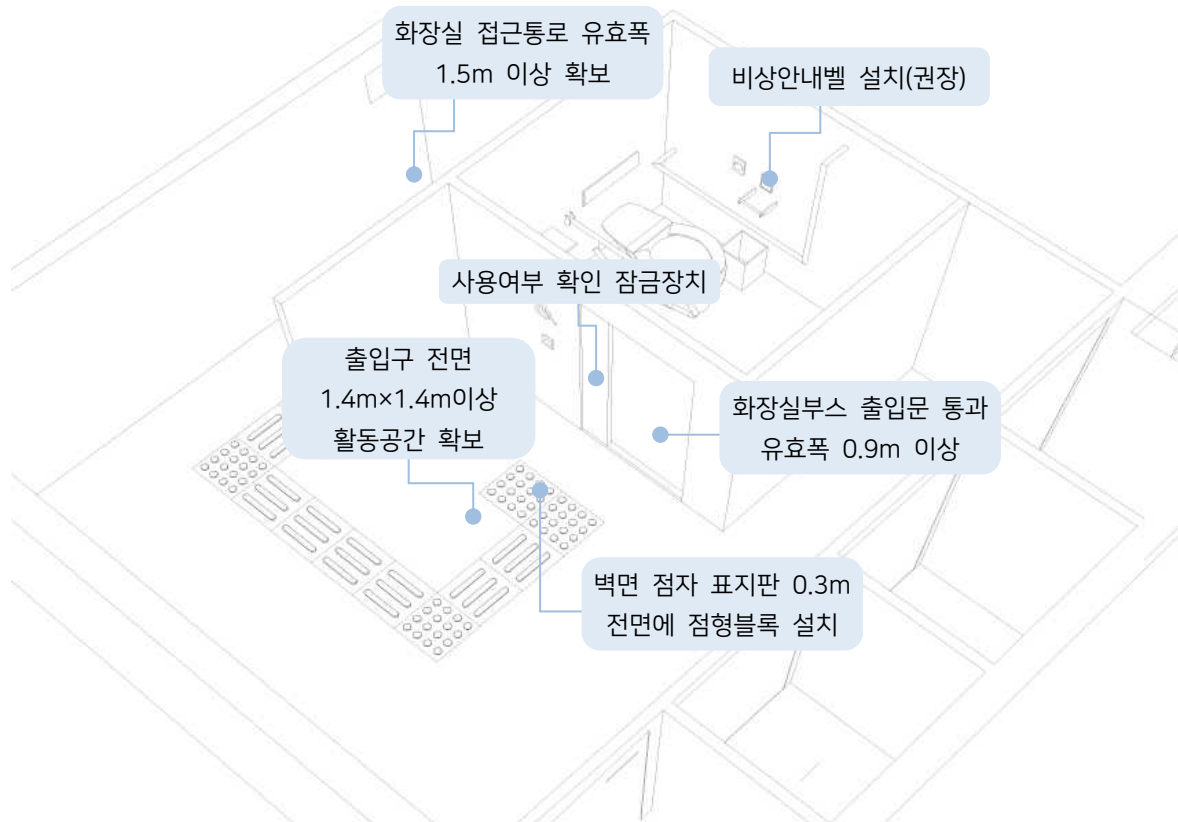
- +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안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안심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에 적색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울려 위급 상황임을 알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 + 안심비상벨의 설치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 비상벨은 다목적화장실, 세면대 주변, 대변기 부스마다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설치한다.
- + 비상벨에 대한 설명 및 작동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한다.
- + 비상벨 경광등 수신기는 화장실 입구에 설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광등 사이렌 소리가 날 때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
- + 필요에 따라 화장실 입구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를 고려한다.
- + 비콘(블루투스 송수신)과 스마트 폰을 활용, 안심존을 형성하여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 전원버튼을 누르거나 흔들게 되면, 자신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 및 112로 전송하는 서비스 등을 활용한다.

체크리스트

대변기부스(장애인용) 유효바닥 : 폭 1.6m, 깊이 2.0m 이상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바닥면 문턱, 단차 없음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접근통로 유효폭 : 1.5m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 전면 1.4m×1.4m 이상 활동공간	<input type="checkbox"/>
바닥표면 :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 마감	<input type="checkbox"/>

체크리스트

파일, 판석 마감 : 0.5cm 이하 줄눈	<input type="checkbox"/>
대변기 부스 손잡이 : 수직 또는 수평(권장)	<input type="checkbox"/>
남·녀 구별 점자 표지판 : 출입구 옆 벽면 1.5m 설치	<input type="checkbox"/>
점형블록 : 벽면 점자 표지판 0.3m 전면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안내 : 픽토그램, 음성유도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대변기부스 내에 선반이나 고리 설치	<input type="checkbox"/>



02 화장실_설비

TOILET_FACILITIES

대변기

- + 대변기는 비데 기능이 있는 양변기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화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며,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대변기의 좌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범위내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성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남녀공용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등편의법]
- + 세정장치와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 + 화장실 내에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BF]
-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손, 팔꿈치 등으로도 작동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점자표기를 병기하고 자동세정장치는 작동안 내표시를 해야 한다.

대변기용 손잡이

- +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수직손잡이는 안쪽에만 설치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회전식 손잡이는 접어 올리는 구조가 좋으며, 좌우로 접히는 경우 변기 바깥쪽으로 접히도록 한다.

-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0.7m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다른 쪽 손잡이 0.6m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며, 손잡이 간격은 0.7m이내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0.9m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소변기

-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한 소변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후면에는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이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로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세면대

- + 세면대는 목발사용자 등을 위해 출입구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 세면대 수는 단위부스 2개당 1개의 비율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이상으로 하며, 세면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높이가 낮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한다.
- + 세면대는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냉·온수의 구분을 색상과 함께 점자를 병기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세면대의 거울은 어린이, 키가 큰 사람,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배려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세면대 상단부터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내로 설치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거울 상단부분을 15°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여자 화장실의 세면대는 파우더 룸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파우더 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 세면대는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을 설치한다.
- + 수전은 겨울철을 고려하여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해 높이가 낮은 핸드드라이어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세면대 주변에 핸드드라이어와 종이타올을 설치한다.

+ 세면대에는 선반, 외투걸이, 우산걸이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영유아동반자가 많은 건축물의 경우 세면대 주변에는 영유아거치대 설치를 고려한다.

영유아 설비

- +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어린이용 화장실은 부모의 동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밝고 청결하며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색채계획이나 마감재 등을 선정한다.
- + 어린이용 화장실이나 어린이용 설비는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어린이용 대변기 및 소변기, 어린이의 키 높이를 고려한 세면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 어린이의 사용을 고려하여 핸드드라이어는 손의 직하투입형 등 설치 높이나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 어린이용 대변기는 어린이전용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일반 양변기와 겸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 좌대를 설치해야 한다.
-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 +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 +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

- + 일반화장실 내에 세면대 주변이나 영유아거치대가 있는 대변기 부스를 1개소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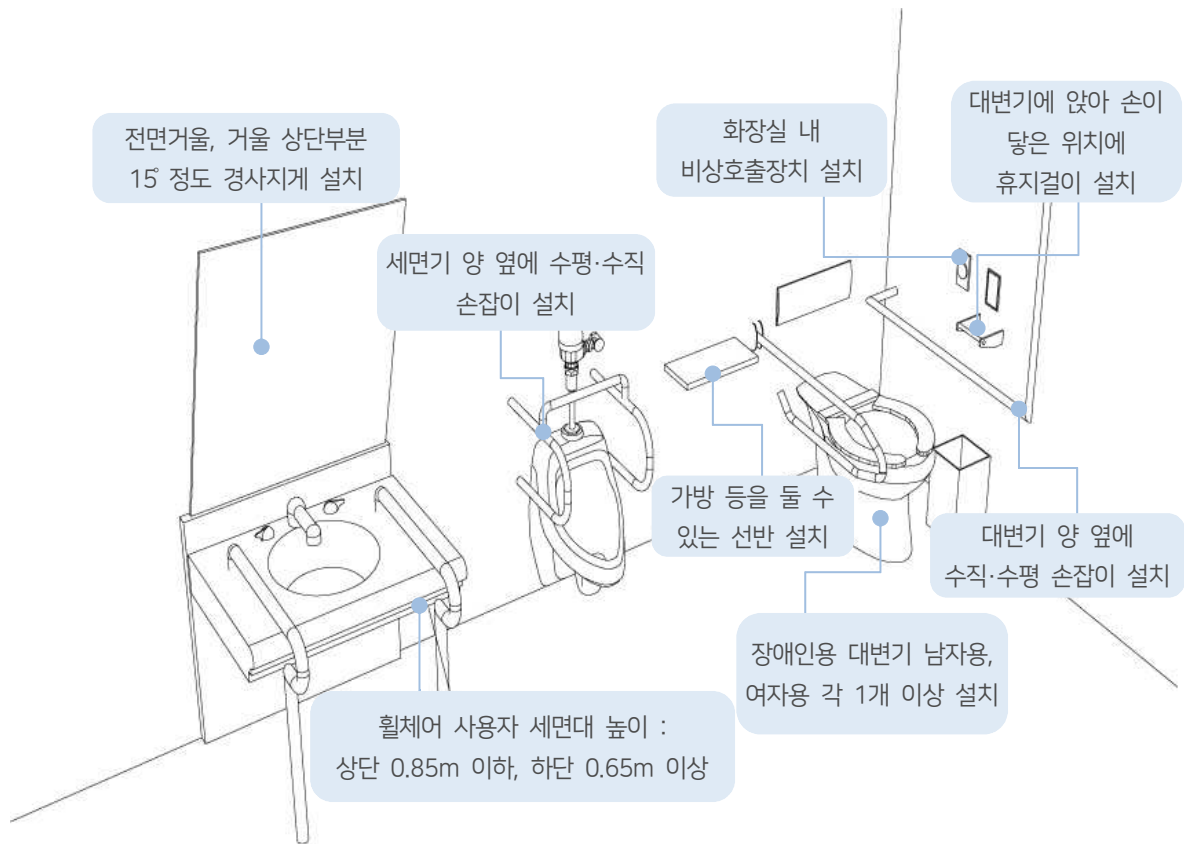
다목적화장실

- + 다목적 화장실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
- +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등 다양한 신체 상황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위생 및 편의 설비의 위치가 서로 다른 2개소의 다목적화장실을 설치한다.
- + 다목적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적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문자형 시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BF]
- +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동반자를 위해 기저귀교환대, 임산부나 노인을 위한 간이침대, 내부장애인을 위한 오스트메이트 등 필요한 설비나 가구를 비치한다.
- + 다목적화장실로 연결되는 통로와 출입구의 유효 폭은 0.9m 이상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기존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적정 유효바닥면적 기준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 + 다목적 화장실의 출입문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가급적 자동문을 권장한다.

- +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장실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 다목적 화장실 출입문의 전면공간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폭 1.5m 이상을 확보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BF]
- + 대변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대변기 측면에는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에는 사용을 삼가라는 안내표시를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장애인 전용 대변기 : 남성·여성용 각 1개 이상 설치	<input type="checkbox"/>
대변기 좌대 높이 : 0.4~0.45m 이내	<input type="checkbox"/>
세정장치 : 광 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input type="checkbox"/>
대변기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휴지걸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내 비상호출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대변기 양옆 : 수직 및 수평 손잡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 남녀화장실 설치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사용자 세면대 높이 : 상단 0.85m 이하, 하단 0.65m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면 거울, 거울 상단부분 15°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설치	<input type="checkbox"/>
세면대 양 옆에 수평 손잡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수도꼭지 : 누름 버튼식, 레버식, 광 감지식	<input type="checkbox"/>
출입구에 다목적화장실 설치	<input type="checkbox"/>
다목적화장실 유효바닥면적 : 폭 2.0m, 깊이 2.1m 이상	<input type="checkbox"/>
다목적화장실 출입문 통과유효폭 : 0.9m 이상, 자동문 설치	<input type="checkbox"/>
다목적 화장실 : 대변기 전면에 1.4m×1.4m 활동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03 수유실

FEEDING ROOM

기본지침

- +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유모차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수유나 기저귀를 갈아 줄 수 있고, 임산부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배려한다.
-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수유실 등은 남녀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모유를 주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한다.
-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기저귀교환대, 임산부나 노인을 위한 간이침대 등 필요한 설비나 가구를 설치한다.
- +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임산부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배려한다.

접근

- +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은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 수유실로 접근하는 통로의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1.5m 이상을 확보한다.[BF]
- + 접근로에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통로가 되도록 한다.[BF]
- + 휠체어나 유모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으로 하거나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 통로나 로비 등에서 수유실 내부의 직접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계획에 유의한다.
- + 출입문의 유효폭은 유모차나 휠체어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0.9m 이상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구조

- +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는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단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수유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수유실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유를 주는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독립된 실 또는 커튼 등을 설치한다.
- +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장애인등편의법]

편의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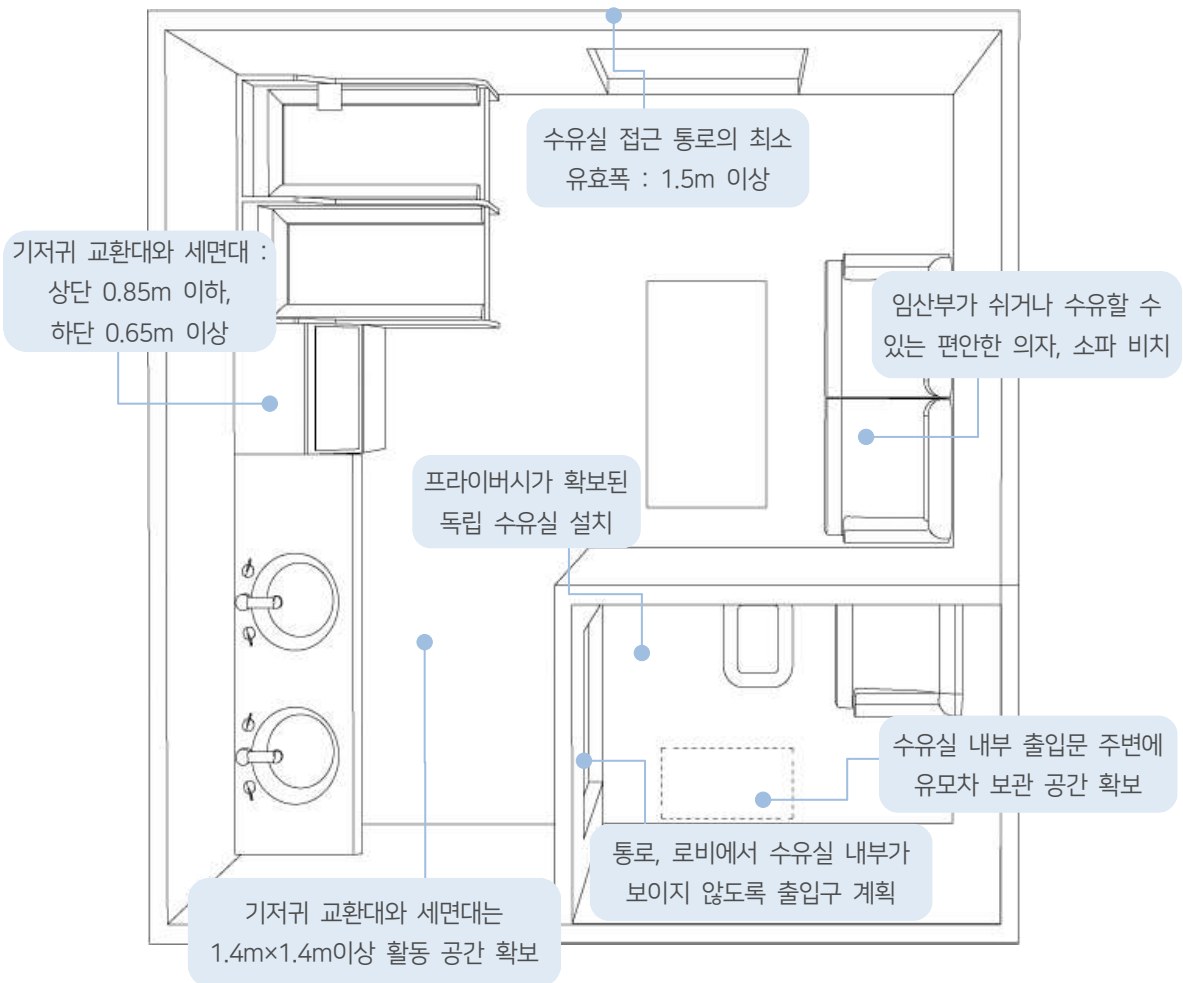
- + 수유실에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순간온수기, 전기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분유통 소독이 가능한 설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개수대, 기저귀전용 휴지통 등을 비치한다.
- +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영유아 거치대 등을 설치하며, 주변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BF]

체크리스트

수유실 접근 통로 유효폭 : 최소 1.5m이상	<input type="checkbox"/>
접근로 : 단차나 기울기가 없는 평탄한 통로	<input type="checkbox"/>
출입구는 통로, 로비에서 수유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계획	<input type="checkbox"/>

출입문 유효폭 : 0.9m 이상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이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 상단 0.85m 이하, 하단 0.65m 이상 높이	<input type="checkbox"/>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 보관 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수유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휴게공간 마련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 1.4m×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교환대 주변에 선반이나 옷걸이 등 설치	<input type="checkbox"/>
임산부가 쉬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 소파 등 비치	<input type="checkbox"/>



04 접수·안내데스크

RECEPTION DESK

기본지침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주출입문에 잘 보이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하여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 주출입문에서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까지 접근 경로에는 단차 없이 수평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안내표시를 제공한다.
-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음성 및 문자호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 관공서 등 공공시설의 각종 안내는 반드시 음성 안내와 문자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구조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서서 이용하는 이용자 및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상단까지의 높이는 0.7m~0.9m이내로 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는 휠체어의 무릎과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접수대의 경우 전후면 모두 하부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눈높이가 동일하게 되는 구조를 권장한다.
- + 시설용도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이 의자에 앉아 기록 작업을 할 수 있는 높이 0.8m정도의 선반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팡이, 우산을 걸 수 있는 홈이나 걸이대, 가방이나 짐 등을 잠시 둘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한다.



휠체어 사용자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민원데스크



시각장애이용 점자와 이어폰 설치

유도 및 안내

-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필기구를 비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설비, 난청인을 위한 진동호출기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BF]
- + 음성안내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하여 문자안내를 병행한다.[장애인등 편의법]
- +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음향유도장치와 음성 유도장치를 동시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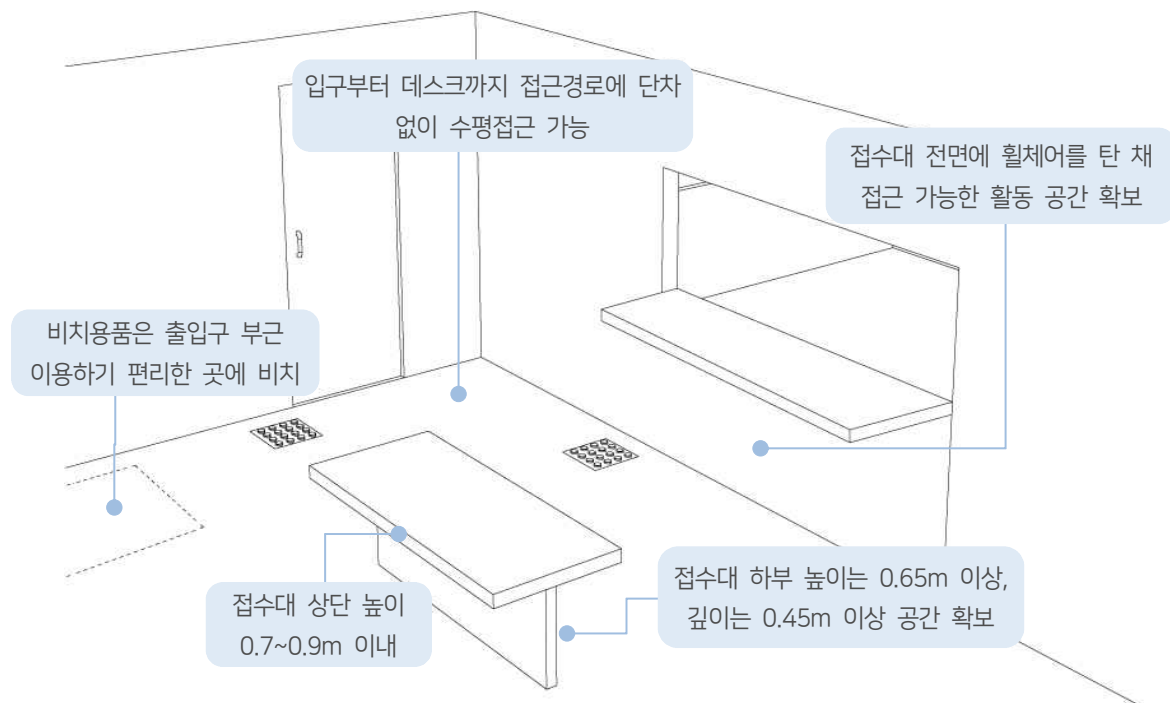
+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사인과 문자안내를 제공한다.

비치용품

+ 비치용품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 편의법]

체크리스트

접수대 상단 : 높이 0.7~0.9m 이내	<input type="checkbox"/>
접수대 하부 :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접수대 전면 : 휠체어를 탄 채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접수대 : 전후면 모두 하부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입구부터 데스크까지 접근경로에 단차 없이 수평접근 가능	<input type="checkbox"/>
전광판 등을 이용한 문자안내 표시(권장)	<input type="checkbox"/>
비치용품 : 출입구 부근 이용 편리한 곳에 비치	<input type="checkbox"/>



05 안내표시

WAYFINDING SIGN

기본지침

- + 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목적지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유도 및 안내표지판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 시설을 안내하는 주요 사인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영어 우선)병기나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는 물론 청각,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문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안내 등이 효과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 +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주요 안내표지들은 주출입구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한다.
- + 안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BF]

안내판의 형태

- + 주변색과 조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은 것이 좋다.
- + 휠체어 사용자 또한 쉽게 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높이 1~1.2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BF]
- + 조명장치를 갖춘 안내표시는 명도의 차이를 크게 하여 노인, 약시자 등과 청각장애인의 인지가 쉽도록 하는 것이 좋다.[BF]

표시방법

- +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음성안내, 점자안내, 촉지도 안내 등이 있다.[장애인등편의법]
- + 청각장애인에게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전광게시판, 문자정보 모니터, 레이저 스크린 등이 있다.
- + 장애인 심볼의 ISO, KS규격을 사용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안내판의 문자, 기호, 그림 등은 주변색과 대비를 크게하여 인지가 쉽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F]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표시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1.2m 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장애인등편의법]

음성안내장치

-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무선규격 표준(KICS.KO-06.0046/R2)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정보통신표준_2009]

- + 시각장애이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BF]

비상경보장치

-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 + 청각장애인에겐 음향경보장치가 효용이 없으므로 경광등이나 비상구 유도등의 점멸장치를 반드시 병행설치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유도안내

[건물의 접근]

- + 도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인적대응이 가능한 접수처까지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 + 촉지안내도는 건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때 설치한다.

[승강기 앞 로비]

- + 승강기 조작 버튼 앞에는 30cm정도의 간격을 두고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 승강기 앞 로비에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버튼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계단, 경사로]

- + 계단 및 경사로 아래 위 끝부분 경계로부터 30cm정도 간격을 두고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 건물에는 승강기 및 계단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계단, 경사로까지의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복도, 통로]

- + 건물의 복도, 통로 등에 유도블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블록 또는 연속하는 손잡이를 설치하여 경로를 안내한다.

- + 손잡이를 설치해 건물 내 경로를 유도하는 경우, 촉지안내도 설치장소 또는 장소를 안내하기 위한 손잡이에 점자표시를 하고, 바닥에 주의환기용의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화장실]

- + 화장실 입구에는 그림이나 글씨를 이용하여 만져서도 알 수 있는 사인을 설치한다.
- + 화장실의 위치나 촉지안내도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손잡이에 점자표시를 하거나 바닥에 좁은폭의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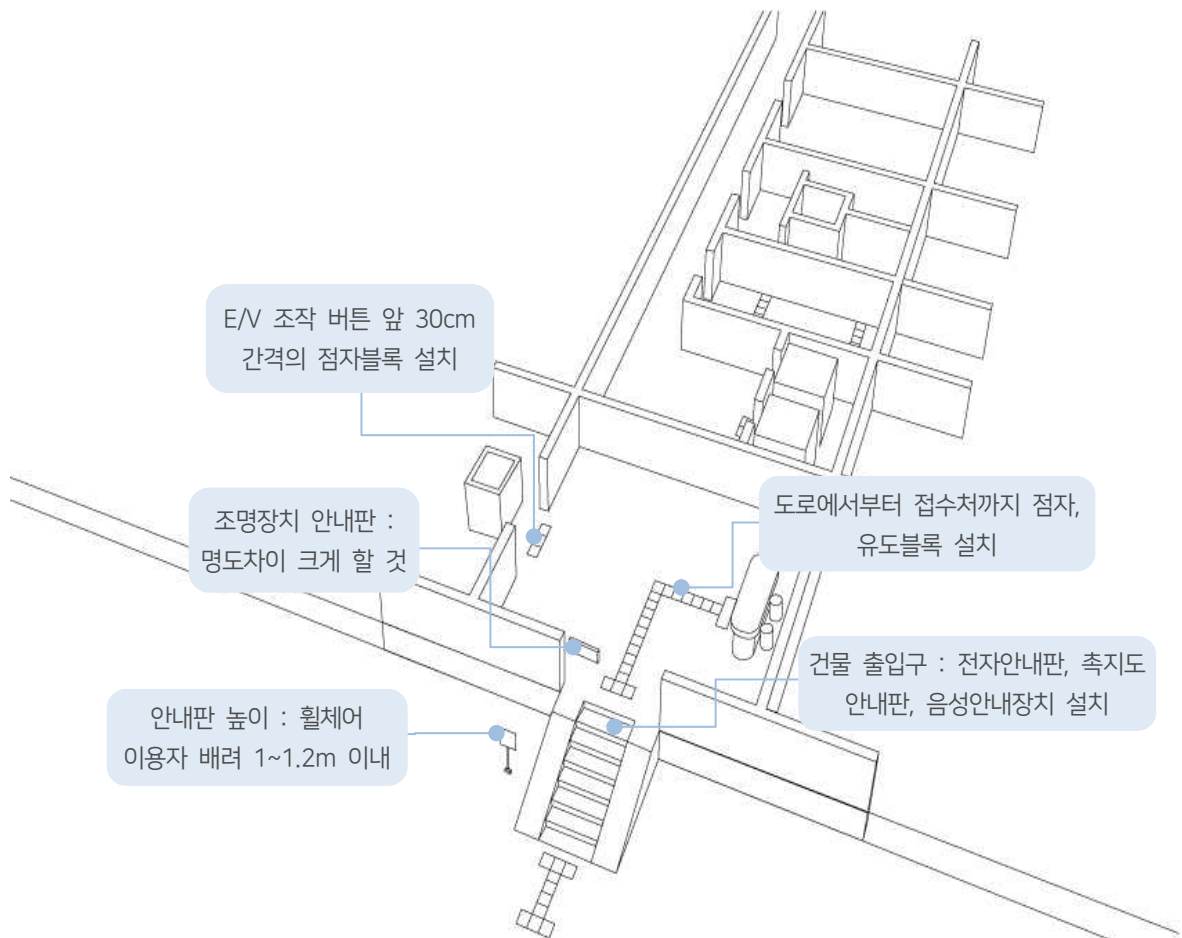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표지판



바닥에 색띠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

체크리스트

건물 출입구 : 전자안내판, 촉지도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높이 : 휠체어 이용자 배려 1~1.2m 이내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심볼 : KS 규격 사용	<input type="checkbox"/>
점자·촉지도 안내판 : 높이 1~1.2m	<input type="checkbox"/>
조명장치 안내판 : 명도차이 크게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 : E/V 조작버튼 앞 30cm 간격	<input type="checkbox"/>
도로에서부터 접수처까지 점자, 유도블록 설치	<input type="checkbox"/>
계단, 경사로 끝 경계 : 30cm간격 점자블록 설치	<input type="checkbox"/>



06

지하주차장

UNDERGROUND PARKING

기본지침

- + 지하주차장은 차량으로부터 타고 내리는 이용자들에게 건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 + 모든 차량 이용자들이 차량 주차 장소에서 건물의 입구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하주차장의 승강기는 건물의 모든 층으로 연결되게 한다. 건물의 1층 또는 다른 층을 거쳐 다른 승강기로 옮겨 타지 않도록 한다.
- + 장애인용 주차공간, 건물 출입구, 승강기 입구, 계단 입구, 비상구, 주차비 정산기 등의 주요 지점에 이를 알리는 사인을 설치한다. 이들 사인에는 내부 조명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조명

- +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이용자에게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예방 시설로, 주차장의 모든 영역에 일정 조도 이상으로 조명이 유지되는 것을 권장한다.
- + 주차장 출입구에는 최소 300 Lx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 + 지하주차장 구획과 차로는 최소 10 Lx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 + 차량 이용자들의 보행통로에는 최소 50Lx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 + 주차장 공간내의 조도 차이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어두운 공간이 더욱 어둡게 보이게 하여 범죄 가능성을 높임으로, 조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 + 지하주차장 공간을 직접 비추는 것보다 벽면을 비추는 것이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안전 및 보안시설

- + 차량운전자와 이용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 사각지대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폐쇄카메라(CCTV)를 설치한다.
- + 조명에 의한 그림자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한다.
- + 보행자 이동 동선에 긴급 호출벨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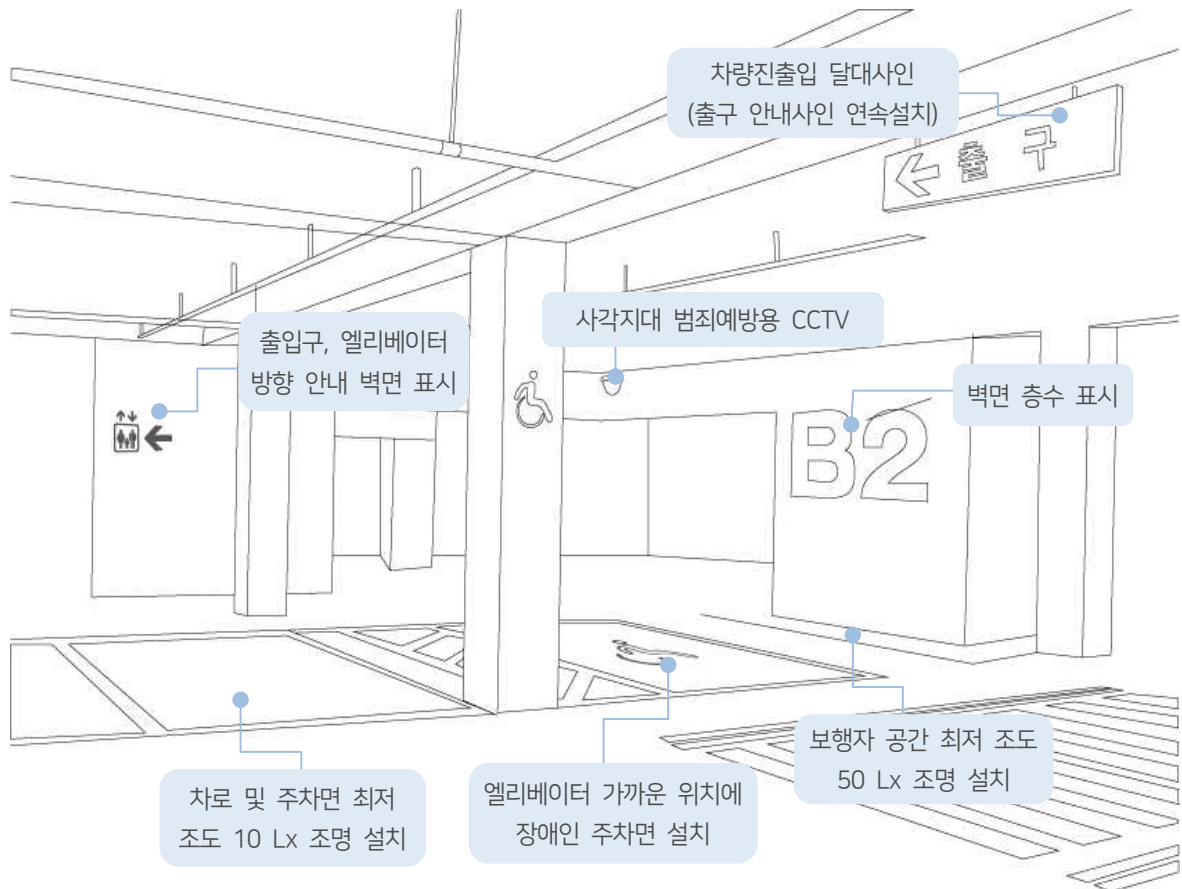
안내사인

- + 지하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현 위치, 방향, 이용정보를 알려주는 사인들은 잘 보이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잘 읽히는 사인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위치와 방향 인지를 도울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환경에 자신감과 안전감을 제공한다.
- + 지하주차장의 여러 층일 경우, 층별로 벽면에 다른 색상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이 주차한 위치를 쉽게 인지 및 기억하게 한다.
- +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안내사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층별 표시,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으로 방향 표시 등의 주요 안내에 벽면을 활용하도록 한다.
- + 보행자 동선에 주차장 관리 주체, 비상시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 + 각각의 주차면을 층과 주차면의 번호 등을 표시한다.

- + 차량의 진출입을 표시하는 달대 사인은 출구 방향을 우선으로 표시하고, 출구까지 방향 사인이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 + 주차장 입구에 현재 주차가 가능한 주차면의 표시를 권장한다.
- + 지하주차장 내의 보행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차량 진출입시 경고등의 점멸과 경고음의 울림을 권장한다.

체크리스트

건물 출입구까지 안전한 보행로 확보	<input type="checkbox"/>
건물 모든 층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용 주차면 설치	<input type="checkbox"/>
벽면에 눈에 잘 띄는 층별 표시	<input type="checkbox"/>
복층 지하주차장 : 층별 벽면 다른 색상으로 적용	<input type="checkbox"/>
주차장 입구 : 주차가능 면수 표시	<input type="checkbox"/>
차량 진출입 방향 표시의 달대 사인 (출구 사인 연속 설치)	<input type="checkbox"/>
차량 진출입시 경고등과 경고음	<input type="checkbox"/>
보행로 주변 조명 : 최저 조도 50 Lx	<input type="checkbox"/>
주차장 조명 : 최저 10 Lx, 벽면 이용	<input type="checkbox"/>
사각지대 및 범죄위험 지역 CCTV 설치	<input type="checkbox"/>



5. 공공정보매체

개 요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정보매체를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용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

적용대상

-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정보매체 영역에 해당되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정보로 분류함

기본방향

- 안전성 : 재해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누구에게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정보매체로 계획
- 편리성 : 개개의 공공정보매체는 목적별, 장소별로 체계적이고 통일감을 주어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성 확보
- 선택성 : 다양한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수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시각, 촉각, 청각 등 사람의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배려
- 환경성 : 빛, 바람, 소리, 향기 등 자연적인 요소나 건물내에 천정높이를 달리하는 등 친환경적인 수법이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 쾌적성 : 많은 정보가 범람하지 않도록 통일감 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쾌적함을 주도록 계획
- 심미성 : 색상, 재질, 형태 등 주변 도시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며,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단순하며 기능을 중시하는 디자인으로 계획

01 시각정보

VISUAL INFORMATION

공공정보매체

기본지침

- + 시각정보사인은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 + 시각기능이 저하된 노인이나 약시자를 위해 사인본체의 색채나 설치장소의 조명 등 배려한다.
- + 일상적인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치된 시각정보사인은 비상시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성, 확실성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배려한다.
- + IT기술을 이용한 정보전달장치는 급속하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고 향후 시스템 갱신에 대한 대응이나 다른 사인과의 연휴를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

설치방법

- + 원거리에서 보는 안내사인의 설치간격은 직선부에서는 30~40cm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최소 6m이상으로 한다.
- + 원거리에서 보는 매단형 또는 돌출형 안내사인은 20m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 근거리에서 보는 자립형이나 벽 부착형 안내사인은 4~5m정도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 원거리에서 보는 매단형 또는 돌출형 안내사인은 바닥에서 하단까지 2.0m이상의 높이를 하여 충돌방지 등 안전에 배려해야 한다.
- + 근거리에서 보는 벽 부착형 안내사인은 바닥에서 상단까지 2.0m정도의 높이로 하여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 등을 배려한다.
- + 돌출형 안내사인은 개구부와 안내사인의 상단을 맞추고, 위치는 진행방향의 안쪽을 설치하는 것이 인식하기에 좋다.

유도안내기준

- +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해야 한다.
- +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m이상으로 해야 한다.
- + 시각장애이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이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해야 한다.
- +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며, 사용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자

- + 글자의 색은 배경색과 차이가 많이 나게 하여 가독성이 높도록 한다.
- + 원거리에서 보는 문자는 고딕계의 굵은 서체를 사용하며, 근거리에서 보는 문자는 약간 얇은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표지판의 글자크기는 표지판의 크기, 색상, 시인거리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한다.
- + 숫자는 비슷한 영문자 등과의 오해가 없는 서체를 사용한다.

[다국어 표기]

- + 다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서체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도로에서 차량유도를 위한 안내표시는 한글과 영어의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 +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시는 한글과 영어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며, 일본어, 중국어 등의 표기를 권장한다.

- + 가까운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의 한글, 영문 등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장애인 심볼은 ISO, KS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기 타]

- + 조명이나 태양광에 반사되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보물의 재질은 빛 반사가 없는 재질로 선택한다.

픽토그램

- + 눈에 잘 띄고 연령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 복수의 픽토그램을 병행 표기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배경크기를 같은 치수로 한다.

색상

- + 색상차이로 위험, 경고, 시설이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색상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 + 색각 이상자를 배려하여 색만으로 시설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적절한 픽토그램과 글자를 함께 설치한다.
- + 도표에서 색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색으로 버스노선도 등을 표현할 경우에는 패턴 등도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공공안내 픽토그램 사례 예시

02 촉각·청각·후각 정보

TOUCH·HEARING·SMELL
INFORMATION

기본지침

- + 사람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약 80%는 시각에 의하지만, 시각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각정보 이외의 정보전달체계가 필요하다.
- + IT기술을 이용한 정보전달장치는 급속하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고 향후 시스템 갱신에 대한 대응이나 다른 사인과 연휴를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
- + 보행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한다.
- + 보행로나 도로의 중요위치에 교통상황이나 생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
- +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시설 또는 정보전달시스템을 고안·운영한다.
- + 적정위치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판이나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및 조정시설 등을 제공한다.
- + 안내판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 + 안내판은 보행자가 보행로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적당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 + 안내판은 명료하고 통일감이 있으며 미적 감각을 가지도록 디자인한다.
- + 보행우선구역 안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m이내의 주요시설물, 1.5km이내의 여객시설 그밖에 순천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 +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 한다.
-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 1~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화장실 등의 한정된 공간을 인지하기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안내표지판

- +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보행우선구역 안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교통약자법]
- +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 +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교통약자법]

입식표지판

- +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접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음성안내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 + 방향이나 서비스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장소에서는 적절한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음악이나 물소리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인지시키는 경우에는 복수의 음 정보가 범람하여 시각장애자가 혼란해하지 않도록 음량, 음질 또는 방향성에 배려한다.

유도신호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고, 특수신호 장치를 설치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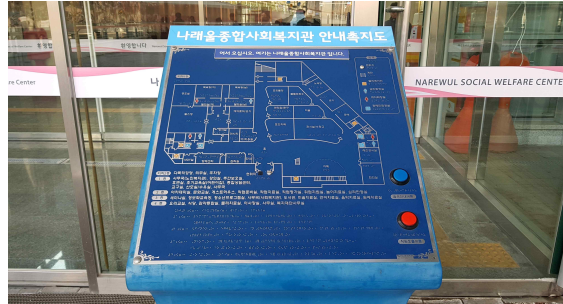
후각정보

- +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등에 향기가 있는 꽃을 두거나 층별로 서로 다른 향기를 내도록 하는 등 후각에 의한 정보제공을 고려한다.

경고 및 피난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 + 시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촉지도식 점자안내판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무인발급기



무인 발급기의 점자안내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적용방안

0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02 장천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위 치 : 시민로(L=350m, B=12m)

- 시민로는 순천시 구도심의 중심상권을 관통하는 보행자 도로와 자동차 일방통행로가 혼용되어 운용되고 있는 구간임
- 보행로 정비시점이 10여년을 경과하였으며, 보행자통행량(보행자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적지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현황 및 문제점

-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지 10여년이 지나 타일 포장 등은 훼손이 심하며, 보행로와 차도의 단차로 인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통행이 불편함
- 보도와 상가 출입구의 단차가 발생하여 휠체어를 이용한 상가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 과거 순천의 중심상권으로서의 지역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이 요구됨



목 적

-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기본계획(안)

- 도로상 각종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요인 제거, 안전시설 보완, 도로면 정비(단차·재질·색상 개선 등), 장애물 구역 녹지대 조성, 보행로와 접해있는 주변 상가 진입공간 개선, 파고라·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가로등 교체, 열린 화장실 조성 등 사업 구간 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각종 시설 개선 사업포함
- 시설 정비된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적용 전

적용 후(안)



2. 장천(순천)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위 치 : 팔마로 장천신촌길에 위치

- 장천지하차도는 순천버스터미널과 아랫장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로로 경전선에 의해 단절되어 있음



[장천(순천)지하차도 위치도]

현황 및 문제점

- 장천지하차도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지하차도 양옆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단차가 심한 곳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임
- 심한 단차에 의해 경사로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계단 옆에 일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은 불가능함
- 특히, 2일과 7일 열리는 순천시의 대표 재래시장인 아랫장을 찾는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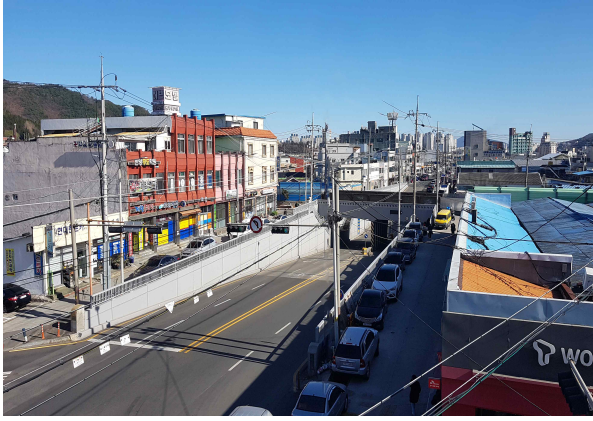
목 적

- 순천시 관문인 터미널앞에 설치된 지하보도 개선사업을 통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
- 정원 도시 이미지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경관개선 및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기본계획(안)

- 현재 지하보도는 도로의 구조상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임
- 따라서, 지하보도 보다는 경전선의 철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경전선 철길 위로 조성하여 새로운 보도 조성
- 순천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장천지하차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순천형 하이라인파크 (공중정원) 개념을 도입한 공중 경사로 조성
- 정원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 시설 정비된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적용 전



적용 후(안)



장천지하차도 예시 이미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0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안

02 활성화 방안

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안

법제화 방안

법제화의 필요성

- 현재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순천시 경관조례’,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건축조례’, ‘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적용가능한 공간과 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과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에 다양한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시행하고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근거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유니버설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 할 수 있는 의식 계몽부터 각종 시설물, 그리고 정보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 완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함
 -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정착하게 위해 법적이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UD의 원활한 적용 유도
 - 법적인 틀 안에서 제정된 조례는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포함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례의 구성 체계

- (가칭)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실행원칙,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추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조례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부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규칙화 할 필요가 있음

추진체계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은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위원,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복지단체 등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추진을 위한 제정안을 작성하고,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예고
- TF팀에서는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 수립·개정에 관한사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의 디자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
-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및 순천시의 관련단체를 추진위원회에 참여시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시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하여, 순천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설치물을 말한다.

제3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 :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2. 주차장 : 주차구역, 주차면적
3. 도로 및 교통시설 : 도로(보도폭, 포장,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기타시설), 보행시설물(교차로, 도로형태, 차도폭,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저상버스(편의시설)
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유도 및 안내설비, 매표소 또는 음료대, 휴게시설
5.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6. 그 밖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시민이 손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한다.
4.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순천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건축, 도시, 교통, 공원 등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가이드라인 등의 수립 및 적용)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말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을 제외한 가이드라인의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순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기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④ 시 또는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시 및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수립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9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의1(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사업 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 ①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 ②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 ③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사업)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양성
4.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개최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원) 시장은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사회복지·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 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책 및 사업방안

중점 정책

-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공무원·시민 인식전환,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구축,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3가지 중점 정책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공무원·시민 인식전환 방안

- 순천시민, 행정관계자, 사업자 및 관련단체의 역할 도모
 - 순천시민, 행정관계, 사업자 및 관련단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인식전환
 - 순천시민이 유니버설디자인 활동 추진시 인적, 기술적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보급·활동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진체계 확립
 -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 검증까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비, 보완 추진체계 확립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소양시키기 위한 생애학습, 학교의 교육활동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교재 개발
 - 지역 공무원 스스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이해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순천시민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시키기 위해 순천시 전체가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운동 및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생활환경 구축 방안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 :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최우선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 확보, 보차분리, 보차공존 도로의 정비 등 도로상황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 정비
-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공건축물 정비
 - 기존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등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인 정비지침 또는 기본계획 수립
 - 향후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물의 자발적인 유니버설디자인화를 위한 의식향상 시책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쾌적한 공공공간 정비 : 보다 많은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순천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원 조성 및 지형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공간 정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서비스 제공
 - 물리적 장애를 없애는 하드웨어 정비뿐만 아니라 인적 서비스 등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의식 향상
 - 수화, 통역, 장애인을 위한 시설안내 등 인적서비스, 다양성을 배려한 가구 및 설비의 비치
-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다양한 정보매체(홈페이지, 음성안내, 문자안내, 이메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IT를 활용한 최신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수용
 - 장애인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쾌적하고 유효한 안내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로드맵 필요성

-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단계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도시디자인 정책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따라서, 순천시의 기존 도시디자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함

정책추진 목표와 추진 단계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시 조성
 -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정비를 통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구현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창출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생활환경 구현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기능적 공간 및 시설을 구역단위의 정비 계획 수립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구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 회복
 -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의 구상·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적인 요소제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회복
 - 순천시청,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물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산
- 추진단계의 구분
 - 준비단계(2018년)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확산단계(2019년)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1차 시범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산, 시민 및 공무원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전환 교육, 조례정비
 - 본격화단계(2021년)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2차 시범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 추진, 민간건축물 자율정비를 위한 협약 및 정비추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추진 주요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목적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을 목표로 사람중심의 가치와 포용의 기능성, 자연·문화 등을 반영한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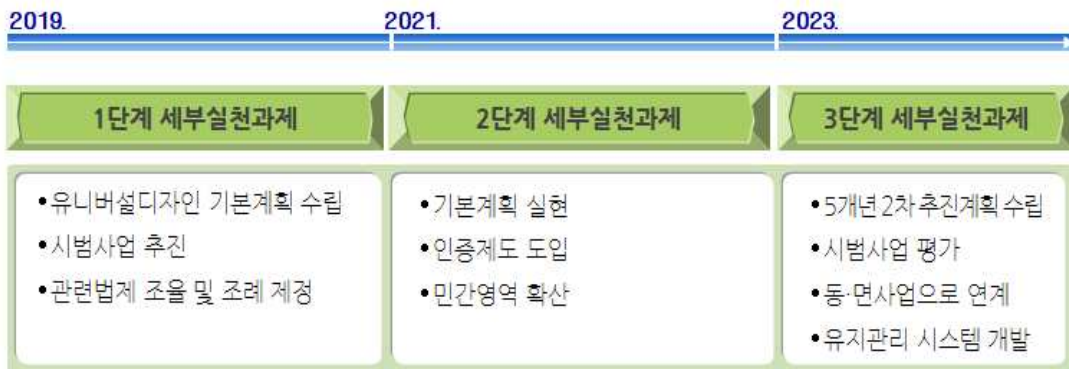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정책의 비전
 -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

- 중점 추진과제 : 행정과 민간으로 구분
 - 공공디자인과 연계(행정)
 - 도시재생과 연계(행정)
 - 공공영역 도시환경 개선(행정)
 - 도시마케팅과의 연계(행정)
 - 지역경제 활성화(행정)
 - 연계·협력체계 구축(행정)
 - 민간영역 확산(민간)
 - 전문적 민간조직 결성(민간)
 - 지역대학의 관련 프로그램 육성(민간)
 - 언론사의 적극적 홍보(민간)

- 지원체계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기획, 제안제도 도입
 - 홍보 및 교육
 -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 조례제정 및 제도마련
 - 민간시공에 대한 재정지원
 - 지속적 사후관리

유니버설디자인 중점추진과제와 추진로드맵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위한 실천과제는 중점추진과제와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세부실천과제로 정리되어 진행됨
- 본 연구에서는 세부실천과제가 담아야 할 간략한 내용만 간략히 제시함
- 세부실천과제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공공디자인 선도효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작성함
- 1단계 세부실천과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2년간)이며, 주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일부 시범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 검토 등으로 추진하도록 함
- 2단계 세부실천과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2년간)이며,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실현, 보완하고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동·면 단위 사업으로 전개 추진하도록 함
- 3단계 세부실천과제는 2023년(1년간)이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5개년 2차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그 동안의 사업평가를 통해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 감.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동·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동·면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체계를 확고히 함.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유니버설디자인 5개년 계획 단계별 세부실천과제 구상(안)]

- 중점추진과제는 각각의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되면 지침 작성인 경우는 현황조사, 정책 및 기준수립,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구성됨
- 사업의 발주방식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학술과 기술부문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 1단계 세부실천과제 중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조율하고 정비하는 것은 우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조례제정을 통해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사업의 실행에 있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
-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실행을 주관하고,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업무조정을 담당할 운영조직이 필요함
- 향후 2023년 이후 과제에서는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시범사업 동·면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분야/년도	추진분야	제1단계 (2019~2020)	제2단계 (2021~2022)	제3단계 (2023)	향후 (2024~)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별 내용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관련법제 정비				
			면·동 단위사업 추진	유니버설디자인 5개년 2차계획		
중점 추진 과제	행정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매뉴얼 설명회 및 지침작성			
		도시재생	사업구역 UD 적용			
		공공영역 도시환경 개선	제1차 시범사업	제2차 시범사업	시범사업 평가 면·동 단위 사업 추진지속	
		도시마케팅	UD 인증마크 제작 UD 인증 홍보계획	UD 축제 개최	UD 심포지엄	UD 심포지엄
		지역경제 활성화	UD 관련업체 분석	UD 표준화 모듈 및 기준의 산업체 보급		
		연계·협력	UD 위원회 구성			
	민간	민간영역 확산	민간영역 확산 정책 수립	민간의 UD 사업 참여유도 정책		
		민간조직	민간단체 결정 지원	국내·외 연수		
		지역대학	UD 강의개설	지속적인 UD 인력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언론사	언론사 선정 UD 시리즈 게재	언론사의 UD 우수업체 포상		
	지원체계	제안제도 도입	시민제안제도 도입	제도에 대한 평가		
		홍보 및 교육	UD 공모전 시민 및 직원 교육	UD 학교 교육프로그램		
평가 인센티브		기존사업의 유형화 평가지표 작성	인센티브 지원 계획수립 및 실행			
조례제정 제도마련		UD 조례 제정	지속가능한 UD 제도 마련			
민간 재정지원		민간지원계획안	민간지원	지속적 민간지원		
사후관리		(가칭)시설유지 매뉴얼 작성	UD 전문인력 배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 구상(안)]

2. 활성화 방안

시민 및 직원 의식개선 방안

일반인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워크숍)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 장애 체험 및 장애물 찾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장애인 등의 행동특성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이해하여 마음의 장애를 제고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 및 생활환경속의 다자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함양하여 교육대상자의 인성 및 도덕교육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함
-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배려와 나눔이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취지와 개념을 습득하고 공공공간에 마련된 자신의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강의와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교육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 성인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취지와 자신의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개선하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고취하고, 기본교육으로서 전문가 프로그램 이전의 선행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함
- 인식개선 캠페인
 - 유모차 이용 가족주차장, 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대한 포스터,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하며, 읍·면·동별 협회, 동호회의 협조를 구하여 홍보활동 진행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웹페이지 제작 및 웹 배너 광고 등을 실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대외 홍보 활동 실시

어린이 프로그램 예시(출처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어린이를 위한 현장체험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현장체험을 통한 공공시설의 사용방법을 경험하면서 공공공간에 마련된 자신의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취지와 개념인 배려와 나눔의 마음을 함양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인성과 도덕교육이 동시에 가능하다.
- 워크숍 진행과정
 - 워크숍 내용교식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개념을 안내한 후 팀을 구성하고 참가자는 눈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목발 등을 사용하여 친구의 안내와 도움으로 학교주변 시설이나 체험실을 탐방한다. 탐방 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의 체험을 발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나눔과 배려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한다.
- 장소 및 일시 : 학교 주변시설 및 체험용 현장 / 교육시간 : 2시간
- 참가자 : 초등학교 전 학년 가능
- 비평 및 지도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Stage 1. 기본개념 학습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
- 팀 구성 및 역할 분배
- 준비물 : 안대, 목발, 모래주머니 등 불편요소를 위한 장비
- 전문가가 연령에 알맞은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설명한다.
- 참가자들을 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배한다
- 팀별로 미션을 나누어 준다
- 안전수칙 및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Stage 2. 현장체험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실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
- 지정된 현장에 가서 미션을 수행한다.
- 안전 수칙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해 본다.
- 연령에 맞추어 교수가 직접지도 혹은 관리한다.

Stage 3. 발표 및 토론

- 수행한 체험에 대한 팀별 발표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의견을 이야기 한다.
- 워크숍 후 과제로 학년에 따라 디자인을 하거나 에세이를 쓰도록 지도한다.

전문가 양성 방안

- 공무원, 도시·건축 설계·시공·시행자 등의 생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향후 설계나 시공 시 그들의 행동특성을 배려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운영
- 강의와 현장체험을 병행하며, 교육대상자의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생활환경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시행자, 관리자 및 디자이너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함

단 계	내 용
강사 /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행정서비스 전문가 포함)/ 공무원, 도시, 건축, 디자이너 등
장 소	공공청사, 공공공간, 건축가가 설계한 시설 등
교육시간	14시간 내외
교육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개념(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의 필요성과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강의 진행 -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장애에 대한 강의 진행 -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디자인(행정서비스,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강의 진행 - 현장체험시의 안전수칙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장애물 찾기, 장애 체험 등) 2. 디자인 요소 찾기/현장 체험(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체험 및 장애물 찾기 - 사진 촬영 및 준비된 시트에 장애요소 실측/내용 기재 3. 디자인 해결방안 도출(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장애요소에 관한 토의 진행 - 디자인 해결방안 모색(우수사례, 디자인 대안 개발 등) 4. 비평 및 개선(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교육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대한 비평 - 디자인 요소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 정리(책자, 가이드라인 등) -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전문가 대상 UD교육프로그램(안)]

출처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인센티브 적용 방안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의 취득 등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자발적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인센티브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공 발주의 공모 설계 시 가점 부여(만점 대비 5% 내외)
 - 조세 감면(UD적용 비용)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UD적용 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면제(『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시청 홈페이지에 UD적용 및 인증 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책자에 소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부 록

유니버설디자인 간담회

유니버설디자인 간담회 일정

- 기 간 : 2018.11.16.(금) 16:00 ~ 18:00
- 장 소 : 순천시 노인회관 3층 1교육실
- 참석자 : 순천시 노인 및 장애인단체 20명

주요 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설명(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교수)
- 유니버설디자인 의견수렴
 - 출입구 접근로 단차제거, 출입문 패달식 도어스토퍼 교체
 - 보행에 불편을 주는 돌출 나무뿌리 제거
 - 바닥재질, 환기시설, 연속되지 않은 보행로, 진입로 차량 주차 문제
 - 볼라드 제거, 진입로 폭 축소
 - 순천시만의 슬로건

진행 사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일정

- 기 간 : 2019.01.03.(목) 17:00 ~ 18:00
- 장 소 : 한울누리 교회(순천시 시민로 30)
- 참석자 : 시민로 상인회 및 상가 대표 25명

주요 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도입배경 설명(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정인호 소장)
- 시민로 현황 및 문제분석, 상가번영회 의견청취
 - 주·정차 문제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정
 - 향후 주차장은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2~3층으로 건립
 - 간판주변 가로수 정비, 노후가로등 LED로 교체, 블라드 제거
 - 자전거 보관대 설치
 - 변압기 축소(개소 및 크기)

진행 사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UNCHEON UNIVERSAL DESIGN
GUIDELINE

